



2023.8.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추계&세제 이슈 | 제24호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NABO Fiscal Estimates&Tax Issues

CONTENTS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 재정정보의 월별 공개 현황 및 개선과제
기초연금 제도 현황 및 입법 동향에 따른 재정전망
아동수당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조세동향 및 이슈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간이과세 제도 변화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특징 분석
출산·혼인·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영상콘텐츠 조세지원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재정총량 지표

재정총량 추이

(단위: 조원)

재정총량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1~6월
총수입(A)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3.1	478.8	570.5	617.8	625.7	296.2
국세수입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400.5	178.5
세외수입	27.3	24.6	23.7	23.5	25.5	26.0	25.3	26.9	30.5	30.8	25.0	15.4
기금수입	122.6	126.2	130.2	135.6	139.5	145.1	154.0	166.2	195.8	190.8	200.3	102.2
세입외	0.0	0.1	0.1	0.1	0.1	0.6	0.4	0.1	0.1	0.3	—	0.1
총지출(B)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38.7	351.7
예산	239.1	243.7	256.8	264.7	275.2	293.7	329.0	374.4	398.9	439.6	441.1	246.0
기금	98.2	104.0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9.6	231.2	197.7	105.1
세출외	0.3	0.2	0.2	0.3	4.0	6.6	11.2	0.4	2.6	11.6	—	0.5
통합재정수지(A-B)	14.2	8.5	-0.2	16.9	24.0	31.2	-12.0	-71.2	-30.4	-64.6	-13.1	-55.4
관리재정수지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2.0	-90.5	-117.0	-58.2	-83.0
국가채무(중앙정부)	464.0	503.0	556.5	591.9	627.4	651.8	699.0	819.2	939.1	1,033.4	1,101.7	1,083.4
(GDP 대비, %)	(30.9)	(32.2)	(33.6)	(34.0)	(34.2)	(34.3)	(36.4)	(42.4)	(45.6)	(48.1)	(49.0)	—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23년 1~6월은 실적 기준임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함

3.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8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분야별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16개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	15.3	15.2	15.8	16.7	17.5	18.3	18.8	20.2	21.1	21.7	22.4	22.9
과학기술	5.3	5.8	6.0	6.5	6.7	7.0	7.0	7.3	8.1	8.9	9.5	9.9
교육	45.3	48.5	50.5	52.5	55.4	59.2	64.3	70.5	70.9	77.4	95.0	96.3
교통 및 물류	17.2	18.2	18.0	20.9	19.1	18.5	15.3	16.3	18.3	21.1	21.7	20.8
국방	31.2	32.9	33.8	35.6	36.8	37.9	41.2	44.9	46.3	49.3	50.4	55.3
국토 및 지역개발	6.0	5.0	4.4	4.5	4.0	3.5	3.7	4.4	4.8	5.1	5.1	4.2
농림수산	17.7	17.8	17.0	19.1	18.7	19.4	19.6	20.4	21.7	22.9	23.2	24.4
문화 및 관광	4.5	5.0	5.2	6.2	6.7	6.9	6.3	7.2	8.1	8.5	9.0	8.6
보건	7.8	8.8	9.2	11.2	10.5	10.3	10.7	11.9	17.4	26.5	32.8	20.0
사회복지	84.8	89.8	98.4	107.0	112.4	121.0	136.0	154.8	181.0	189.6	195.1	206.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5	16.4	15.4	17.8	18.5	19.0	18.8	20.6	37.2	46.2	73.7	26.0
예비비	0.4	0.4	0.4	0.5	0.5	0.6	0.6	0.6	0.6	0.6	0.6	4.6
일반·지방행정	54.1	57.1	57.7	57.1	60.9	64.3	68.4	75.4	93.1	98.2	108.1	112.2
통신	7.3	7.3	6.8	6.4	6.2	6.2	6.2	7.0	8.0	8.2	8.7	9.0
통일·외교	3.0	3.1	2.9	3.1	3.8	3.3	3.7	3.9	3.7	4.2	4.5	6.4
환경	5.8	6.1	6.1	6.7	6.9	7.1	7.0	8.5	9.3	10.2	11.0	12.2

주: 1.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2. 총지출 중 세출되는 제외함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3 통권 제24호

Contents

주요 재정총량 지표	1
재정추계 동향	5
2023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6
2023년 상반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12
입법 재정소요 추계	17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18
2023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9
의안 비용추계 사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53
재정정보의 월별 공개 현황 및 개선과제	54
기초연금 제도 현황 및 입법 동향에 따른 재정전망	61
아동수당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7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입법 동향 및 시사점	82
조세 동향	89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90
조세 이슈 및 분석	107
간이과세 제도 변화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특징 분석	108
출산·혼인·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118
영상콘텐츠 조세지원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129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143

재정추계 동향

2023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3년 상반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2023년 상반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김 효 진 · 태 정 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4, 4652)

1. 총수입¹⁾

2023년 상반기 총수입은 296.2조원으로 전년동기(334.4조원) 대비 38.1조원(11.4%)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진도율은 47.3%로 전년동기(결산기준) 대비 6.8%p 감소

- (국세수입) 2023년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전년동기(218.3조원) 대비 39.7조원(18.2%) 감소
 - ▶ 주요 세목인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세목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자산관련 세수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여세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
 - ▶ 2023년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전년동기(결산기준) 55.1% 대비 10.5%p 낮은 수준
- (국세외수입) 2023년 상반기 국세외수입은 117.6조원으로 전년동기(116.1조원) 대비 1.5조원(1.4%) 증가
 - ▶ 세외수입은 전년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 등의 원인으로 3.2조원 감소하였으나,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의 원인으로 4.8조원 증가
 - ▶ 2023년 상반기 국세외수입 진도율은 52.2%로 전년동기(결산기준) 52.4% 대비 0.2%p 낮은 수준

표 1 2023년 상반기(1~6월 누계) 총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상반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상반기 (A)	'23.상반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상반기 (A/C)	'23.상반기 (B/D)		
총수입(1+2)	334.4	296.2	△38.1	△11.4	54.1	47.3	617.8	625.7
1. 국세수입	218.3	178.5	△39.7	△18.2	55.1	44.6	395.9	400.5
2. 국세외수입	116.1	117.6	1.5	1.4	52.4	52.2	221.6	225.3
- 세외수입	18.7	15.4	△3.2	△17.6	60.5	61.7	30.8	25.0
- 기금수입	97.4	102.2	4.8	4.9	51.0	51.0	190.8	200.3

주: 1. 2023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예산수입(국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됨. 다만, 여기서는 수입의 성격(국세인지 아닌지)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세외수입은 예산수입 중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것으로 표기함.

2. 국세수입

가. 개관

2023년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전년동기(218.3조원) 대비 39.7조원(18.2%)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진도율은 44.6%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

- 2023년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전년동기(결산기준) 55.1% 대비 10.5%p 낮고 최근 5년간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 평균(50.5%)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

표 2 2023년 상반기(1~6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상반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상반기 (A)	'23.상반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상반기 (A/C)	'23.상반기 (B/D)		
1. 국세수입	218.3	178.5	△39.7	△18.2	55.1	44.6	395.9	400.5
○ 소득세	69.6	57.9	△11.6	△16.7	54.0	43.9	128.7	131.9
- 종합소득세	13.3	11.1	△2.2	△16.6	55.4	44.7	23.9	24.7
- 양도소득세	18.2	8.3	△9.9	△54.4	56.3	27.8	32.2	29.7
- 근로소득세	29.7	29.4	△0.3	△1.0	51.8	48.5	57.4	60.6
○ 법인세	63.5	46.7	△16.8	△26.4	61.3	44.5	103.6	105.0
○ 상속·증여세	8.7	7.9	△0.7	△8.4	59.3	46.3	14.6	17.1
○ 부가가치세	40.2	35.7	△4.5	△11.2	49.2	42.9	81.6	83.2
○ 개별소비세	4.7	4.4	△0.3	△6.6	50.5	43.2	9.3	10.2
○ 증권거래세	3.7	3.0	△0.7	△18.7	58.5	60.3	6.3	5.0
○ 교통·에너지·환경세	6.0	5.3	△0.7	△11.9	54.2	47.6	11.1	11.1
○ 관세	5.5	3.5	△2.0	△36.5	53.7	32.8	10.3	10.7
○ 종합부동산세	1.9	1.6	△0.3	△16.8	28.8	28.5	6.8	5.7
○ 기타 ¹⁾	6.0	5.3	△0.7	△11.9	54.2	47.6	11.1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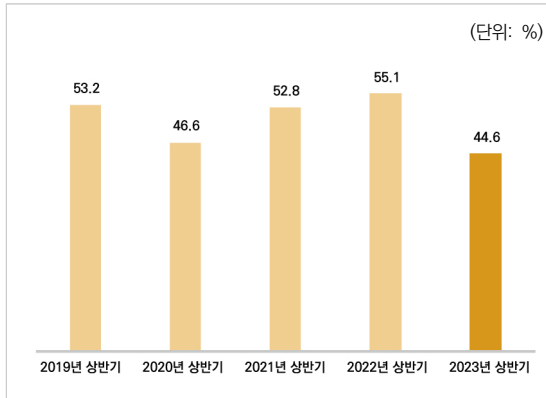
주: 1. 2023년 본예산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1) 인지세, 과년도수입, 교육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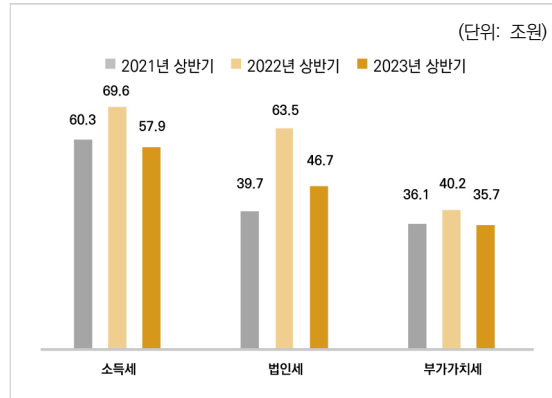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최근 5년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를 추이



주: 2019~2022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3년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최근 3년 주요 세목의 상반기 실적



나. 세목별 증감원인

소득세는 57.9조원으로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69.6조원) 대비 11.6조원 (16.7%) 감소

-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동기 대비 9.9조원(54.4%) 감소한 데에 주로 기인
 - 최근 3년간 상반기 양도소득세 수입(조원) : ('21) 18.3, ('22) 18.2, ('23) 8.3
 - 부동산 매매량(전년동기비, %): ('22.11.~'23.4.) 주택 △29, 순수토지 △37.1
- 종합소득세는 6월 분납분 감소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2조원(16.6%) 감소

법인세는 46.7조원으로 2022년 법안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63.5조원) 대비 16.8조원(26.4%) 감소

- 2022년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법인세 신고분은 전년동기 대비 18.4조원(33.5%) 감소하였으나 법인세 원천분은 전년동기 대비 1.6조원(18.0%) 증가
 - 2022년 상장법인 세전순이익 증감률(전년대비, %): ('21) 121.6 → ('22) △25.52)

2) 대규모 적자(△24.4조원)가 발생한 한국전력 제외 시 △11.2%

부가가치세는 35.7조원으로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및 통관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40.2조원) 대비 4.5조원(11.2%) 감소

-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부가가치세 세수이연 기저효과: △3.4조원
 ▶ 명목 통관수입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2.Q4) 3.1, ('23.Q1) △2.2, ('23.Q2) △13.0

그 외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동기 대비 0.7조원(11.9%) 감소

-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23.1.1.~10.31.) 휘발유 25% 및 경유 37%

3. 국세외수입

2023년 상반기 국세외수입은 117.6조원으로 전년동기(116.1조원) 대비 1.5조원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52.2%로 전년 동기(52.4%) 대비 0.2%p 감소

- 2023년 상반기 국세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한 것(3.1조원)에 주로 기인

표 3 2023년 상반기(1~6월 누계) 국세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상반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상반기 (A)	'23.상반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상반기 (A/C)	'23.상반기 (B/D)		
2. 국세외수입	116.1	117.6	1.5	1.3	52.4	52.2	221.6	225.3
○ 일반회계수입	11.4	7.8	△3.6	△31.6	69.6	80.0	16.3	9.7
- 재산수입	7.3	2.9	△4.4	△60.3	98.3	112.8	7.4	2.6
- 경상이전수입	3.6	4.2	0.6	16.7	46.4	74.1	7.8	5.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3	0.4	0.1	33.3	42.8	37.8	0.8	1.1
- 기타 ¹⁾	0.1	0.2	0.1	100.0	30.3	63.7	0.3	0.4
○ 특별회계수입	7.3	7.6	0.4	4.1	50.2	50.0	14.5	15.2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3.1	3.7	0.7	19.4	47.5	60.9	6.5	6.2
- 재산수입	0.2	0.2	△0.0	0.0	64.7	68.3	0.3	0.3
- 경상이전수입	2.3	2.0	△0.3	△13.0	49.9	46.3	4.6	4.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7	0.8	0.0	14.3	47.5	42.5	1.5	1.8
- 기타 ¹⁾	0.9	0.9	0.0	0.0	63.7	34.4	1.4	2.8
○ 기금수입	97.4	102.2	4.8	4.9	51.0	51.0	190.8	200.3
- 사회보장기여금	42.2	45.3	3.1	7.3	50.6	52.6	83.4	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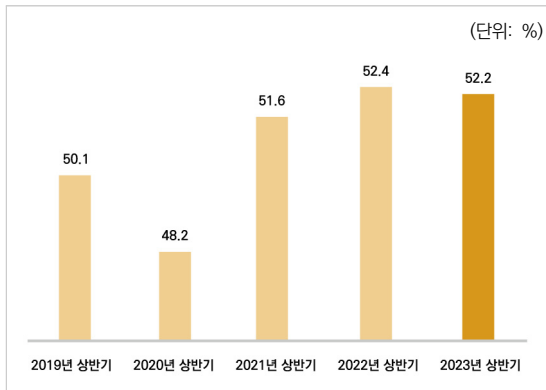
구분	상반기				진도율		'22 실적 (C)	'23 예산 (D)
	'22.상반기 (A)	'23.상반기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2.상반기 (A/C)	'23.상반기 (B/D)		
- 재산수입	20.1	21.4	1.4	6.5	50.8	63.6	39.5	33.7
- 경상이전수입	18.2	20.1	1.9	10.4	56.4	55.2	32.2	36.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7	3.1	0.3	14.8	30.5	32.7	9.0	9.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3.0	11.3	△1.7	△13.1	53.2	35.3	24.3	32.0
- 기타 ²⁾	1.2	1.0	△0.2	△16.7	53.2	38.2	2.3	2.7

주: 1)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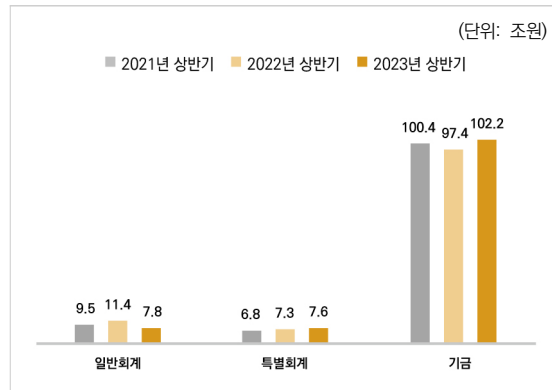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5년 상반기 국세외수입 진도율 추이



주: 2019~2022년은 실적 대비 진도율, 2023년은 본예산 대비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 최근 3년 국세외수입 상반기 실적



-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7.8조원으로 전년동기(11.4조원) 대비 3.6조원(31.6%) 감소하였고, 진도율은 80.0%로 전년동기(69.6%) 대비 10.4%p 상승

- ▶ 한국은행 결산잉여금과 정부출자수입 감소 등으로 재산수입(2.9조원)이 전년동기(7.3조원) 대비 4.4조원 감소

- 1분기 세입조치된 2022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정부납입금(1.8조원)이 전년동기(5.5조원) 대비 3.7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은 외화증권 매매차익 감소와 통화안정증권 발행 비용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정부출자수입(0.9조원)이 전년동기(1.7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한국산업은행 등 출자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입의 감소 등에 주로 기인

- ▶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수입 등의 예산액이 전년대비 감액편성됨에 따라 전반적인 세외수입 진도율은 상승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7.6조원으로 전년동기(7.3조원) 대비 0.4조원(4.1%)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50.0%로 전년동기(50.2%) 대비 0.2%p 하락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3.7조원)이 전년동기(3.1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102.2조원으로 전년동기(97.4조원) 대비 4.8조원(4.9%) 증가하였고, 진도율은 51.0%로 전년동기(51.0%)와 동일
 - ▶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45.3조원)이 전년동기(42.2조원) 대비 3.1조원 증가
 -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보험료수입 증가와 그 밖에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경상이전수입(20.1조원)이 전년동기(18.2조원) 대비 1.9조원 증가
 - ▶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융자원금회수 감소 등으로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11.3조원)는 전년동기(13.0조원) 대비 1.7조원 감소

2023년 상반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윤 주 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1. 국가채무 현황

2023년 6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83.4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988.4조원, 주택채 잔액은 81.2조원, 외평채 잔액은 12.3조원 등

-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50.9조원 증가(발행 98.7조원, 상환 47.8조원), 주택채 잔액은 1.0조원 감소(발행 6.6조원, 상환 7.6조원), 외평채 잔액은 0.5조원 증가¹⁾

표 1 국가채무(중앙정부) 현황

(단위: 조원)

구분	중앙정부 채무	(GDP 대비, %)	국채 합계	국채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고채권	국민주택 채권	외평채권		
2017	627.4	(34.2)	623.3	546.7	69.4	7.2	3.8	0.2
2018	651.8	(34.3)	648.4	567.0	73.3	8.0	3.2	0.2
2019	699.0	(36.4)	696.3	611.5	76.4	8.3	2.6	0.1
2020	819.2	(42.4)	815.2	726.8	78.9	9.5	3.3	0.7
2021	939.1	(45.6)	937.0	843.7	82.2	11.2	2.0	0.1
2022	1,033.4	(48.1)	1,031.5	937.5	82.2	11.8	1.9	0.1
2023예산	1,101.7	(49.0)	1,100.3	999.0	86.8	14.5	1.2	0.2
2023.1	1,047.4	—	1,045.4	952.0	81.9	11.5	1.9	0.1
2023.2	1,061.0	—	1,059.1	965.1	81.8	12.3	1.8	0.1
2023.3	1,053.6	—	1,051.8	958.1	81.5	12.2	1.7	0.1
2023.4	1,072.7	—	1,070.9	975.6	82.6	12.6	1.7	0.1
2023.5	1,088.7	—	1,087.1	993.4	81.3	12.3	1.5	0.1
2023.6	1,083.4	—	1,081.9	988.4	81.2	12.3	1.4	0.1

주: 1. 국채 합계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단순합계 및 단순차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8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8월호

2. 국고채 발행 현황

2023년 국고채의 총 발행 계획은 167.8조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등 순증 규모는 61.5조원, 차환 규모는 106.3조원

-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적자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발행수입 중 일반회계에 예약하는 금액으로 2023년 계획은 45.8조원이며, 2022년 실적 대비 40.4조원 적은 규모

표 2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2023 예산(B)	B-A
				본예산	추경	실적(A)		
총 발행	101.7	174.5	180.5	166.0	177.3	168.6	167.8	-0.8
순증	44.5	115.3	120.6	93.4	104.7	97.3	61.5	-35.7
(일반회계 적자보전)	(34.3)	(102.8)	(88.2)	(76.2)	(91.2)	(86.2)	(45.8)	(-40.4)
차환	57.2	59.2	59.9	72.6	72.6	71.4	106.3	34.9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2022.12.26.)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는 98.7조원이며, 6월 기준 국고채 잔액은 988.4조원

표 3 2022~2023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실적

(단위: 조원)

구분	2022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937.5	858.7	877.6	885.7	904.3	921.9	910.3	923.6	933.4	931.4	940.7	948.9	937.5	—
발행	177.3	15.4	19.3	18.5	18.9	17.8	14.6	15.6	12.1	11.9	11.2	9.5	3.8	168.6
상환	80.1	0.4	0.4	10.4	0.3	0.2	26.1	2.3	2.3	12.0	3.8	1.3	15.2	74.8
구분	2023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잔액	999.0	952.0	965.1	958.1	975.6	993.4	988.4							—
발행	167.8	14.8	13.4	17.8	17.9	18.1	16.7							98.7
상환	106.3	0.3	0.3	24.8	0.3	0.3	21.8							47.8

주: 1. 2023년 계획은 본예산 기준이며, 1~6월은 월 실적 기준임

2. 2022년 상환 계획(80.1조원)에는 순상환 계획(7.5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2022년 차환 계획(72.6조원)보다 큼

3. 2022년 상환 실적(74.8조원)에는 순상환 실적(3.4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2022년 차환 실적(71.4조원)보다 큼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8월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일반회계 적자보전 현황

2023년 6월까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 규모는 34.0조원이며, 2023년 예산(45.8조원) 대비 74.2%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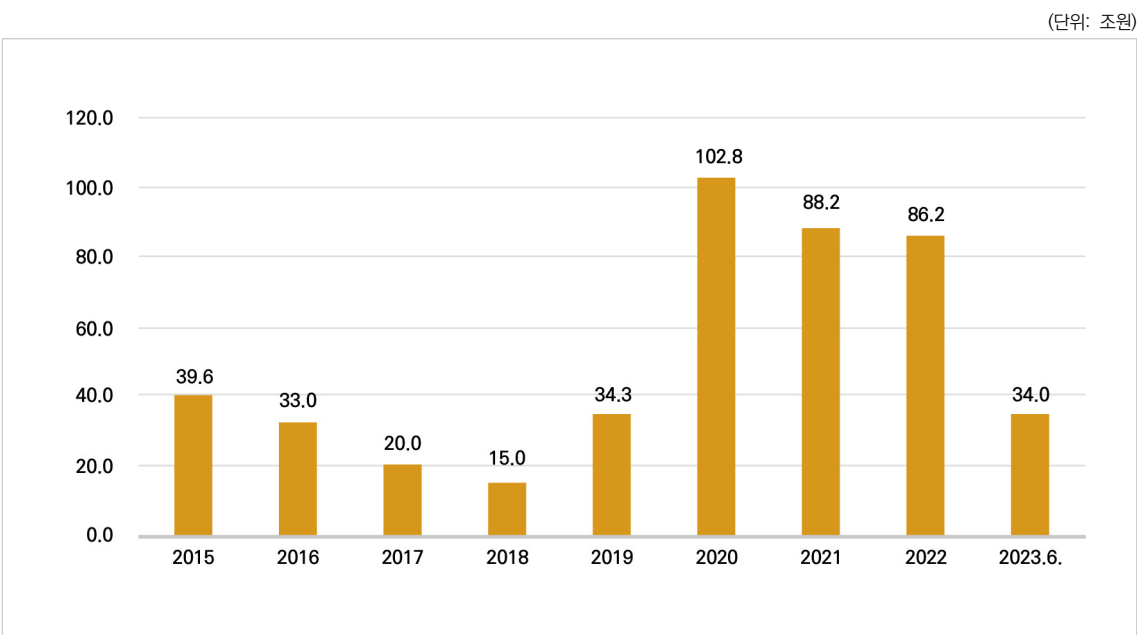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적자국채 발행 수요가 커 진도율이 높은 편임
 - ▶ 최근 5년(2018~2022년) 6월 기준 결산 대비 평균 진도율은 73.5% 수준(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표 4 2022년~2023년 일반회계 적자보전 실적

(단위: 조원)														
2022	계획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91.2	—	16.0	12.0	10.5	11.5	10.0	—	13.0	1.0	—	—	12.2	86.2
2023	계획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45.8	4.0	6.0	12.0	4.0	4.0	4.0							34.0

주: 2023년의 경우 계획은 본예산 기준이며, 1~6월은 월 실적 기준임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일반회계 적자보전 추이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국고채 금리 동향

2023년 6월 기준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는 3.59%로 2022년 10월 4.21% 이후 하락 추세이나, 6월부터 다시 상승

표 5 최근 국고채 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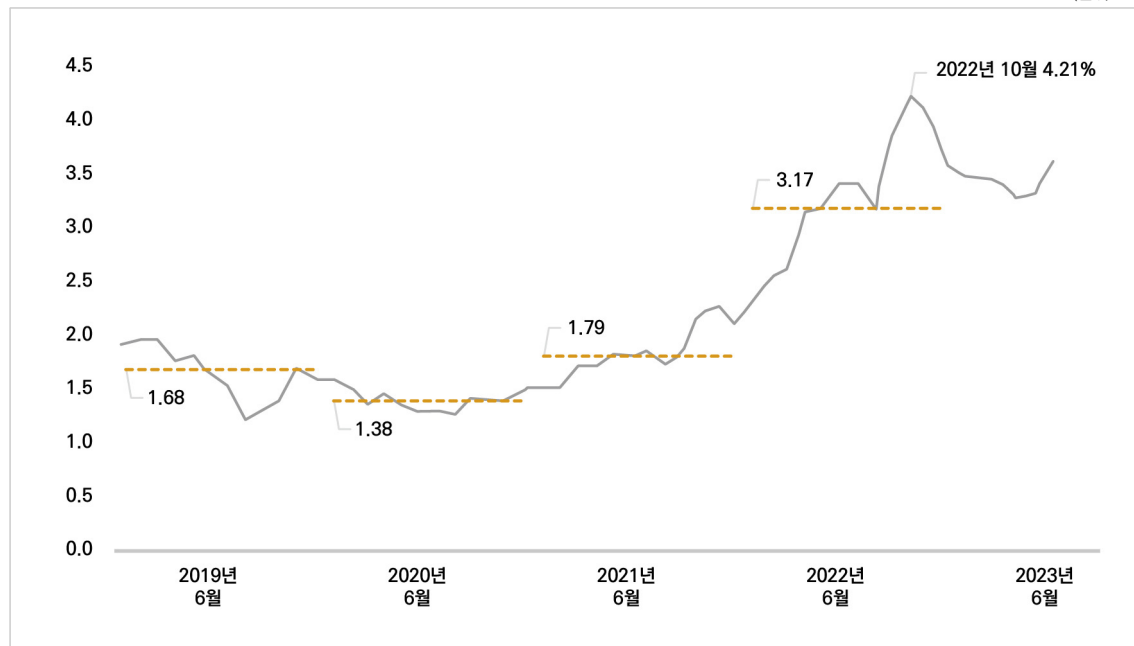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조달금리	1.79	3.17	4.21	3.99	3.57	3.48	3.46	3.41	3.28	3.33	3.59	
평균 유통금리	3년물	1.798	3.722	4.185	3.689	3.722	3.325	3.797	3.270	3.293	3.459	3.548
	5년물	2.011	3.743	4.263	3.697	3.743	3.299	3.829	3.274	3.292	3.450	3.552
	10년물	2.250	3.730	4.242	3.667	3.730	3.297	3.753	3.340	3.360	3.532	3.611
	30년물	2.310	3.683	4.073	3.689	3.683	3.307	3.588	3.340	3.364	3.598	3.659

자료: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3년 8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추이

(단위: %)



주: 실선은 월 기준 평균 조달금리, 점선은 연평균 조달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의 「국채백서」(각연도)와 「월간 재정동향」(2023년 8월호)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입법 재정소요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2023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의안 비용추계 사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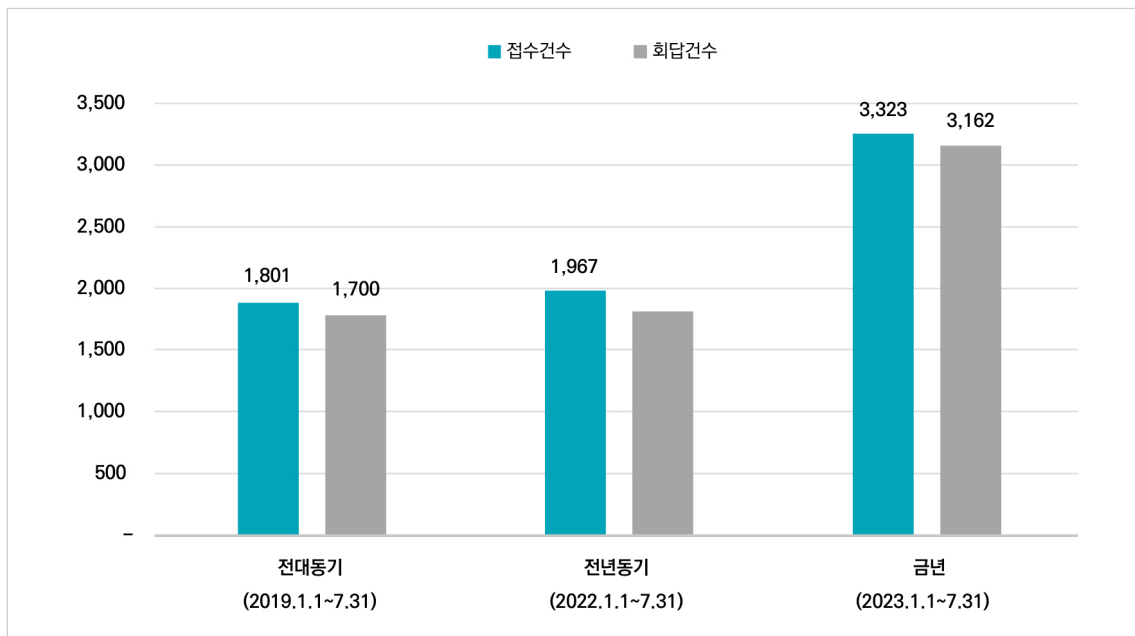
의안 비용추계 회답추이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
비용추계(A+B)	1,994	3,020	3,407	3,179	2,779	4,645	4,910	4,009	3,162
비용추계	504	1,168	931	929	751	926	1,152	1,335	882
미첨부	845	869	1,264	990	1,019	1,919	1,474	654	631
미대상	645	983	1,212	1,260	1,009	1,800	2,284	2,020	1,649
공식추계율	37.4	57.3	42.4	48.4	42.4	32.5	43.9	67.1	58.3
지출추계(A)	1,623	2,521	2,921	2,722	2,354	3,978	4,334	3,468	2,798
비용추계	331	833	627	599	477	576	820	945	627
미첨부	691	758	1,141	884	895	1,661	1,276	530	533
미대상	601	930	1,153	1,239	982	1,741	2,238	1,993	1,638
공식추계율	32.4	52.4	35.5	40.4	34.8	25.7	39.1	64.1	54.1
세수추계(B)	371	499	486	457	425	667	576	541	364
비용추계	173	335	304	330	274	350	332	390	255
미첨부	154	111	123	106	124	258	198	124	98
미대상	44	53	59	21	27	59	46	27	11
공식추계율	52.9	75.1	71.2	75.7	68.8	57.6	62.6	75.9	7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7월) 비용추계 회답현황



2023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신 헌 태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3)

2023년 2분기 가결 법률 177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68건*(전체의 38.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6건,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66건
- 비용이 추가된 지출법률 43건 등 전체 43건에 대한 추계 결과 제시(수입법률 해당사항 없음)

지출법률 43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9조 8,155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가: 연평균 9조 8,102억원***, 지방: 연평균 5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수입·지출 동시유발법률 4건 포함

** 추계금액은 2024~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금액으로 제시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재정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제외 시 1,137억원(국가: 1,084억원) 증가 예상

1. 2023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수반법률 현황

2023년 2분기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법률은 177건이며,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8.4%인 68건

-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43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¹⁾, 추계가 가능한 법률 중 수입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없으며,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은 43건²⁾

1)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25건은 제외하였으며, 미추계건 중 법안 가결 이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건은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2024년 발간 예정)에서 추계규모 제시 예정

2) 43건의 지출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69개(지출증가 69개 요인)

표 1 2023년 2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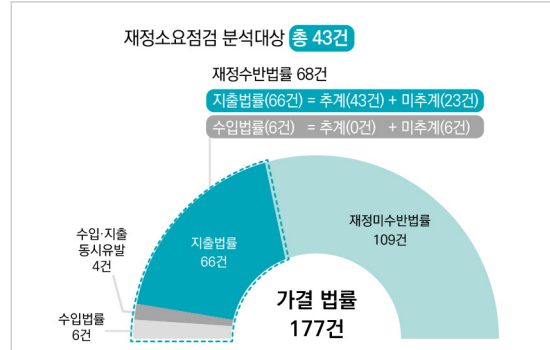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추계) ¹⁾		
	소계	수입법률	지출법률
177	68 ²⁾ (43)	6 (0)	66 (43)

주: 1) ()안은 추계가 곤란한 25건을 제외하고 재정소요를 점검한 법률 수

2) 수입·지출 동시유발법률 4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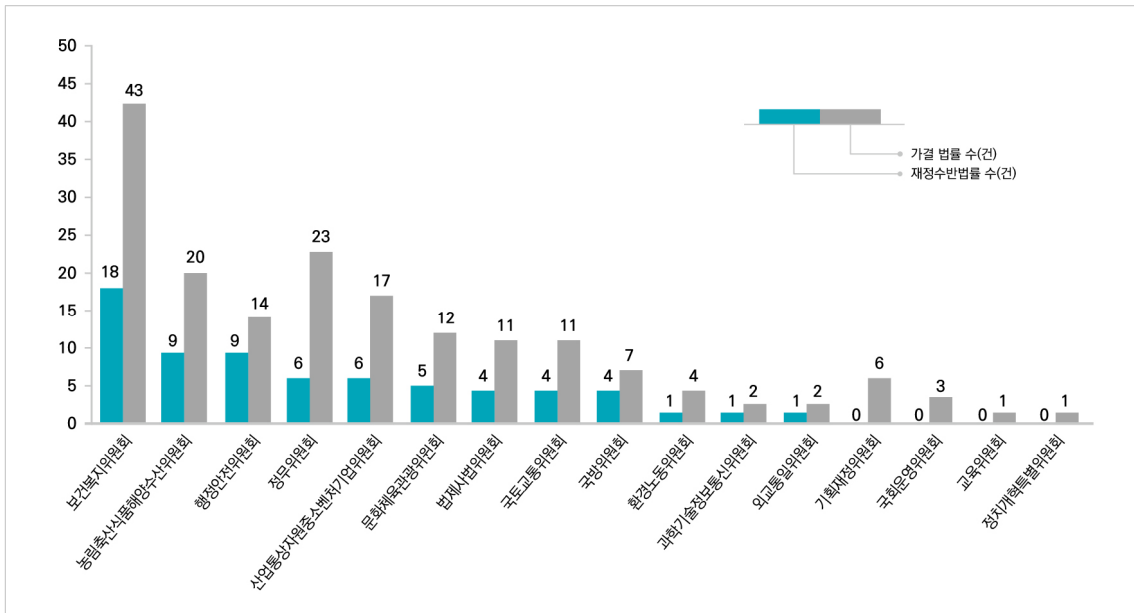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분기별)

그림 1 2023년 2분기 재정소요점검 대상 법률 현황



- (위원회별) 2023년 2분기 재정수반법률 건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18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9건) 및 행정안전위원회(9건) 순
- 가결 법률이 가장 많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43건), 정부위원회(2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건) 순
- 가결 법률 대비 재정수반법률 비중이 높은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64.3%), 국방위원회(57.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50.0%) 순

그림 2 2023년 2분기 위원회별 가결 법률과 재정수반법률 현황



2. 2023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 2분기에 가결된 지출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43건의 법률 시행으로 2024년부터 5년간 연평균 9조 8,155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³⁾

표 2 2023년 2분기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구분		재정주체		지출 합계 (연평균 ¹⁾)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출 유형별	의무지출	97,446 (428) ²⁾	-	97,446 (428) ²⁾
	재량지출	656	54	710
합 계		98,102 (1,084) ²⁾	54	98,155 (1,137) ²⁾

주: 1) 향후 5년간(2024~2028년) 연평균 금액

2) ()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기존에 시행 중이던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를 제외한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출유형별) 의무지출이 연평균 9조 7,446억원, 재량지출이 연평균 71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의무지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8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9조 7,446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재정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제외 시 42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재량지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 경제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규정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 등 35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710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지출은 연평균 9조 8,102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출은 연평균 5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국가 지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 연장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42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9조 8,102억원 지출 증가 예상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재정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제외 시 1,08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지방자치단체 지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4건⁴⁾ 법률 시행으로 연평균 54억원 지출 증가 예상
- (위원회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법률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연평균 9조 7,376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연평균 239억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연평균 221억원) 순으로 지출에 영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변동을 초과하는 법률 6건이나,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수입법률은 없음

4)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출 동시유발법률인 「아동복지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3건 포함

-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국민건강보험법」 등 11건, 연평균 9조 7,376억원)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재정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제외 시 358억원 지출 증가 예상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운영 등(「국립해양박물관법」 등 7건, 연평균 239억원)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증장애 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등(「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3건, 연평균 221억원)

표 3 2023년 2분기 가결 지출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위원회별

위원회	소계 (A+B, 건)	추계		미추계 건수 ²⁾ (B, 건)
		건수 (A, 건)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¹⁾ 억원)	
국회운영위원회	-	-	-	-
법제사법위원회	4	4	26	0
정무위원회	6	6	130	0
기획재정위원회	-	-	-	-
교육위원회	-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1	0.1	0
외교통일위원회	1	0	-	1
국방위원회	4	2	1	2
행정안전위원회	7	4	129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	3	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	7	239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	3	221	3
보건복지위원회	18	11	97,376 (358) ³⁾	7
환경노동위원회	1	1	3	0
국토교통위원회	4	1	25	3
정보위원회	-	-	-	-
여성가족위원회	-	-	-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	-	1
합 계	66	43	98,155 (1,137) ³⁾	23

주: 1) 향후 5년간(2024~2028년) 연평균 금액

2) 미추계 건수는 모든 재정수반조문을 추계하지 못한 것을 의미

3) ()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기존에 시행 중이던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를 제외한 금액

1.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NABOSTATS-간략조회-재정통계-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위원회별)

3. 2023년 2분기 가결 재정수반법을 주요 사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3.5.25. 의결)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에 따라 2024~2028년 연평균 8조 2,22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3.6.13. 시행)
 - ▶ 연도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에 결산 기준 국고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추산
 - 연도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은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금액⁵⁾을 반영
 - 국고지원 비율은 결산 기준 2019~2021년 국고지원금 비율의 평균인 11%를 적용

표 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92,071	98,892	106,299	113,860	-	411,121	82,22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대안, 2023.5.25. 의결)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에 따라 2024~2028년 연평균 1조 4,79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3.6.13. 시행)
 - ▶ 연도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에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추산
 - 연도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은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금액을 반영
 - 지원 비율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⁶⁾의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지원 비율 한도인 65%⁷⁾를 적용

5)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6%로 상정하여 건강보험료 수입액을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을 변화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6) 부칙 〈법률 제6619호, 2002. 1. 19.〉

②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7)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은 부담금의 65%를 기준으로 산정

표 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건강보험 국민건강기금 지원 유효기간 연장	18,268	18,446	18,627	18,627	-	73,968	14,794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배준영의원 대표발의, 2023.5.25. 의결)

-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따라 2024~2028년 연평균 18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4.1.1. 시행)
 - ▶ 법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법」에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 ▶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고 2024년 하반기 개관 계획과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추산
 - 인건비는 최근 5년(2018~2022년) 국립해양박물관(부산)의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 2.1%를 적용하여 추산
 - 경상운영비와 사업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산
 - 자산취득비는 2024년에 한시적으로 발생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2024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2024년에는 추정 예산 대비 56.3%(인건비: 45.2%, 경상운영비: 79.5%, 사업비: 48.5%)를 편성

표 6 국립해양박물관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운영	104	194	198	201	203	902	180
- 인건비	31	72	74	74	74	326	65
- 경상운영비	30	57	58	59	60	265	53
- 사업비	30	65	66	68	69	299	60
- 자산취득비	13	-	-	-	-	13	3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김예지의원 대표발의, 2023.5.25. 의결)

-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증장애 경제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2024~2028년 연평균 180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2023.12.21. 시행)
 - ▶ 지원대상인 1인 중증장애인기업 수에 지원비율과 업무지원인 파견 단가를 곱하여 추산
 - 1인 중증장애인기업 수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근거한 전체 장애인기업 수에 1인 중증장애인기업 비중을 곱하여 추정
 - 지원비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7.4%를 적용
 - 업무지원인 파견 단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사례를 참조한 1인당 지원금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최저임금상승률을 적용

표 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중증장애 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137	156	177	201	228	900	180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부록] 2023년도 2분기 주요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수반요인 및 추계 현황

(단위: 억원)

수입 지출	의안 번호	의안명 (주요 재정수반요인)	2024~2028년	
			합계	연평균
지출	21221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 연장)	411,122 ¹⁾	82,224 ¹⁾
	21221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보험 국민건강기금 지원 유효기간 연장)	73,968 ¹⁾	14,794 ¹⁾
	21221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족연금 지급 및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 기준 장애상태 범위 확대)	1,197	239
	2116976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운영)	902	180
	211725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 (중증장애 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900	180
	211829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의원 대표발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530	106
	21227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위탁의료기관 연령제한 폐지 및 약제비 지원)	376	75
	21229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355	71
	212298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등)	238	48
	212210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당연지정 등)	213	43
	212208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등)	171	34
	212210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등)	143	29
	212226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설치 등)	123	25

주 1) 기존에 시행 중이던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유효기간 연장 효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2. 2024~2028년 합계 100억원 이상의 재정변동이 예상되는 법률 제시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주 호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46)

1. 비용추계 개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4.20.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농식품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5조 6,796억원, 연평균 1조 1,359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473호)
발의일	2023.4.20.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주요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바우처) 지급
심사경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2023.4.21.) 및 상정(2023.6.27.)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5조 6,796억원, 연평균 1조 1,359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고,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5년간(2024~2028년)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비용추계 대상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복 제거)에 대한 농식품이용권 지급비용 및 전문기관의 사업운영·관리비
 -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대상을 취약계층 전체 가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
- 총 사업비용에서 현행 2023년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 예산을 차감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 추가재정소요 = 전체 사업비용 - 현행 시범사업 예산(기준선)
 - 현행 시범사업 예산(기준선) = 148억원(=농식품이용권 지급비용 139억원 + 사업운영·관리비 9억원)

표 2 비용추계 산식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요소} &= \sum_t (\text{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사업}_t) \\
 &= \sum_t (\text{총 사업비용}_t - \text{현행 시범사업 예산(기준선)}_t) \\
 &= \sum_{i,t} \{[(\text{가구원수별 취약계층 가구수}_{i,t}^{1)} \times \text{농식품이용권 지급단가}_{i,t}^{2)} \\
 &\quad \times \text{국비·지방비 분담률}_t^{3)} + \text{전담기관 사업운영·관리비}_t^{4)}] - \text{현행 시범사업 예산(기준선)}_t^{5)}\}
 \end{aligned}$$

이때, t 는 추계연도: 2024~2028년,

i 는 가구원수: $i=1$ 일 때 1인 가구, $i=2$ 일 때 2인 가구, ..., $i=6$ 일 때 6인 가구, $i=7$ 일 때 7인 이상 가구

- 1) 가구원수별 취약계층 가구수 $_{i,t}$ = 총가구수 $_t^{a)}$ × 취약계층 가구 비율 $_t^{b)}$ × 취약계층 가구원수별 비중 $_{i,t}^{c)}$
 - a) 총가구수 $_t$: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50년」 총가구수
 - b) 취약계층 가구 비율 $_t$: 9.18%
 - 2022년 기준 총가구수(21,579,415) 대비 취약계층(중복 제거) 가구수(1,980,233) 비율
 - c) 취약계층 가구원수별 비중 $_{i,t}$: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
 - 1인가구 72.6%, 2인가구 16.2%, 3인가구 6.5%, 4인가구 3.1%, 5인가구 1.1%, 6인가구 0.3%, 7인가구 이상 0.1%
- 2) 농식품이용권 지급단가 $_{i,t}$: 현행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산출
 - 1인~6인 가구: 1인가구 40천원, 2인가구 57천원, 3인가구 69천원, 4인가구 80천원, 5인가구 89천원, 6인가구 98천원
 - 7인 이상 가구: 106천원
 - ※ 2022년 기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7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0.1%인 점을 고려하여 7인 이상 가구의 농식품이용권 지급단가는 10만 6,000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이때 농식품이용권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3) 국비·지방비 분담률 $_t$: 국비 50%, 지방비 50% (시범사업과 동일)
- 4) 취약계층 사업운영·관리비 $_t$: 140억 800만원(2025년 기준)
 -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원 28억 9,000만원(신청접수인력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홍보 지원 등)
 - 사업 운영 111억 1,800만원 (시스템 구축·운영, 콜센터 운영, 사업관리비, 식생활교육, 사업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5) 현행 시범사업 예산(기준선) $_t$ = 148억원 (2023년 기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비용 139억원 + 사업운영·관리비 9억원
 - 이때, 현행 시범사업예산의 일부 비용(콜센터 운영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농식품이용권 지급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5조 6,131억 4,400만원으로 추계

- 최근 3년간 중복을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수 및 수급자수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699,497가구, 2,359,228명
 - 2022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280,736가구, 370,467명

표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수 및 수급자수(중복 제거): 2020~2022년

(단위: 가구, 명)

구분	2020.12.		2021.12		2022.12	
	수급가구수	수급자수	수급가구수	수급자수	수급가구수	수급자수
기초생활수급자(A)	1,459,059	2,046,213	1,637,569	2,268,852	1,699,497	2,359,228
- 생계급여	923,873	1,221,022	1,081,655	1,402,260	1,157,750	1,481,771
- 의료급여	107,161	150,642	98,494	127,182	81,897	122,767
- 주거급여	358,891	579,879	394,210	653,899	408,125	678,915
- 교육급여	69,134	94,670	63,210	85,511	51,725	75,775
차상위계층(B)	319,239	400,213	302,720	399,142	280,736	370,467
합계(C=A+B)	1,778,298	2,446,426	1,940,289	2,667,994	1,980,233	2,729,695

주: 중복제거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수급자별: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계층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추계기간 동안 취약계층 가구수는 2022년 기준으로 총가구수 대비 9.18%인 것으로 가정
 ➤ $9.18\% = \text{취약계층 } 1,980,233\text{가구} \div \text{총가구수 } 21,579,415\text{가구} \text{ (22년 기준)}$
- 추계기간 동안 취약계층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율은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비율 적용

표 4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

(단위: 가구)

가구특성별	합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이상
2022년 전국	1,699,497	1,234,650	275,663	110,789	52,134	19,457	4,963	1,841
비율	100.0%	72.6%	16.2%	6.5%	3.1%	1.1%	0.3%	0.1%

주: 일반가구 기준

자료: 복지포털 > 복지소식 > 복지통계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SubMain.do>>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의 총가구수에 취약계층 가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비율을 차례대로 곱하여, 추계기간 동안 취약계층 가구수 산출
- 가구당 농식품이용권 지원단가는 현행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과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
 ➤ 이때,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7인가구 이상의 비율은 0.1%인 점을 고려(2022년 기준)하여 7인가구 이상의 농식품이용권 지급단가는 7인 가구(10만 6,000원)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표 5 가구원수별 농식품이용권 지급액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지급금액	40,000	57,000	69,000	80,000	89,000	98,000	106,000	113,000	120,000	126,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식품바우처 사업 홈페이지

-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농식품이용권은 매월 지급하고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적용
- 추계결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총 5조 6,131억 4,400만원으로 추계됨
 - ▶ 국비: 5년간 총 2조 8,065억 7,200만원
 - ▶ 지방비: 5년간 총 2조 8,065억 7,200만원

표 6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농식품이용권 지급 비용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취약계층 가구원수별 가구 수(A) ¹⁾	1인 가구	1,472,001	1,487,236	1,501,060	1,513,671	1,525,275	—
	2인 가구	328,657	332,058	335,145	337,961	340,551	—
	3인 가구	132,087	133,454	134,695	135,826	136,868	—
	4인 가구	62,156	62,800	63,383	63,916	64,406	—
	5인 가구	23,197	23,438	23,655	23,854	24,037	—
	6인 가구	5,917	5,978	6,034	6,085	6,131	—
	7인 가구 이상	2,195	2,218	2,238	2,257	2,274	—
가구당 농식품이용권 월 지급단가 (B, 천원/가구·개월)	1인 가구	40	40	40	40	40	—
	2인 가구	57	57	57	57	57	—
	3인 가구	69	69	69	69	69	—
	4인 가구	80	80	80	80	80	—
	5인 가구	89	89	89	89	89	—
	6인 가구	98	98	98	98	98	—
	7인 가구 이상	106	106	106	106	106	—
지급개월 수(C, 개월)		12	12	12	12	12	—
농식품이용권 지급금액 (D=A×B×C, 백만원)	1인 가구	706,561	713,873	720,509	726,562	732,132	3,599,637
	2인 가구	224,801	227,128	229,239	231,165	232,937	1,145,271
	3인 가구	109,368	110,500	111,527	112,464	113,326	557,186
	4인 가구	59,670	60,288	60,848	61,359	61,830	303,995
	5인 가구	24,775	25,031	25,264	25,476	25,672	126,218
	6인 가구	2,840	2,870	2,896	2,921	2,943	17,278
	7인 가구 이상	1,054	1,064	1,074	1,083	1,092	6,409
개정안에 따른 총 지급액 ($E = \sum_i D_i$)		1,129,069	1,140,755	1,151,358	1,161,031	1,169,931	5,755,994
	국비(50%)	564,535	570,377	575,679	580,516	584,966	2,877,997
	지방비(50%)	564,535	570,377	575,679	580,516	584,966	2,877,997
현행 사업예산(기준선)(F)		27,800	27,800	27,800	27,800	27,800	139,000
	국비(50%)	13,900	13,900	13,900	13,900	13,900	69,500
	지방비(50%)	13,900	13,900	13,900	13,900	13,900	69,500
추가재정소요(G=E-F)		1,101,269	1,112,955	1,123,558	1,133,231	1,142,131	5,613,144
	국비(50%)	550,635	556,477	561,779	566,616	571,066	2,806,572
	지방비(50%)	550,635	556,477	561,779	566,616	571,066	2,806,572

주: 1)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의 총가구수에 취약계층 가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수별 비율을 차례대로 곱하여, 추계기간 동안 취약계층 가구수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전담기관 사업운영·관리비

농식품이용권 지급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사업운영·관리비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총 664억 7,300만원으로 추계

- 전담기관 사업운영·관리비는 농식품이용권 지급대상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시스템 유지관리, 콜센터 운영, 사업 모니터링, 홍보물 제작,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20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운영지원에 28억 9,000만원, 사업 운영에 111억 1,800만원 등 140억 800만원이 소요될 예정
 - 신청접수인력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홍보 지원 등
 - 시스템 구축·운영, 콜센터 운영, 사업관리비, 식생활교육, 사업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 현행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시범사업의 사업운영관리비는 9억원 규모(2023년 기준)
 - 바우처 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콜센터운영, 사업운영관리, 사업 모니터링, 홍보 등
- 추계결과, 농식품이용권 지급사업 전담기관 사업운영·관리비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총 664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 ▶ 동 소요비용은 전액 국비

표 7 농식품이용권 지급사업 전담기관 사업·운영관리비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총 사업·운영 관리비	지자체 운영지원	2,890	2,890	2,890	2,890	2,890	14,450
	사업 운영	11,118	11,210	11,309	11,416	11,518	56,571
	소계(A)	14,008	14,100	14,199	14,306	14,408	71,021
현행 사업·운영 관리비(기준선)	바우처 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450	450	450	450	450	2,250
	사업운영관리	201	204	208	211	214	1,038
	식생활 교육상담 및 홍보 등	222	222	222	222	222	1,110
	농식품부 보조사업자선정 위원회심사 등 사업운영비	30	30	30	30	30	150
	소계(B)	903	906	910	913	916	4,548
추가재정소요(C=A-B)		13,105	13,194	13,289	13,393	13,492	66,473

주: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국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4년 1조 1,144억원, 2028년 1조 1,556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5조 6,796억원(연평균 1조 1,359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2조 8,730억원(연평균 5,746억원)
- 지방비: 5년간 2조 8,066억원(연평균 5,613억원)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A)	11,013	11,130	11,236	11,332	11,421	56,131	11,226
국비	5,506	5,565	5,618	5,666	5,711	28,066	5,613
지방비	5,506	5,565	5,618	5,666	5,711	28,066	5,613
전담기관 사업운영·관리비(B) (국비)	131	132	133	134	135	665	133
추가재정소요(C=A+B)	11,144	11,261	11,368	11,466	11,556	56,796	11,359
국비	5,637	5,697	5,751	5,800	5,846	28,730	5,746
지방비	5,506	5,565	5,618	5,666	5,711	28,066	5,613

주: 1.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체 가구에 대해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2. 농식품이용권 지급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윤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2)

1. 비용추계 개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5.11.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은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총 7,895억원의 추가재정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948호)
발의일	2023.5.11.
대표발의	배현진 의원
주요내용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신규 설치
심사경과	보건복지위원회 회부(2023.5.12.) 및 상정(2023.6.22.)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7,895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요소는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¹⁾에 해당되는 시설 중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미지정 시설 수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단가를 곱하여 산출

(CCTV 설치 시설 수) 현재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해당되거나 미지정 상태인 63,160개소

- 현행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미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본 추계에서는 현재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해당되거나 미지정 상태인 63,160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을 추계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대상 시설은 2023년 기준 총 65,465개소²⁾임 ([표 2] 참조)

표 2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2023년 5월 기준)

(단위: 개소)

시·도 ¹⁾	시설별				합계
	도시공원 (제1호)	어린이집 (제2호)	초등·특수학교 (제3호)	유치원 (제4호)	
서울	58	5	85	5	153
부산	7	66	120	20	213
인천	-	8	6	4	18
경기 ²⁾	210	44	162	51	467
강원	26	1	8	-	35
전남	281	214	507	115	1,117
경남	136	52	88	26	302
합계	718	390	976	221	2,305

주: 1)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이 없음

2) 성남, 오산 미제출

자료: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취합 후 제출

(설치 단가) CCTV 설치 비용은 유사사례 단가를 준용하여 개소당 1,2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CCTV 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의 CCTV 1대당 설치 단가 250만원을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국립부설학교의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CCTV 1대당 단가는 250만원임(2022년과 2023년 CCTV 1대당 설치 단가는 250만원으로 동일)
- 본 추계는 아동보호구역 1개소당 5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2,305개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의 수가 총 12,214대로, 아동보호구역 1개소당 평균 5.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음
 - ▶ CCTV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추계 첫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 CCTV 내구연한은 7년³⁾으로 추계기간 동안 재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2022년 말 기준, 도시공원 17,534개소, 어린이집 33,246개소, 초등학교 6,123개소, 유치원 8,562개소로 총 65,465개소

3) 조달청고시제2021-41호, “내용연수” [별표1] 내용연수표(차량제외) 보안용카메라, 감시용녹화기 또는 녹음기 내용연수 7년

- ▶ 현재 아동보호구역에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자치구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 중이며, 관리운영비(전기료, 통신료 등)는 현행 CCTV 통합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예산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아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현재 아동보호구역의 CCTV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추가재정소요가 전액 지방비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2024~2028년) =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 수¹⁾ × 시설별 CCTV 설치단가²⁾

이 때, t 는 추계연도(2024~2028년), CCTV 설치 비용은 추계 첫 해에만 발생

- 1)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 수 $_{t=2024}$ = 전국 아동보호구역 대상 시설 수 $_{t=2023}$ ^{a)} - 전국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 수 $_{t=2023}$ ^{b)}
 - a)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2023년 기준 전국 아동보호구역 대상 시설 수는 65,465개소
 - b)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2023년 기준 전국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 수는 2,305개소
- 2) 시설별 CCTV 설치단가는 유사사례 단가를 준용하여 개소당 1,250만원^{d)}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c) 유사사례인 교육부 국립부설학교 CCTV 설치 단가는 1대당 250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d) 2023년 현재 아동보호구역 1개소당 5.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 1개소당 CCTV를 5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에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7,895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7,895억원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등) 중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에 CCTV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현행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 수에 시설별 설치단가를 곱하여 산출
- (CCTV 설치 시설 수) 현재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해당되나 미지정 상태인 63,160개소
- (설치 단가) 유사사례 단가를 준용하여 개소당 1,250만원 소요
 - ▶ 유사사례인 교육부의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CCTV 1대당 250만원의 설치 예산을 배정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의 수가 총 12,214대로, 아동보호구역 1개소당 5.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추계는 아동보호구역 1개소당 5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에서의 CCTV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개소,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설 수(A)	63,160	-	-	-	-
개소당 CCTV 설치단가(B)	0.125	-	-	-	-
합 계(A×B)	7,895	-	-	-	-

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전액 지방비로 구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 은 구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73)

1. 비용추계 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 4. 18. 하영의원 대표발의)은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은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4~2028년) 총 3조 8,063억원, 연평균 7,613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1430호)
발의일	2023.4.18.
대표발의	허영 의원
주요내용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은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상향
심사경과	정무위원회 회부(2023.4.19.) 및 상정(2023.6.15.)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3조 8,063억원, 연평균 7,613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 수에 지원단가를 곱한 총 재정소요액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 수에 보상금 월지급액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 ▶ 전몰·순직군경의 25세 미만 자녀 보상금은 현행법 시행령 [별표 4]에 근거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는 기존 사업인 6·25자녀수당 대상자 수에 수당 월지급액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 ▶ 개정안에 따라 25세 이상 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의 25세 이상 성년자녀에게 지원되고 있는 6·25자녀수당은 병급 지급이 불가능
- ▶ 6·25자녀수당은 현행법 시행령 [별표 5의5]에 근거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3급으로 가정)의 금액 수준으로 상향하는데 따른 비용은 배우자 수에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상향액에서 현행 보상금을 차감한 차액을 곱하여 추계

-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상이등급 3급의 보상금은 현행법 시행령 [별표 4]에 근거

표 2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2024~2028년) =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 보상금 지급 +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보상금 상향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 보상금 지급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¹⁾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²⁾

$$1) \text{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 \sum_t (\text{대상자}_t^a) \times \text{보상금 월지급액}_t^b \times 12(\text{개월})$$

이 때, t 는 추계 연도(2024~2028년)

- a) 대상자 _{t} 는 35,366명(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0.9% 적용
- b) 보상금 월지급액 _{t} 은 2,142,000원(2023년)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 적용

$$2) \text{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 = 6\cdot 25\text{자녀수당} = \sum_t \sum_i (\text{대상자}_{i,t}^a) \times \text{수당 월지급액}_{i,t}^b \times 12(\text{개월})$$

이 때, t 는 추계 연도(2024~2028년)

$i=1$ 은 제적자녀, $i=2$ 는 승계자녀, $i=3$ 은 신규자녀, $i=4$ 는 신규승계자녀생계곤란자, $i=5$ 는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대상자

- a) 대상자 _{i,t} 는 최근 5년간 대상자별 연평균 증가율 적용
- b) 수당 월지급액 _{i,t} 은 최근 5년간 대상자별 수당 연평균 증가율 적용
(단, 신규자녀는 전년대비 증가액의 5년간 평균치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text{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보상금 상향} = \sum_t (\text{배우자 수}_t^a) \times \text{보상금 차액}_t^b \times 12(\text{개월})$$

이 때, t 는 추계 연도(2024~2028년)

- a) 배우자 수 _{t} 는 8,132명(2023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1% 적용
- b) 보상금 차액 _{t} 은 2023년 상이등급 3급의 보상금 단가(2,630,000원)에서 현행 보상금 단가(1,847,000원)를 차감하여 산출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따른 비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조 4,508억원으로 추계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에서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는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 수에 보상금 월지급액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 ▶ 전몰·순직군경의 선순위 유족 중 25세 이상 자녀는 35,366명인데, 이들의 이력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추세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 중 79%를 차지하고 있는 6·25자녀수당 대상자(27,952명)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0.9%를 적용하여 추정
 - ▶ 전몰·순직군경의 25세 미만 자녀의 보상금 월지급액은 2023년 2,142,000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를 곱하여 추정
- 현행 제도 하의 총재정소요는 기존 사업인 6·25자녀수당 대상자 수에 수당 월지급액 및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 ▶ 6·25자녀수당 대상자는 2023년 기준 제적자녀(5,489명), 승계자녀(9,910명), 신규자녀(12,553명), 신규승계자녀 생계곤란자(592명),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대상자(5,489명)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제적자녀 0.2%, 승계자녀 -1.0%, 신규자녀 3.0%, 신규승계자녀 생계곤란자 2.3%,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대상자 0.2%를 적용하여 추정함¹⁾
 - ▶ 6·25자녀수당의 2023년 월 지급단가는 제적자녀 1,536,000원, 승계자녀 1,307,000원, 신규자녀 439,000원, 신규승계자녀 생계곤란자 114,000원,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대상자 80,000원 씩 지급
 - 제적자녀와 승계자녀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4.6% 적용, 신규자녀는 전년대비 증가액의 4년간 평균치인 6.3만원씩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고, 신규승계자녀 생계곤란자와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대상자의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1) 6·25자녀수당 대상자 중 제적자녀는 전쟁고아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이 중지된 경우, 승계자녀는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신규자녀는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이후 사망한 경우를 말함

표 3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에게도 보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요소: 2024~2028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요소(A=B×C×12, 억원)		9,646	10,235	10,860	11,523	12,226	54,489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수(B, 명)		35,697	36,031	36,368	36,708	37,052	
보상금 월지급단가(C, 천원)		2,252	2,367	2,488	2,616	2,750	
현행 제도의하의 총재정요소(D=O+P+Q+R+S, 억원)		3,509	3,741	3,984	4,239	4,506	19,980
대상자 (명)	제적자녀(E)	5,498	5,507	5,516	5,525	5,534	
	승계자녀(F)	9,806	9,704	9,602	9,502	9,402	
	신규자녀(G)	12,933	13,325	13,728	14,144	14,572	
	신규승계자녀생계곤란자(H)	606	620	634	649	664	
	제적자녀 위로가산(I)	5,498	5,507	5,515	5,524	5,533	
보상금 월지급단가 (천원)	제적자녀(J)	1,607	1,681	1,758	1,839	1,924	
	승계자녀(K)	1,367	1,431	1,497	1,566	1,638	
	신규자녀(L)	502	565	628	691	754	
	신규승계자녀생계곤란자(M)	114	114	114	114	114	
	제적자녀 위로가산금(N)	80	80	80	80	80	
소요비용(억 원)	제적자녀(O=E×J×12)	1,060	1,111	1,164	1,219	1,277	5,831
	승계자녀(P=F×K×12)	1,609	1,666	1,724	1,785	1,848	8,633
	신규자녀(Q=G×L×12)	779	903	1,035	1,173	1,318	5,208
	신규승계자녀 생계곤란자(R=H×M×12)	8	8	9	9	9	43
	제적자녀 위로가산금(S=I×N×12)	53	53	53	53	53	265
추가재정요소(A-D, 억원)		6,136	6,493	6,875	7,283	7,720	34,5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의 금액 수준으로 상향하는데 따른 비용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555억원으로 추계

-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는 2023년 8,132명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7.1%를 적용하여 추정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의 보상금 월지급액은 2023년 1,847,000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 적용하여 추정
- 상이등급 3급의 보상금 월지급액은 2023년 2,630,000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 적용하여 추정

표 4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요소: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배우자 수(A, 명)		7,551	7,012	6,511	6,046	5,614	
월지급단가	개정안(B, 천원)	2,764	2,906	3,054	3,211	3,375	
	현행(C, 천원)	1,941	2,041	2,145	2,255	2,370	
	차액(D=B-C, 천원)	823	865	909	956	1,005	
소요비용(A×D×12, 억원)		746	728	710	693	677	3,5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에게도 보상금 지급 시 비용과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상향 시 비용을 합하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2024~2028년) 총 3조 8,063억만원, 연평균 7,613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5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 상향에 따른 비용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전몰·순직군경의 25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A)	6,136	6,493	6,875	7,283	7,720	34,508	6,902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 상향(B)	746	728	710	693	677	3,555	711
합 계(A+B)	6,882	7,221	7,586	7,977	8,397	38,063	7,6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 지원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2)

1. 비용추계 개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5.4.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¹⁾하는 안으로, 5년간(2024~2028년) 총 12조 7,083억원, 연평균 2조 5,41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806호)
발의일	2023.5.4.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주요내용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심사경과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3.5.8.) 및 상정(2023.7.5.)
추계결과	5년간(2024~2028년) 12조 7,083억원, 연평균 2조 5,417억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 기본공제신청 인원 및 기본공제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5년간(2024~2028년) 세수효과 추계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본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세수효과 추계
- 총급여(종합소득) 규모별로 기본공제금액 인상 전/후의 1인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을 산출한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감소분 추계
 - 소득구간별로 현행 1인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른 기본공제액 증가분을 차감하여 개정안의 과세표준 산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해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 산출
 -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감면액을 반영하여 결정세액 감소분 도출 후 소득구간별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감소분 추계

1)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현재까지 동일금액 유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개정안 적용
 - 2023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4년부터 세수효과 발생
 -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2021년 귀속기준 세수효과 산출 후, 이후 기간의 세수효과는 최근 4년간 기본공제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표 2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자 및 공제금액**

인적공제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현행	개정안
기본공제	본인공제	해당 거주자	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대상자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배우자 ¹⁾		
	부양가족 공제 ¹⁾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 위탁아동 등		
추가공제 ²⁾		70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한부모공제 부녀자세대주	연 100만원 연 200만원 연 100만원 연 50만원	좌 등

주: 1)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 충족 시 적용
 2)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 요건 충족하는 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추가 공제

표 3 **비용추계 산식**

2021년 기준 세수효과 = $\sum_i 1\text{인당 결정세액 변동분}^{1)} \times \text{적용인원}^{2)}$, i 는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 소득구간

- 1) 1인당 결정세액 변동분 : 개정안 1인당 결정세액 - 현행 1인당 결정세액
 - 개정안 1인당 과세표준 = 현행 1인당 과세표준 - 기본공제 신청자 1인당 기본공제금액 증가액
 - 개정안 1인당 산출세액 = 개정안의 1인당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개정안 1인당 결정세액 =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2) 적용인원: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규모별 기본공제 신청 인원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50만원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1년 기준 2조 3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1조 3,998억원, 종합소득세수는 6,3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제외하여 추계
 -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추계함에 따라 2021년 기준 세수효과 제시

표 4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근로소득세, 2021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현행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결정세액		결정세액 변동분 ²⁾	세수효과 (억원)
	기본공제 인원 ¹⁾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A	B0	B1	C0	C1	D=C1-C0	E=D×A
합계	10,408,852	-	-	-	-	-	-13,998
1천만 이하	-	-	-	-	-	-	-
1.5천만 이하	124,524	5.2	4.7	0.0	0.0	-0.01	-14
2천만 이하	577,469	7.2	6.6	0.1	0.0	-0.02	-96
3천만 이하	2,204,856	11.2	10.7	0.2	0.1	-0.02	-430
4천만 이하	1,758,070	17.2	16.6	0.5	0.4	-0.06	-1,131
4.5천만 이하	773,943	21.8	21.0	1.0	0.9	-0.09	-669
5천만 이하	680,481	25.0	24.1	1.4	1.3	-0.10	-709
6천만 이하	1,111,374	30.3	29.2	2.1	1.9	-0.13	-1,439
8천만 이하	1,465,408	41.4	40.1	3.6	3.4	-0.17	-2,464
1억 이하	839,989	58.7	57.2	6.8	6.5	-0.31	-2,588
2억 이하	783,308	96.2	94.7	16.4	15.9	-0.51	-3,964
3억 이하	61,124	199.0	197.5	53.5	52.9	-0.56	-339
5억 이하	20,615	327.9	326.5	102.7	102.2	-0.54	-112
10억 이하	6,244	605.4	604.1	215.0	214.5	-0.55	-35
10억 초과	1,445	1,939.8	1,938.5	800.1	799.5	-0.56	-8

주: 1) 결정세액이 있는 기본공제 신청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추정치로, 총급여규모별 종합소득신고자 비율(국세청 제출)을 반영하여 추정함

2)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종합소득세, 2021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종합소득금액 규모	현행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결정세액		결정세액 변동분 ²⁾	세수효과 (억원)
	기본공제 인원 ¹⁾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A	B0	B1	C0	C1	D=C1-C0	E=D×A
합계	6,819,235	-	-	-	-	-	-6,390
1천만 이하	1,777,683	2.9	2.3	0.1	0.1	-0.02	-
2천만 이하	1,804,999	9.7	9.0	0.3	0.3	-0.03	-383
3.5천만 이하	1,377,710	19.3	18.4	1.0	0.9	-0.10	-533
4천만 이하	258,075	29.0	28.0	2.1	2.0	-0.11	-1,312
5천만 이하	368,136	35.6	34.5	3.0	2.8	-0.12	-297
6천만 이하	252,932	44.6	43.5	4.1	4.0	-0.14	-459
8천만 이하	318,269	57.8	56.7	6.5	6.2	-0.24	-343
1억 이하	190,213	77.2	76.0	10.5	10.2	-0.25	-754
2억 이하	311,396	122.7	121.5	23.3	22.9	-0.37	-470
3억 이하	75,085	227.5	226.3	56.6	56.2	-0.41	-1,168
5억 이하	46,949	363.2	362.1	103.0	102.6	-0.43	-306
7억 이하	15,798	566.6	565.4	175.3	174.9	-0.44	-200
10억 이하	9,658	804.1	802.9	263.6	263.2	-0.44	-70
10억 초과	12,332	2,745.4	2,744.3	1,017.1	1,016.7	-0.44	-43

주: 1) 결정세액이 있는 자

2) 현행 소득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반영하여 산출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4년간 기본공제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

- 근로소득세 3.4%, 종합소득세 6.8%

표 6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적용인원	10,608	11,353	12,109	12,237	12,916	11,845
(증가율)		(7.0%)	(6.7%)	(1.1%)	(5.5%)	(2.7%)
공제금액	308,927	324,554	340,508	342,641	353,294	333,985
(증가율)		(5.1%)	(4.9%)	(0.6%)	(3.1%)	(3.4%)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본공제 규모 추이: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적용인원	6,401	6,905	7,463	7,844	9,334	7,590
(증가율)		(7.9%)	(8.1%)	(5.1%)	(19.0%)	(9.9%)
공제금액	171,459	180,484	189,941	193,490	223,350	191,745
(증가율)		(5.3%)	(5.2%)	(1.9%)	(15.4%)	(6.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4~2028년 동안 총 12조 7,083억원 (연평균 2조 5,4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4	2025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14,969	-15,480	-16,008	-16,554	-17,119	-80,130	-16,026
종합소득세	-11,018	-8,007	-8,594	-9,181	-10,153	-46,953	-9,391
합계	-25,987	-23,487	-24,602	-25,735	-27,272	-127,083	-25,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 정 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5)

1. 비용추계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3.28. 이종배의원 대표발의)는 2013년 이후 적용이 종료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도입하는 내용으로, 5년간(2025~2029년) 123.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

표 1 비용추계 개요

의안명(의안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948호)
발의일	2023.3.28.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주요내용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심사경과	기획재정위원회 회부(2023.3.29.) 및 상정(2023.4.17.)
추계결과	5년간(2025~2029년) 123억 9,000만원, 연평균 24억 8,000만원

2.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13년말 일몰기한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미시행중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투자·출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해당 감면은 2008년 도입되어 2013년까지 운용되다가 일몰기한이 종료되어 현재 미시행 중으로 개정안은 이를 재도입하면서 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5~10%로 규정
 - ▶ 공제율: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3% → (개정안)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그 외 5%
 - ▶ 개정안은 별도의 적용기한을 규정하지 않음
-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2011~201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 과세특례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발생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귀속분이 감면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차에 따라 2013년 투자액에 따른 감면실적은 2014년 발생

표 2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감면실적: 2011~2014년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감면실적 계	394	282	5	350
- 소득세	-	0.03	0.01	0.1
- 법인세	394	282	5	350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제출자료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의 세수효과는 향후 해외자원개발 투자수요 추정치에 과거 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과 기업규모별 투자액 비중 등을 고려하여 추계

- 과세특례 대부분이 법인세 감면실적에서 발생함에 따라 재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는 법인세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 향후 해외자원개발 투자수요는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조사한 2024~2027년 용자수요를 바탕으로 추정
 - ▶ 해외자원개발협회의 “해외자원개발 용자 5개년 수요조사(2022)”에 따르면, 향후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단, 투자수요는 용자수요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용자외의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하여 투자할 계획인 경우 조사에 집계되지 않아 실제 투자규모와 수요조사는 다를 수 있음
-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은 과거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가 시행되던 2011~2013년 연평균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
 - ▶ 2011~2013년(귀속년도 기준) 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 0.32%
 - ※ 단, 예년의 추이와 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이 크게 차이나는 2012년 투자액 및 2013년 감면 실적은 분석에서 제외
- 해외자원개발 투자수요의 기업규모별 비중은 최근 3년(2019~2021년) 투자실적의 기업규모별 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 ▶ 기업규모별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중(‘19~’21년 연평균, %): 대기업 98.0,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0.7
 - ▶ 기업규모별 공제율 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3년 이전 과세특례 시행시 적용되었던 공제율(3%) 대비 개정안의 기업규모별 공제율을 비율로 반영하여 추정

3. 비용추계 상세 내역

해외자원개발협회의 “해외자원개발 용자 5개년 수요조사”에 따르면, 향후 해외자원개발 투자수요는 2023년 7.7억달러에서 2027년 3.1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3 해외자원개발 용자 5개년 수요조사: 2023~2027년

(단위: 억달러)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용자수요	7.7	6.6	2.8	2.2	3.1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제출자료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시행중이던 2011~2013년의 해외자원개발투자액과 2012~2014년※의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감면실적의 평균 비중을 추정

- ※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귀속분이 감면실적으로 발생하는 시차를 감안하여 t년의 투자액과 t+1년의 감면 실적을 대비하여 비중을 산정
-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치를 제외하고 추정한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감면실적의 연평균 비중은 0.32% 수준
 - ▶ 2013년의 감면실적은 전년(2012년) 또는 후년(2014년) 대비 1% 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특이치로 간주하여 비중 산정에서 제외

표 4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 산정

구분	2012	2014
t-1년도 해외자원개발투자액(A, 억달러)	116	75
t-1년도 평균환율(B, 원/달러)	1,108	1,095
t년도 감면실적(C, 억원)	116	75
비중(C/[A×B], %)	0.22	0.42

주: 2012년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및 2013년 감면실적은 특이치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해외자원개발투자액) 해외자원개발협회 제출자료; (평균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감면실적)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최근 3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기업규모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투자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 2019~2021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기업규모별 평균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98.0%), 중견기업(1.3%), 중소기업(0.7%) 순

표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투자금액의 기업규모별 비중: 2019~2021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연평균 (2019~2021년)
중소기업	0.6	0.7	0.8	0.7
중견기업	1.7	1.7	0.4	1.3
그 외 기업	97.7	97.6	98.8	98.0

주: 그 외 기업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공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등이 포함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향후 해외자원개발 투자수요 전망치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 개정안의 기업규모별 공제율 규정 등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향후 해외자원개발 투자수요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단, 2028년은 2027년과 동일한 투자수요를 가정

표 6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기업규모별 투자수요 전망치: 2024~2028년

(단위: 억달러)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A)	6.6	2.8	2.2	3.1	3.1
- 중소기업(A×0.7%)	0.05	0.02	0.02	0.02	0.02
- 중견기업(A×1.3%)	0.09	0.04	0.03	0.04	0.04
- 그 외기업(A×98.0%)	6.4	2.8	2.1	3.0	3.0

자료: 해외자원개발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업규모별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수요와 해외자원개발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 개정안의 공제율 규정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기업규모별 공제율 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3년 이전 과세특례 시행시 적용되었던 공제율(3%) 대비 개정안의 공제율을 비율로 반영하여 추정
 - ※ 중소기업: 10%/3%, 중견기업: 7%/3%, 그 외: 5%/3%
 - 환율은 2022년 평균 환율(1,292원/달러)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용

표 7 개정안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재도입의 세수 감소효과 추정치: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t-1년도 해외자원개발투자액 (A, 억달러)	- 중소기업	0.05	0.02	0.02	0.02	0.02
	- 중견기업	0.09	0.04	0.03	0.04	0.04
	- 그 외 기업	6.4	2.8	2.1	3.0	3.0
환율(B, 원/달러)		1,292				
투자액 대비 감면실적 비중(C, %)		0.32				
t년도 감면액 추정치(억원)	- 중소기업($A \times B \times C \times 10/3$)	0.6	0.3	0.2	0.3	0.3
	- 중견기업($A \times B \times C \times 7/3$)	0.8	0.4	0.3	0.4	0.4
	- 그 외 기업($A \times B \times C \times 5/3$)	44.6	19.1	14.8	20.8	20.8
	감면액 추정치 계	46.0	19.7	15.3	21.4	21.4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에 따라 법인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23.9억원 (연평균 24.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안 제104조의15)		-46.0	-19.7	-15.3	-21.4	-21.4	-123.9	-24.8

(단위: 억원)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재정정보의 월별 공개 현황 및 개선과제
기초연금 제도 현황 및 입법 동향에 따른 재정전망
아동수당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재정정보의 월별 공개 현황 및 개선과제

-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

윤 주 철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55)

1. 재정정보의 월별 공개 현황

재정정보의 공개는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재정규범은 주요 재정정보의 생산·유통·공개를 재정당국의 주요 책무로 규정함

- 「국가재정법」(2006.10.4. 제정, 2007.1.1. 시행)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함¹⁾

예산편성·심의·집행·결산이라는 재정과정에서 생산하는 정보뿐 아니라 일상적인 재정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수요가 커지면서 재정당국은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주기를 단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15.6.30.)으로 2015년 7월부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등을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2017.12.29.)으로 2018년 7월부터 공개 주기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됨²⁾
-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이라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2015년 5월 시범 실시 후 2015년 7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함

1)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매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월·분기·반기 또는 연(年)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을 통한 재정정보 공개와 별도로 「월간 재정동향」이라는 책자를 통해서도 주요 월별 재정정보와 재정지표를 공개하고 있음

- 책자 형태의 「월간 재정동향」은 2014년 2월부터 발간되고 있는데, 최근 호(2023년 8월) 기준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주요 재정정보와 재정지표는 다음과 같음³⁾
 - ▶ (총수입) 2023년 6월 기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의 주요 수입항목별 실적 및 진도율, 전년 동기 대비 비교
 - ▶ (총지출) 2023년 6월 기준 예산·기금의 성질별 실적 및 진도율, 전년 동기 대비 비교
 - ▶ (재정수지) 2023년 6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실적 및 전년 동기 대비 비교
 - ▶ (국가채무) 2023년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유형별 실적 및 전월·전년말 대비 비교
 - ▶ (국채시장) 2023년 7월 기준 국고채 잔액, 발행액, 평균 조달금리 등

「월간 재정동향」은 최근 재정운용 현황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제시하는 등 「열린재정」의 1차자료를 분석·가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으나, 지나치게 축약되어 있거나 중요 정보를 포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최근 세수 부진으로 총수입 진도율이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 현황과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재정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이에 재정수지 정보와 함께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에 관한 정보 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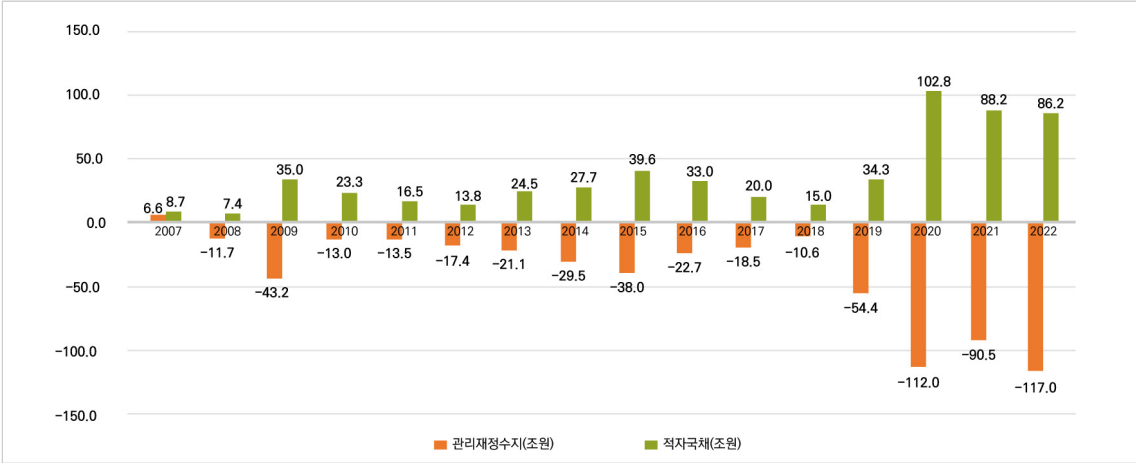
수입보다 지출이 크면 재정수지는 적자이고, 이러한 적자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되며 그에 따른 상환의무와 이자지출이 발생함

- 2023년 총수입은 본예산 기준으로 625.7조원으로 예상되며, 총지출은 638.7조원으로 계획되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3.1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제외)는 58.2조원
 -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보전하는데,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적자 국채(일반회계 적자보전)는 45.8조원 규모이며 발행한 만큼 국가채무(적자성채무)가 증가함
 - ▶ 그 밖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금여유자금, 민간차입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보전함

3) 「월간 재정동향」은 크게 재정운용 동향을 보여주는 1부와 기타 부문별 현황을 보여주는 2부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는 재정총량에 대한 주요 재정정보와 재정지표를 다루는 1부를 중심으로 서술함

그림 1 관리재정수지 및 적자국채 발행 추이

(단위: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열린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6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5.4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며, 2023년 6월까지 적자국채 34.0조원을 발행하여 부족자금을 조달함

- 「월간 재정동향」(2023.8.)에 따르면, 2023년 6월(누계) 기준 총수입은 296.2조원, 총지출은 351.7조원임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55.4조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임

표 1 2023년 6월 기준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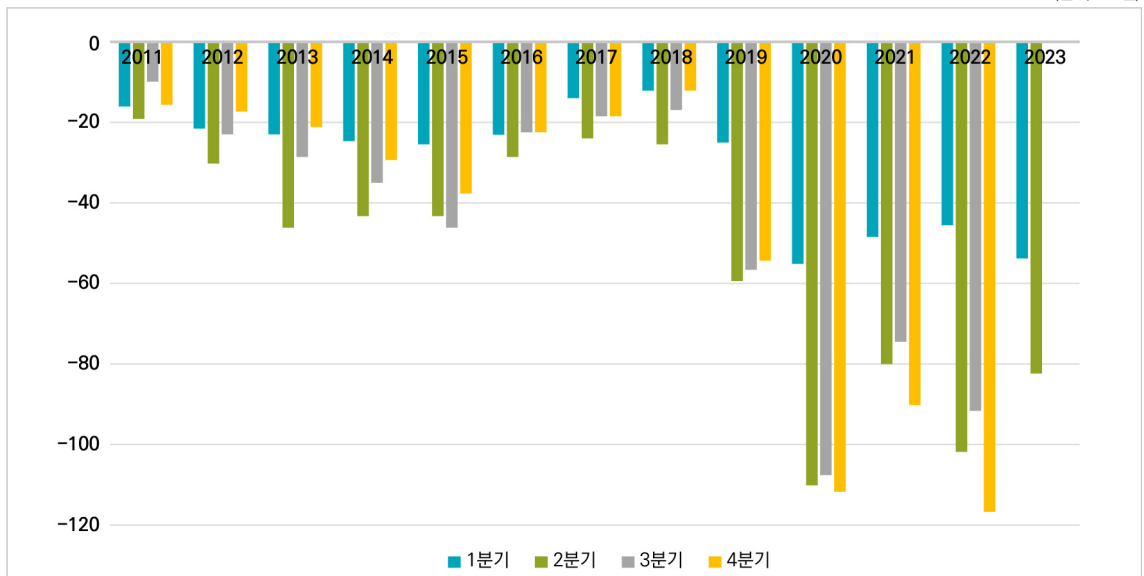
구분	'22년						'23년(잠정)			
	추경 (A)	결산 (B)	6월 (C)	6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6월 (H)	6월 (누계, I)	진도율 (J=I/G)
					추경 (E=D/A)	결산 (F=D/B)				
총수입(A)	609.1	617.8	40.7	334.4	54.9	54.1	625.7	39.6	296.2	47.3
총지출(B)	679.5	682.4	66.9	409.4	60.2	60.0	638.7	64.3	351.7	55.1
통합재정수지 (C=A-B)	△70.4	△64.6	△26.1	△75.0	—	—	△13.1	△24.7	△55.4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40.4	52.5	4.5	26.9	—	—	45.1	5.8	27.5	—
관리재정수지 (E=C-D)	△110.8	△117.0	△30.7	△101.9	—	—	△58.2	△30.5	△83.0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8월호

- 2011년 이후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1분기에 비해 2·3분기에 수지가 악화되었다가 4분기에 회복하는 주기가 있음
 - ▶ 다만, 2013~2018년의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연말까지 유지되었으나,⁴⁾ 2019년 이후 대규모 추경 편성 등으로 연말 재정수지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악화됨
 - ▶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아 매월 등락하므로 특정 시점의 재정수지로 해당연도의 재정운용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2023년의 경우 과거 추이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큼

그림 2 분기별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재정수지 규모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보인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월간 재정동향」에 관련 정보가 없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 먼저, 적자국채 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중 일반회계에 위탁하는 금액과 같음
 - ▶ 따라서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 중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위탁」 사업의 월별 집행상황을 검색하여야 함
 - ▶ 검색 결과,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은 45.8조원으로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6월 기준 지출누계금액은 34.0조원임

4)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재정수지는 월별로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 1분기 실적으로 연간 적자를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023. 5. 14.

표 2 2022~2023년 일반회계 적자보전 실적

(단위: 조원)

연도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91.2	—	16.0	12.0	10.5	11.5	10.0	—	13.0	1.0	—	—	12.2	86.2
2023	계획	실적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45.8	4.0	6.0	12.0	4.0	4.0	4.0							34.0

주: 2023년의 경우 계획은 본예산 기준이며, 1~6월은 월 실적 기준임

자료: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이러한 조달 방법은 통상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국고금 관리법」 제32조),⁵⁾ 해당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⁶⁾
 -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차입에 따른 이자지출은 발생함
-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예산총칙에 규정되는데, 2023년 예산총칙 상 최고액은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의 경우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8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억원임

5)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표 3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차입한도(통합계정)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0.0	40.0
최고차입 실적*	합계	20.5	22.0	15.9	8.9	2.0	25.0	30.0	18.9	20.4
	재정증권	12.0	12.0	6.9	6.9	2.0	19.0	15.3	12.4	8.9
	한국은행 일시차입	8.5	10.0	9.0	2.0	0.0	6.0	14.7	6.5	11.5
이자(억원)	합계	1,850	1,308	555	160	24	1,648	1,133	293	668
	재정증권	1,685	1,112	529	159	24	1,368	610	275	394
	한국은행 일시차입	165	196	26	2	—	280	522	18	273

주: *최고차입실적은 연중 최고 차입일 기준 잔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음
 - ▶ 재정증권의 경우, 2023년 월별 발행 계획은 2월 4.0조원, 3월 5.0조원, 4월 4.0조원, 5월 7.5조원, 6월 6.0조원임
 - ▶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경우, 한국은행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 월별 차입 금액은 1월 3.5조원, 2월 16.5조원, 3월 28.1조원, 4월 17.1조원, 5월 6.1조원, 6월 15.9조원임⁷⁾

표 4 2023년 월별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정증권 발행	—	4.0	5.0	4.0	7.5	6.0						
한국은행 일시차입	3.5	16.5	28.1	17.1	6.1	15.9						

주: 1. 재정증권 발행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월별 발행 계획 기준임

2.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국고금 통합계정에 대한 월별 대출금액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수지 정보와 함께 적자국채 발행 규모 등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국채),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은 제도의 목적과 운용 방식이 다름에도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음

7) 2023년 1~6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1,141억원임. 이때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함(한국은행, 2023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2023. 1. 13.).

-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 현황과 함께 국고 부족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재정정보를 MTS (Monthly Treasury Statement) 보고서 형태로 매일 발간하고 있으며, 수지 적자분에 대한 자금 조달을 명시하고 있음

미국 재무부의 최근 MTS (Monthly Treasury Statement) 보고서(2023.7.13.)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총수입은 3,412,520백만달러, 총지출은 4,805,160백만달러로 재정수지는 1,392,640백만달러 적자임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적자에 대해 자금 조달 방법(Means of Financing)을 적시하고 있는데, 국채(Borrowing from the Public)로 1,126,303백만달러 조달, 운영자금 감소(Reduction of Operating Cash) 233,599백만달러, 기타(By Other Means) 32,737백만달러임

Summary of Budget and Off-Budget Results and Financing of the U.S. Government, June 2023 and Other Periods
[\$ millions]

Classification	This Month	Current Fiscal Year to Date	Budget Estimates Full Fiscal Year ¹	Comparable Prior Period Year to Date (2022)	Estimates Next Fiscal Year (2024) ¹
Total On-Budget and Off-Budget Results					
Total Receipts	418,317	3,412,520	4,802,483	3,835,344	5,036,384
On-Budget Receipts	273,669	2,493,417	3,604,388	3,029,091	3,828,230
Off-Budget Receipts	144,648	919,103	1,198,095	806,252	1,208,154
Total Outlays	646,085	4,805,160	6,371,827	4,350,411	6,882,738
On-Budget Outlays	558,489	3,913,721	5,159,771	3,559,893	5,567,203
Off-Budget Outlays	87,596	891,439	1,212,056	790,518	1,315,535
Total Surplus(+) or Deficit(-)	-227,768	-1,392,640	-1,569,344	-515,067	-1,846,354
On-Budget Surplus(+) or Deficit(-)	-284,820	-1,420,303	-1,555,383	-530,802	-1,738,973
Off-Budget Surplus(+) or Deficit(-)	57,052	27,664	-13,961	15,735	-107,381
Total On-Budget and Off-Budget Financing	227,768	1,392,640	1,569,344	515,067	1,846,354
Means of Financing:					
Borrowing from the Public	823,325	1,126,303	1,657,481	1,602,517	1,872,830
Reduction of Operating Cash, Increase(-)	-353,883	233,599	-14,006	-567,246	
By Other Means	-241,674	32,737	-74,130	-520,204	-26,476

주: 1 These estimates are based on the FY 2024 Budget, releas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n March 9, 2023.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Receipts and Outlay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Fiscal Year 2023 Through June 30, 2023, and Other Periods, Updated July 13, 2023

기초연금 제도 현황 및 입법 동향에 따른 재정전망

김 우 림 추계세제분석관 (02-6788-3738)

1. 분석 배경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기초연금의 개편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방침

- 기초연금은 정부 일반재정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국민연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상자 등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
 - ▶ 기초연금의 전신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이며,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됨
 - 2008년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60%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9년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¹⁾의 5% 수준으로 설정
 -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도입 당시 급여액을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으로 확대
-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기초연금의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중
 - ▶ 국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7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023년 10월까지 기초연금을 포함한 한국형 다층노후 소득보장 그랜드 플랜을 제시할 계획
 -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도 포함하여 2023년 10월 발표할 방침
 - 정부는 지난 2018년 수행·수립된 제4차 재정계산 및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도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음

1) 국민연금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가리킴

본 고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발의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추가재정요소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다만, 현재 발의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결정할 공적연금 개혁 방향은 상이할 수 있음

2. 기초연금 제도 변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수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인 기준연금액은 월 323,180원

-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수급률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매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수급자 수가 65세 노인의 70%가 되도록 대상자의 선정기준(‘선정기준액’²⁾)을 설정
- 공적연금 비수급권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연금 급여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이하인 사람 등은 기준연금액 전액을 수급

표 1 기초연금 제도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다만,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중 종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사람과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 중 65세 도달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로 대상자에 포함)	
급여액	2023년 기준 최대 급여액(기준연금액)은 월 323,180원 ※ 「기초연금법」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되, 5년에 한번씩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여 급여를 조정하도록 규정	
급여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A급여액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직역연금 특례	기준연금액의 50%(부가연금액)를 최대 급여액으로 설정하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주: A급여란 국민연금 A값에 가입자별 지급률과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한 값
자료: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소득인정액으로 정의하고,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월 단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

- 부부 동시 수급자, 국민연금 급여 등³⁾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사람, 소득인정액과 부부 기초연금액(국민연금 연계 감액·부부감액 적용 후 금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 등의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 직역연금 특례자에게는 기준연금액의 50%인 부가연금액을 최대 급여액으로 설정하고, 해당되는 경우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급여 감액을 적용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14년 87만원에서 2023년 202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2014년 139.2만원에서 2023년 323.2만원으로 증가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본인과 배우자 외에 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⁴⁾
 -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되며, 2023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 적용하여 산출⁵⁾
 -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소득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장애인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⁶⁾
 -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유가증권·수익증권 등의 금융재산을 고려하되,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기본재산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여 산정⁷⁾
 - 2023년 기준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3)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불활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가리키며, 본 고에서 언급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은 이러한 국민연금 급여 등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을 가리킴

4) 공제되는 소득의 범위 등이 매년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공제액은 2014년 48만원에서 2023년 108만원으로 증가

5)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상시근로소득} - 108\text{만원}) + \text{기타 소득}$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입양 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직접지불금,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지원금,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생활안정 보다는 생활필수적인 수당인 의료비 성격),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승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통장·이장 등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호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7)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①)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②

① 기본재산액: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② 고금자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표 2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액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단독가구	870	930	1,000	1,190	1,310	1,370	1,480	1,690	1,800	2,020
부부가구	1,392	1,488	1,600	1,904	2,096	2,192	2,368	2,704	2,880	3,232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단독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액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액의 59.5%(2015년)에서 97.2%(2023년)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부부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액은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5.9%(2015년)에서 93.5%(2023년) 수준으로 지속 상승⁸⁾
 -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2015년부터 2023년 연평균 증가율은 모두 10.2%로 같은 기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과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각각 3.6%, 3.3%)보다 높게 나타남
 -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인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들의 소득 및 자산의 증가 속도가 타 복지급여 수급자들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이 제외되므로, 주요 공공부조 급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및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액과 1·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변화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A)	870	930	1,000	1,190	1,310	1,370	1,480	1,690	1,800	2,020	10.2
	(A/C)	-	(59.5)	(61.5)	(72.0)	(78.3)	(80.3)	(84.2)	(92.5)	(92.6)	(97.2)	
	부부가구(B)	1,392	1,488	1,600	1,904	2,096	2,192	2,368	2,704	2,880	3,232	10.2
	(B/D)	-	(55.9)	(57.8)	(67.7)	(73.6)	(75.4)	(79.1)	(87.6)	(88.3)	(93.5)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C)	-	1,562	1,625	1,653	1,672	1,707	1,757	1,828	1,945	2,078	3.6
	2인가구(D)	-	2,660	2,767	2,814	2,847	2,907	2,992	3,088	3,260	3,456	3.3

주: 1.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부부합산 소득만을 고려하는 반면,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을 모두 고려함에 유의

2. 연평균 증가율은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2023년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을 기입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8)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의 부부합산 소득을 고려하는 반면, 기준중위소득은 정책적으로 설정된 가구원수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소득 고려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기준중위소득이 주요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기준 상대적 수준의 파악을 위해 비교

- 이와 같은 선정기준액의 적용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6~69% 수준을 유지
 - ▶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3만명에서 2022년 623.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표 4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2014~2022년

(단위: 천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기초연금 수급자 수(A)	4,353	4,495	4,581	4,869	5,126	5,346	5,660	5,973	6,239	4.6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비율)	(66.8)	(67.3)	(66.4)	(67.4)	(68.1)	(68.1)	(68.1)	(68.9)	(67.4)	

주: 1.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

2.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중 재외국민을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4년 월 20만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다가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되었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설정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중

- 2021년 월 30만원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기 전,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소득하위 20%에 기준연금액 30만원을,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에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선(先) 적용함

표 5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추이

(단위: 원)

적용 기간	'14.7~ '15.3	'15.4~ '16.3	'16.4~ '17.3	'17.4~ '18.3	'18.4~ '18.8	'18.9~ '19.3	'19.4~ '19.12	'20.1~ '20.12	'21.1~ '21.12	'22.1~ '22.12	'23.1~ '23.12
기준 연금액	200,000	202,600	204,010	206,050	209,960	250,000	253,750 (300,000)	254,760 (300,000)	300,000	307,500	323,180

주: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에 대한 괄호 안 수치는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2020년의 괄호 안 수치는 소득하위 40% 이하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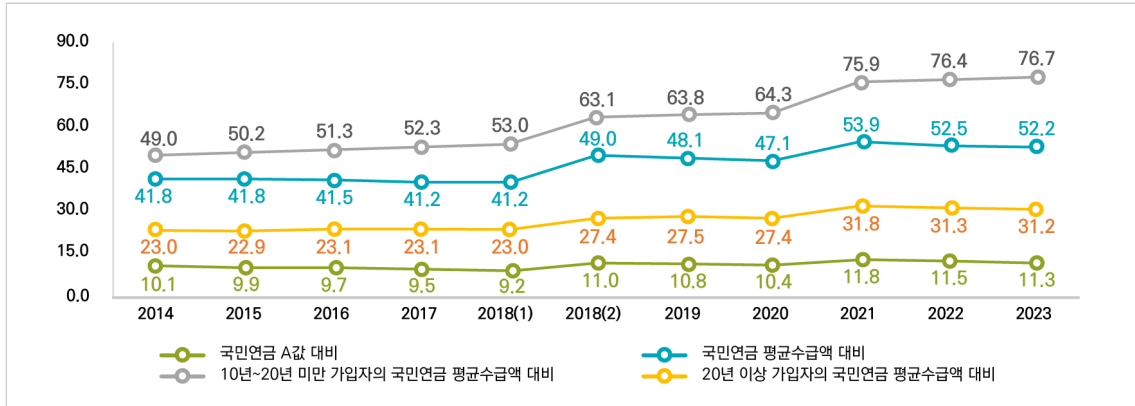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 수준은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후 2018년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할 당시 기준연금액 수준은 국민연금 A값의 11% 수준이 되었고, 2021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당시에는 그 수준이 11.8%로 증가
 - ▶ 2023년 기준연금액은 국민연금 A값의 11.3% 수준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수급액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사람의 노령연금 평균수급액 대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비율은 2014년 49%에서 2023년 4월 기준 76.7%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018년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과의 격차가 예년보다 크게 축소됨

9) 2022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3%이고(20년 이상 가입자는 17.8%), 특례·분할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57.5%(20년 이상 가입자는 23.6%)

그림 1 국민연금 A값 및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대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비율

(단위: %)



주: 1.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을 가리키며, 전체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포함(특례·분할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
 2. 2018(1)은 2018년 4월~8월의 기준연금액 209,960원을 적용한 수치이고, 2018(2)는 2018년 9월~2019년 3월의 기준연금액 25만원을 적용한 수치
 3. 2023년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4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기초연금 소요재정은 국비와 지방비 합산 기준으로 2014년 6.8조원에서 2023년 22.6조원으로 연평균 14.2% 증가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연금 국비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5.3%로 지방비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10.1%)을 상회
 - ▶ 현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기초연금 총 지출액의 40%~90%를 부담하고 있고,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4~6%를 추가 부담

표 6 기초연금 지출현황: 2014~2022년

(단위: 조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기초연금 지출액	6.8	9.7	9.9	10.5	12.0	14.8	16.7	18.9	20.1	22.6	14.2
국비	5.1	7.3	7.6	8.1	9.2	11.5	13.1	14.9	16.1	18.5	15.3
지방비	1.7	2.4	2.4	2.5	2.8	3.3	3.6	4.0	3.9	4.1	10.1

주: 제도운영비를 제외한 수치이며 2014년부터 2022년은 결산 기준, 2023년은 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가. 입법 동향

2023년 8월 기준, 국회에서 심사 중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3건¹⁰⁾ 중 기초연금의 대상자 또는 급여 수준을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건은 19건¹¹⁾이고, 그중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은 7건¹²⁾으로, 대상자 범위의 확대나 감액제도 폐지, 급여의 인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서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 (감액제도 폐지) 현재 부부 동시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급여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 (급여 인상)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표 7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2123201	장경태의원	2023.07.12.	• 부부감액 비율 축소(급여의 20% 감액 → 10% 감액)
2121812	김경협의원	2023.05.04.	• 노인 전체 지급(65세 이상 노인의 70% → 100%)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 단계적 적용
2120660	김남국의원	2023.03.15.	• 노인 전체 지급(65세 이상 노인의 70% → 100%) •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 단계적 적용
2117377	위성곤의원	2022.09.15.	• 급여 인상(2023년부터 40만원)
2115877	김태년의원	2022.06.10.	• 부부감액 폐지
2112468	고영인의원	2021.09.07.	• 노인 전체 지급(65세 이상 노인의 70% → 100%) •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포괄하되, 감액 적용
2110615	이용호의원	2021.06.04.	•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주: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0)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089)은 본 고에서 제외

11) 나머지 4건(의안번호 2101105, 2105679, 2107089, 2108159)은 국고보조율을 변경하는 내용

12)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 12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여 등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거나(의안번호 2100889, 2106978, 2107676, 2107828, 2109199, 2109715, 2109825, 2112062, 2123222),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4290, 2108219, 2121290)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라는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범위는 유지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나.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재정전망 시나리오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기준선과 2024년부터 대상자 확대, 급여 수준 인상, 감액제도 폐지 등의 정책 변화를 조합하여 적용하는 11개 시나리오로 구성**

-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하고, 연도별 기준연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¹³⁾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되, 가구유형별 대상자 수 및 감액수급액은 2018년~2022년의 추이를 고려하여 산출
 - ▶ 「기초연금법」 제9조¹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기준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시점과 그 방식을 알 수 없으므로,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¹⁵⁾ 및 동법 시행령 제6조¹⁶⁾의 내용을 적용하여,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 전체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에 대상자 비율 및 수급률을 적용하여 산출(수급률은 2018년~2022년의 수급률 추이를 고려하여 산출)
 - ▶ 가구유형은 1인·부부1인·부부2인 수급가구로 구분하고, 가구유형을 다시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에 따라 구분한 후, 가구유형 및 감액유형별 대상자 수 및 수급액 수준은 각각 2018년~2022년의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유형별 대상자 수 비율과 기준연금액 대비 감액수급액 비율 추이를 적용하여 산출
 - ▶ 시나리오별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비는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13) 본고는 2023년 3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활용하여 재정전망을 수행하였으므로, 과거 전망치를 활용하여 작성된 관련 법안 비용추계서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4) 「기초연금법」

제9조(기준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기초연금법」

제5조(기준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후략)

16)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준선)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재정소요를 추계
 -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2023년 기준 기준연금액을 323,180원으로 설정하여 추계
- (시나리오) 대상 범위 및 기준연금액에 따라 시나리오를 총 4군으로 구성하고, 감액제도 폐지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군별 세부 시나리오를 추가로 구성
 - (시나리오1군) 대상 범위와 기준연금액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2024년부터 일부 감액 제도를 폐지
 - (시나리오2군) 대상 범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2024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
 - (시나리오3군) 대상 범위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되 기준연금액은 현행 2023년 323,180원을 유지
 - (시나리오4군) 대상 범위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4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
 - (시나리오군별 세부 시나리오) ① 부부감액 폐지와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¹⁷⁾

표 8 기초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시나리오	대상 범위	기준연금액	감액 제도	관련 발의안
기준선 (시나리오1-1)	현행유지 (70%)	현행유지 (*23년 323,180원)	현행유지	-
시나리오1	1-2	현행유지	부부감액 폐지	의안번호 2115877
	1-3	현행유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의안번호 2110615
시나리오2	2-1	2024년 40만원	현행유지	의안번호 2117377
	2-2	2024년 40만원	부부감액 폐지	-
	2-3	2024년 40만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
시나리오3	3-1	현행유지	현행유지	-
	3-2	현행유지	부부감액 폐지	의안번호 2112468
	3-3	현행유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의안번호 2120660 의안번호 2121812
시나리오4	4-1	2024년 40만원	현행유지	-
	4-2	2024년 40만원	부부감액 폐지	-
	4-3	2024년 40만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

주: 정책 변화 이행 시점 등 재정전망 시나리오와 관련 발의안의 세부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7) 세 가지 감액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시나리오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각 시나리오군별로 ① 부부감액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n-2$)에서 현행 감액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n-1$)를 뺀 값과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n-3$)에서 현행 감액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추가재정소요($n-1$)를 뺀 값의 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시나리오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기초연금의 총 재정소요는 144.2조원, 연평균 28.8조원으로 전망되고, 동 기간의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는 부부감액 폐지 시(시나리오1-2) 14조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시(시나리오1-3) 4.5조원, 2024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시나리오2-1)할 경우 28.2조원, 2024년부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시나리오3-1)할 경우 61.8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1) 2024년부터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4조원, 연평균 2.8조원이고, 2024년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4.5조원, 연평균 0.9조원
- (시나리오2) 2024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28.2조원, 연평균 5.6조원
 - ▶ 2024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45조원, 연평균 9조원
 - ▶ 2024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33.6조원, 연평균 6.7조원
- (시나리오3)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61.8조원, 연평균 12.4조원
 - ▶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고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81.8조원, 연평균 16.4조원
 - ▶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고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68.2조원, 연평균 13.6조원
- (시나리오4) 2024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02.1조원, 연평균 20.4조원
 - ▶ 2024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고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26.1조원, 연평균 25.2조원
 - ▶ 2024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고 부부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09.8조원, 연평균 22조원

※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는 이하 [부표] 참고

표 9 기초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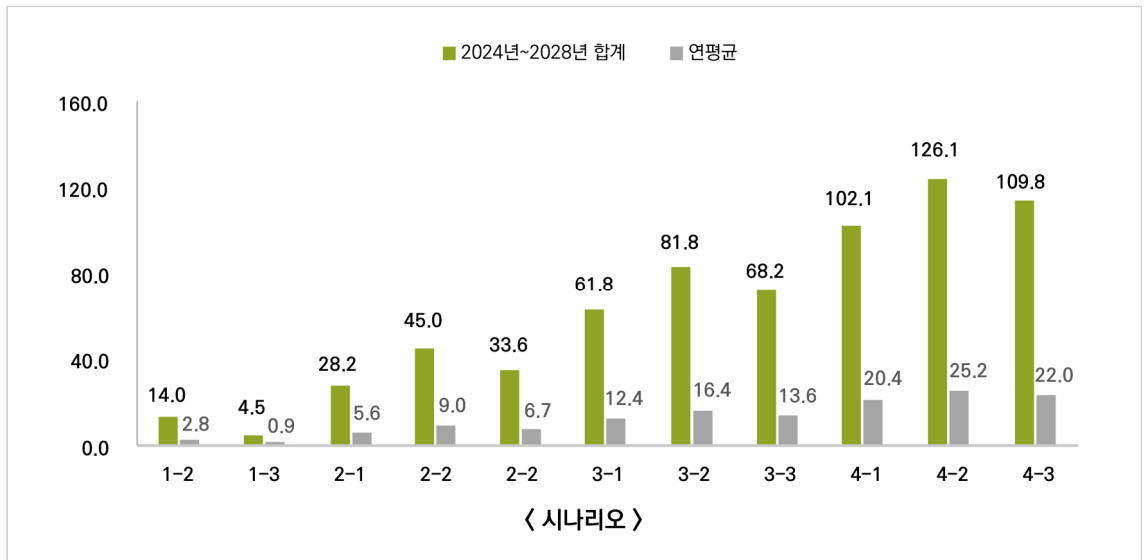
시나리오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기준선 총재정소요 (시나리오1-1)	24.7	26.8	29.0	30.8	32.9	144.2	28.8
시나리오1	1-2	2.4	2.6	2.8	3.0	14.0	2.8
	1-3	0.8	0.8	0.9	1.0	4.5	0.9
시나리오2 (2024년 40만원)	2-1	4.8	5.2	5.7	6.0	28.2	5.6
	2-2	7.7	8.3	9.1	9.6	45.0	9.0
	2-3	5.7	6.2	6.8	7.2	33.6	6.7
시나리오3 (전체 노인)	3-1	10.6	11.5	12.4	13.2	61.8	12.4
	3-2	14.0	15.2	16.5	17.5	81.8	16.4
	3-3	11.6	12.7	13.7	14.6	68.2	13.6
시나리오4 (2024년 40만원, 전체 노인)	4-1	17.5	19.0	20.5	21.8	102.1	20.4
	4-2	21.5	23.4	25.4	27.0	126.1	25.2
	4-3	18.8	20.4	22.1	23.5	109.8	22.0

주: 1. 시나리오 $n-1$ 은 현행 감액제도 유지, 시나리오 $n-2$ 는 부부감액 폐지, 시나리오 $n-3$ 은 국민연금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2.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2 기초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5년 합계 및 연평균)

(단위: 조원)



주: 1. 시나리오 $n-1$ 은 현행 감액제도 유지, 시나리오 $n-2$ 는 부부감액 폐지, 시나리오 $n-3$ 은 국민연금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2.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시사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 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증가 추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성과 재정의 과부담 방지를 위해 적정 수급범위를 검토할 필요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의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현행 제도의 대상 범위(노인인구의 70%)를 유지할 경우 경제적 여건 측면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방식을 검토할 필요
- 2024년부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연평균 12.4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 전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전한 국가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

국민연금 평균수급액 대비 기준연금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역할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를 설정할 필요

-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급여액과 유사한 수준의 기초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처음으로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엄밀하게 수행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를 설정할 필요¹⁸⁾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민연금의 성숙 및 개혁 방향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를 조정할 필요

-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 성숙에 따라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내에서의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
 - 향후 국민연금의 대상 포괄성과 급여 수준이 모두 확대되면 기초연금은 높지 않은 수준의 보편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반면 국민연금의 대상 포괄성에 사각지대가 유지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효과성 제고와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향후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기능이 강화될 경우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할 경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여 소득재분배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따라 기초연금의 제도 추진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

18) 그동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2018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다시 3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부표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총재정소요)

(단위: 조원)

시나리오	재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기준선 (시나리오1-1)	합 계	24.7	26.8	29.0	30.8	32.9	144.2	28.8
	국비	20.2	22.0	23.8	25.3	27.0	118.3	23.7
	지방비	4.4	4.8	5.2	5.5	5.9	25.9	5.2
시나리오1	1-2	합 계	27.1	29.4	31.8	33.8	158.2	31.6
		국비	22.2	24.1	26.1	27.8	129.8	26.0
		지방비	4.9	5.3	5.7	6.1	28.4	5.7
	1-3	합 계	25.4	27.6	29.9	31.8	148.7	29.7
		국비	20.9	22.7	24.5	26.1	122.0	24.4
		지방비	4.6	5.0	5.4	5.7	26.7	5.3
시나리오2 (2024년 40만원)	2-1	합 계	29.5	32.0	34.7	36.9	172.4	34.5
		국비	24.2	26.3	28.4	30.3	141.4	28.3
		지방비	5.3	5.8	6.2	6.6	31.0	6.2
	2-2	합 계	32.4	35.1	38.0	40.5	189.2	37.8
		국비	26.5	28.8	31.2	33.2	155.2	31.0
		지방비	5.8	6.3	6.8	7.3	34.0	6.8
	2-3	합 계	30.4	33.0	35.8	38.0	177.8	35.6
		국비	24.9	27.1	29.3	31.2	145.9	29.2
		지방비	5.5	5.9	6.4	6.8	31.9	6.4
시나리오3 (전체 노인)	3-1	합 계	35.3	38.3	41.4	44.1	205.9	41.2
		국비	28.9	31.4	34.0	36.1	169.0	33.8
		지방비	6.3	6.9	7.4	7.9	37.0	7.4
	3-2	합 계	38.6	42.0	45.5	48.4	226.0	45.2
		국비	31.7	34.4	37.3	39.7	185.4	37.1
		지방비	6.9	7.5	8.2	8.7	40.6	8.1
	3-3	합 계	36.3	39.4	42.7	45.4	212.4	42.5
		국비	29.8	32.4	35.0	37.3	174.2	34.8
		지방비	6.5	7.1	7.7	8.2	38.1	7.6
시나리오4 (2024년 40만원, 전체 노인)	4-1	합 계	42.2	45.8	49.5	52.7	246.3	49.3
		국비	34.6	37.5	40.6	43.2	202.0	40.4
		지방비	7.6	8.2	8.9	9.5	44.2	8.8
	4-2	합 계	46.2	50.2	54.4	57.8	270.2	54.0
		국비	37.9	41.2	44.6	47.4	221.7	44.3
		지방비	8.3	9.0	9.8	10.4	48.5	9.7
	4-3	합 계	43.4	47.2	51.1	54.4	254.0	50.8
		국비	35.6	38.7	41.9	44.6	208.4	41.7
		지방비	7.8	8.5	9.2	9.8	45.6	9.1

주: 1. 시나리오 $n-1$ 은 현행 감액제도 유지, 시나리오 $n-2$ 는 부부감액 폐지, 시나리오 $n-3$ 은 국민연금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

2. 국비 및 지방비는 소요재정 총액에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서에 기재된 국고보조율(82.04%)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동수당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이 윤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2)

1. 개요

아동수당 제도는 다자녀 빈곤가정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

-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은 아동의 기본권·생존권·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으로도 명명¹⁾
- 아동수당은 ① 소득보장, ② 아동복지, ③ 가족·인구정책으로서의 역할 수행
 - 소득보장: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빈곤가정 아동의 경제적 욕구를 해소
 - 아동복지: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한 후속세대의 건전한 육성 지원
 - 가족·인구정책: 안정된 가정·육아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저출산 극복
- 아동수당 제공방식은 대체로 보편주의형, 고용관련형(사회보험형), 공공부조형 등으로 구분되며, 국가별 재정 수준과 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표 1] 참조)
 - 보편주의형(Universal system): 일정 연령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하며, 국가가 전액 부담
 - 고용관련형(Employment-related system): 아동이 있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일부 보조
 - 공공부조형(Social assistance system): 사회보험이나 고용관련제도의 혜택에서 누락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며, 이를 위하여 자산조사 실시

1) 참고로, 미국 사회보장청(SSA)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85개국 중 133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수당을 시행하고 있음(유럽 및 아시아·태평양은 2018년 기준, 미주 및 아프리카는 2019년 기준)

표 1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유형별 재원조달 방식

구분	정부	고용주	정부, 고용주	정부, 고용주, 근로자
보편주의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공공부조), 룩셈부르크,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일랜드(공공부조), 체코, 폴란드(공공부조), 핀란드, 헝가리, 영국(세액공제), 호주(공공부조)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고용관련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공공부조)	그리스
사회보험	스페인(공공부조)	벨기에(공공부조)		

자료: 미국 사회보장국(The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의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8; Asia and the Pacific, 2018; Africa, 2019; The Americas, 201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인정액 하위 90%의 6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다가 현재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 우리나라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아동수당법」 제1조)을 목적으로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 시작
 - ▶ 도입 초기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의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 급여였으나, 이후 2차례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보편적 정책 급여로 확대됨([표 2] 참조)

표 2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¹⁾
지원기준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90%		7세 미만 아동(2019.9~)		8세 미만 아동	
제·개정	「아동수당법」 제정 (2018.3.)		「아동수당법」 개정 (2019.1.)		「아동수당법」 개정 (2021.12.)	
지원금액	월 10만원					
지원자 수 ²⁾	2,319,137	2,397,170	2,602,231	2,448,598	2,637,836	2,574,131
평균 지급률	87.0	96.1	98.0	97.5	97.6	97.3
국고보조율	73.5	73.45	72.89	75.1	73.6	75.6
예산 ³⁾	699,984	2,161,185	2,282,274	2,218,555	2,378,868	2,256,348
결산 ³⁾	681,581	2,161,185	2,301,748	2,218,555	2,454,847	-

주: 1) 2023년은 6월까지 수치

2) 아동수당 월별 지원자 수를 연간 지원자 수로 환산한 수치

3) 각 연도별 예산 및 결산은 국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아동수당 관련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상황과 지급액 인상을 통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아동수당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연령 기준과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과 급여 수준은 낮은 상황
 -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이나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16~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 등의 일부 국가는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수급연령을 25세까지 연장하여 지급함
 - (급여 수준) 정책 급여를 지급하거나, 자녀의 수와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를 차등 지급함
 - (추가 지급) 가족·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추가 급여액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참고 1] 참조)

[참고 1] 주요국의 아동수당 개요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도입연도	1932년	1954년	1972년
지급대상	•가족수당: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보충수당: 3세 이상 21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8세 미만 아동 •교육이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	•중학생 이하 자녀
지원기준	•가족수당: 자녀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보충수당: 그룹1(3자녀 기준 외별이 €19,562 미만 또는 맞벌이 €23,929 미만), 그룹2(3자녀 기준 외별이 €39,118 이하 또는 맞벌이 €47,853 이하)	•모든 자녀 지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금액	•가족수당: 2자녀 기준 €69,933 이하, €93,212 이하, €93,212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33.02~ 132.08 지급 •보충수당: 월 €172 또는 €258	•첫째, 둘째 자녀: 월 €219 •셋째 자녀: 월 €225 •넷째 자녀: 월 €250	•소득기준 미만: 0~2세 월 15,000엔, 3세~초등학생 월 10,000엔(셋째 자녀 이상 월 15,000엔), 중학생 월 10,000엔 •소득기준 이상: 월 5,000엔
비고	•가족수당은 1978년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금액으로 지급되었으나, 2017년 7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변경	•1996년부터 부모가 아동수당과 세금공제 중 선택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2023. 6.)에 따르면, 현행 소득 제한을 없애고 지원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3세 미만은 월 15,000엔, 3세~고등학생은 월 10,000엔 지급), 셋째 자녀 이후는 30,000엔 지급

주: 이 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수당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현금급여 사업을 기준으로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2021.8.)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제21대 국회(2020~2023년 8월) 동안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등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총 17건의 개정안 중 11건으로 64.7%에 달함, 대안 제외)
 -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상향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4건(23.5%)
 - ▶ 아동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은 2건(11.8%)
 - ▶ 아동수당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동시에 확대·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9.4%)을 차지

표 3 제21대 국회(2020~2023년 8월) 아동수당 관련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구분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비고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강선우의원	2020.7.9.	13세와 16세 아동에게 1년간 아동수당 지급	-
	정춘숙의원	2020.12.23.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고영인의원	2021.2.8.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허종식의원	2021.9.10.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아동수당 지원금액 인상	이규민의원	2021.8.2.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원,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50만원 지급	-
	전용기의원	2022.7.18.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및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유기홍의원	2021.4.9.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령을 고려하여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급	-
	신동근의원	2021.6.25.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1세 미만에게 월 50만원, 1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만원 지급	-
	김희재의원	2022.5.11.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둘째인 경우 매월 5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매월 10만원 추가 지급	-
	신동근의원	2023.4.4.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매월 20만원 지급,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80만원 추가로 지급	부모급여
	박성준의원	2023.5.16.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매월 30만원 지급, 둘째인 경우 매월 4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매월 70만원 추가 지급	-
기타	강민국의원	2020.8.26.	보호자가 아동학대 시 기지급한 아동수당 환수	-
	이해식의원	2021.2.17.	아동수당의 재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변경	-
	고영인의원	2021.3.15.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50만원 추가 지급	영아수당
	이종성의원	2021.4.30.	아동수당 지급 신청 시 보호자 교육 증명 서류 첨부 의무화	-
	허종식의원	2022.4.5.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이종성의원	2022.8.22.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	영아수당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아동수당 확대 방안별 재정소요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아동수당 확대 관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시나리오별로 제시

가.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

아동수당 확대 방안은 4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현행 유지(시나리오 1: 기준선), 지급연령 상향(시나리오 2),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확대(시나리오 3), 출생순위별 추가 지급(시나리오 4)으로 산출

- (시나리오 1: 기준선) 현행 지급기준을 유지하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시나리오 2: 지급연령 상향)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므로, 본 고에서는 18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시나리오 3: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확대)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시나리오 4: 출생순위별 추가 지급)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둘째 자녀는 월 2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월 30만원 지급

표 4 시나리오별 아동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월 지급액
시나리오 1	8세 미만 아동	10만원
시나리오 2	18세 미만 아동	10만원
시나리오 3	18세 미만 아동	20만원
시나리오 4	18세 미만 아동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수에 1인당 월 지급액과 자원개월 수 (12개월),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

- (지급 대상자 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와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연령별 아동 수를 적용
 - ▶ 다자녀가구의 둘째 및 셋째 이상 아동 수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1인당 지급액) 시나리오별 지급액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률) 2023년 기준 97.3%를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국고보조율은 2023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6%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향후 5년간(2024~2028년) 추가재정소요는 지급연령을 상향할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5조 78억원, 지급연령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확대할 경우(시나리오 3) 연평균 12조 4,906억원, 출생순위별로 추가 지급할 경우(시나리오 4) 연평균 8조 4,858억원으로 예상

- (시나리오 1: 기준선) 현행 지급기준을 유지하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총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2024~2028년) 12조 3,750억원, 연평균 2조 4,750억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 2: 지급연령 상향)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총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2024~2028년) 37조 4,139억원, 연평균 7조 4,828억원이며, 기준선과 비교할 때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25조 389억원, 연평균 5조 78억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 3: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확대)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총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2024~2028년) 74조 8,278억원, 연평균 14조 9,656억원이며, 기준선과 비교할 때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62조 4,528억원, 연평균 12조 4,906억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 4: 출생순위별 추가 지급)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둘째 자녀는 월 2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총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2024~2028년) 54조 8,039억원, 연평균 10조 9,608억원이며, 기준선과 비교할 때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42조 4,289억원, 연평균 8조 4,858억원으로 추계

표 5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시나리오별 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 1: 현행 유지(기준선)	27,180	25,402	24,238	23,559	23,371	123,750	24,750
- 국비	20,548	19,204	18,324	17,811	17,669	93,555	18,711
- 지방비	6,632	6,198	5,914	5,748	5,703	30,195	6,039
시나리오 2: 지급연령 상향	79,824	77,236	74,489	72,285	70,305	374,139	74,828
- 국비	60,347	58,390	56,314	54,647	53,151	282,849	56,570
- 지방비	19,477	18,846	18,175	17,638	17,154	91,290	18,258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 2-시나리오 1)	52,644	51,834	50,252	48,726	46,934	250,389	50,078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 국비	39,799	39,186	37,990	36,837	35,482	189,294	37,859
- 지방비	12,845	12,647	12,261	11,889	11,452	61,095	12,219
시나리오 3: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확대	159,648	154,472	148,978	144,570	140,610	748,278	149,656
- 국비	120,694	116,781	112,628	109,295	106,301	565,698	113,140
- 지방비	38,954	37,691	36,351	35,275	34,309	182,580	36,516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 3-시나리오 1)	132,467	129,070	124,741	121,011	117,239	624,528	124,906
- 국비	100,145	97,577	94,304	91,484	88,633	472,143	94,429
- 지방비	32,322	31,493	30,437	29,527	28,606	152,385	30,477
시나리오 4: 출생순위별 추가 지급	118,497	113,883	109,075	105,101	101,484	548,039	109,608
- 국비	89,583	86,095	82,461	79,456	76,722	414,317	82,863
- 지방비	28,913	27,787	26,614	25,645	24,762	133,722	26,744
추가재정소요(시나리오 4-시나리오 1)	91,316	88,480	84,838	81,542	78,113	424,289	84,858
- 국비	69,035	66,891	64,137	61,646	59,053	320,762	64,152
- 지방비	22,281	21,589	20,700	19,896	19,060	103,527	20,705

주: 1. 국비는 2023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5.6%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

2. 본 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2021.12.)의 연령별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아동 수가 달라지면 추계 결과가 바뀔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2018년에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아동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지원 수준은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의 지원대상 확대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 현재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기준(18세 미만인 사람)에 미치지 못함
 - ▶ 자녀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 증대 등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높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의무교육 기간이나 최소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16~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수급연령을 연장하고 있음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아동수당 지원 확대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상 범위 확대 외에도 다자녀 차등 지원 등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 제도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보편적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아동수당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그 대안의 일환으로 다자녀 차등 지원을 도입하는 등 한정된 재원 하에서 아동수당을 효과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본 고에서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를 4개로 구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2024~2028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확대(시나리오 3: 62조 4,528억원) > 출생순위별 추가 지급(시나리오 4: 42조 4,289억원) > 지급연령 상향(시나리오 2: 25조 389억원)의 순으로 나타남

[참고 2] 2023년 아동·보육부문 재정사업

구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²⁾	영유아보육료 ³⁾⁴⁾
0~11개월 (1세 미만)	출생 시 200만원	월 70만원	월 10만원	-	월 51.4만원
12~23개월 (1세 이상~2세 미만)	-	월 35만원			월 45.2만원
24~35개월 (2세 이상~3세 미만)		-		월 10만원	월 37.5만원
36~85개월 (3세 이상~취학 전)					-
86~95개월 (취학 후~8세 미만)					

주: 1)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현금급여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미만 영아에게는 부모급여액에서 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을 지급

2) 가정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3)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바우처의 형태로 보육료를 지급하며, 연령반(0세·1세·2세)별로 보육료 단가를 산정

4) 표의 영유아보육료 금액은 영유아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부모보육료)의 단가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급되는 보육료(기관보육료)는 제외되어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입법 동향 및 시사점

최 형 수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7)

1. 논의배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정(2019.11.26.) 이전에는 군용비행장(48개소)¹⁾ 및 군사격장(1,134개소)²⁾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제의 방법이었으나, 「군소음보상법」이 시행(2020.11.27.)된 이후 소송절차 없이 매년 일정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만, 실효적인 보상 대책 미흡 및 대상지역의 경계 기준에 대한 논란 등의 이유로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2개의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에 관련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함

2. 현황

가.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기준

「군소음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제1~3종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보상금의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5만원 및 제3종 구역 월 3만원을 구역 내 개인에게 지급함
-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시기는 과거 1년간의 피해에 대하여 연간 보상금액을 1년 단위로 소급하여 매년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획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할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보상금 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있음³⁾

1) 전술항공 15개소, 지원항공 11개소, 헬기전용 22개소 등 48개소

2) 대형화기 130개소, 소형화기 1,004개소 등 1,134개소

3) <국방부 단계별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2023. 8.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대 상	비 고
1단계(2020.6~2021.11)	90(비행장 41, 대형화기사격장 49)	완료
2단계(2021~2022)	11(대형화기사격장 7, 소형화기사격장 4)	완료
3단계(2022~2023)	42(비행장 3, 대형화기사격장 18, 소형화기사격장 21)	시행 중
4단계(2023~2024)	2(소형화기사격장 2)	시행 중
5단계(2024~2025)	샘플링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	예정

표 1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기준

구 분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비행장 (단위: 웨클 ¹⁾)	대도시 (광주/수원/대구·포항/부평/하남)	95이상	90이상 95미만	85이상 90미만
	그 외 지역			80이상 90미만
사격장 (단위: 데시벨 ²⁾)	대형화기 (구경 20mm 이상)	94이상	90이상 94미만	84이상 90미만
	소형화기 (구경 20mm 미만)	82이상	77이상 82미만	69이상 77미만
보상금 (매년 1회 지급, 1인당)		월 6만 원	월 4.5만 원	월 3만 원

주 1) 웨클(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채택한 소음영향도로서, 항공기 최고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 야간, 심야 등 시간대별로 운항횟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 정도를 반영한 소음평가 단위임

2) 데시벨(decibel)은 소음의 피해를 받는 쪽의 감각을 감안한 소음단위로서, 동 기준에서는 db(A)와 db(C)로 구분되며 A 가중치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음정도를 보정한 값이고, C 가중치는 실제 마이크에 측정되는 음압을 나타냄

자료: 국방부

한편, 「군소음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 감액비율 30%
-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 감액비율 50%
- 근무지역: 소음지역 내에서 직장이 100km 초과: 100%, 100km 이내 30%
- 거주일수: 미거주 일수 제외(병역, 해외체류 등)
- 사격일수: 1~7일 2/3 감액, 8~14일 1/3 감액, 15일 이상 감액없음

나. 보상인원 및 보상금액 현황

2022년 12월 기준 제1종 구역 지급대상 인원은 1만 6,804명, 제2종 구역 9만 344명, 제3종 구역 32만 1,344명으로 제3종 구역 지급대상 인원이 75%를 차지하며, 보상금액 1,177억 8,000만원이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음

표 2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인원

(2022. 12. 31. 누적기준, 단위: 명)

구 분		군용비행장(비율%)	군사격장(비율%)	계 (비율%)
인원수	제1종 구역	16,077(3.8%)	727(0.2%)	16,804(3.9%)
	제2종 구역	87,119(20.2%)	3,225(0.8%)	90,344(21.1%)
	제3종 구역	304,924(71.2%)	16,420(3.8%)	321,344(75%)
	계	408,120	20,372	428,492
보상금액(지역심의결과)		1,151.7억원	26.1억원	1,177.8억원

자료: 국방부

- 참고로, 「군소음보상법」 제정 전, 군 소음 소송 관련 2005~2018년까지 배상건수는 349건, 배상인원은 43만 7,412명, 배상금액은 7,706억원으로 연평균 배상금은 642억 1,600만원임

표 3 「군소음보상법」 제정 전 군 소음 소송⁴⁾ 관련 현황(2018년 9월 말 기준)

(단위: 건, 명, 억원)													
구분	계	2005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배상 건수	349	1	1	1	25	68	68	9	10	34	88	21	23
배상 인원	437,412	1	433	790	60,308	78,417	53,023	16,342	16,317	32,827	80,563	34,848	63,543
배상 금액	7,706	0.13	0.7	12.8	1,377	1,754	926	233	250	337	1,046	540	1,229

자료: 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11, 원유철의원, 김동철의원,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다. 민간공항·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원현황 비교

- 「군소음보상법」은 지역 단위의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개개인에 대하여 직접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은 건물철거·이전 및 토지매수 등 손실보상, 방음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 단위의 소음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두 법률 간의 제정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상이함

표 4 민간공항·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령 비교

구 분	군소음보상법(국방부)	공항소음방지법(국토부)
제정 및 시행일자	제정: 2019.11.26./시행: 2020.11.27.	제정: 2010.3.22./시행: 2010.9.23.
목적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 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
지원기준 단위: 웨클	85/80(대도시/기타도시) 이상 *소형/대형화기 사격장은 69/84dB	75 이상
지원내용	소음피해보상금	- 손실보상(건물철거·이전, 토지매수) - 소음대책사업(방음, 냉방, 전기료, TV수신료) - 주민지원사업(주민복지, 소득증대 등) - 세금감면가능(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재원	국비 100%	- 손실보상·소음대책사업 : 사업자 100% - 주민지원사업 : 사업자 75%, 지자체 25%
민간항공기 통 제	-	항공기의 소음저감운항절차 이행 의무화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부담금 부과

자료: 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22.8,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4) 군용비행장 외에 군 사격장 등을 포함한 군과 관련된 모든 소음 소송의 현황이나, 대부분이 군 공항 관련 소송임.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소요

가. 입법동향

- 제21대 국회에서는 12개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방위원회에 심사·계류 중에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소음보상 기준 개선, 주민지원 및 학교지원 사업 실시, 토지매수청구권 신설, 각종 부담금 완화 및 세제혜택 등으로써 제도개선과 주민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임

표 5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구 분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 내용	5년간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제도개선	강대식의원 (2020.7.1.)	보상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	430억원(86억원)
	강대식의원 (2021.12.23.)	주민 주거용 시설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	130억 3,000만원 (26억 600만원)
	정성호의원 (2020.7.15.)	•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 기준 마련	-
	송옥주의원 (2022.3.23.)	동이나 리 단위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	1조 7,887억 9,700만원 (3,577억 5,900만원)
	하영제의원 (2022.7.21.)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험 항공기도 이 법 군용항공기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
	성일종의원 (2021.1.6.)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규정 삭제	-
제도개선· 주민지원 사업	김병욱의원 (2022.4.12.)	•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 회전익항공기의 소음영향도 측정방안 마련 • 기본계획에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 포함 및 소음저감방안 추진 실적 주민 공개	1조 4,852억 2,600만원 (2,970억 4,500만원)
	김형동의원 (2020.9.11.)	• 마을(동이나 리 단위) 또는 부락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 • 방음시설·냉방시설의 설치 및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 제1~3종 구역에 대한 토지매수 청구 •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교육·문화사업 지원	14조 6,727억원 (2조 9,345억원)
	홍기원의원 (2020.10.8.)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교육·문화사업 지원	1,976억원 (395억원)
주민지원 사업	정찬민의원 (2020.11.24.)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냉방시설의 전기료 등을 지원	660억원 (132억원)
	김정호의원 (2021.1.12.)	• 기본계획에 소음대책방안, 주민지원방안 포함 •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 항공기 소유자들에게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규정 • 각종 부담금의 면제 및 세제 지원	1조 7,950억원 (3,590억원)
	조명희의원 (2022.6.29.)	•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	789억 7,500만원 (157억 9,500만원)

주: 정성호의원안 및 하영제의원안은 비용추계서 미첨부(3호), 성일종의원안 비용추계 미대상 법안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상 소음기준이 민간 공항의 소음에 대한 「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하여 높고, 소음대책 사업, 주민지원 사업 등 피해지역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갈등요인이 새롭게 나타나게 됨⁵⁾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입법발의가 계속됨

나. 재정소요

-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보상금 지급결정액이 1,177억 8,000만원에 이르고([표2] 참조) 향후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예상됨
- 발의된 개정안 중 주요 재정수반요인을 살펴보면, 토지매수사업이 5년간 12조 8,691억원,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을 ‘동·리’로 변경하였을 경우 1조 7,887억원, 방음시설 설치 및 학교 전기료 지원사업 등 소음대책 지원사업 1조 6,0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발의된 법안에 따라 현행 개인 보상체계의 지원방식 외에 지역 단위의 지원방식을 가미하게 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 발생이 예상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민간공항의 소음대책 중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사업의 경우 2010년 제정 당시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민주거시설(2015년), 업무시설(2017년), 노유자시설(2020년)이 각각 추가되었음

4. 결론 및 시사점

「군소음보상법」의 목적은 개별적 보상⁶⁾을, 「공항소음방지법」은 지역적 보상⁷⁾을 지원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행 군소음 보상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요구를 고려할 때, 「군소음보상법」의 개별적·개인적 보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음대책지역 별로 소음피해를 상세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를 비롯한 지역발전 보상 방안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 참고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의 제공 등 지역차원의 간접적인 보상 중심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5) 이달의 입법민원(「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이전 및 군소음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문」, 인제군의회, 2022.2, 국회민원지원센터) 등

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용비행장의 경우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⁸⁾으로 군용 비행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군사격장의 경우에도 군 구조개편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군사격장 통합·권역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⁹⁾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¹⁰⁾

- 군부대 이전 시 실내방음사격장 건립을 통해 사격소음 피해를 최소화¹¹⁾하거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에도 흡음판, 방음문 등을 설치¹²⁾하는 사례가 있음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③ (생 략)

9)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2023.4.25., 시행 2023.8.26.)이 시행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10) 참고로, 국방부는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2025년까지는 방음벽 설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통폐합, 이·착륙 절차 개선과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저소음 연습탄 개발·적용 등을 포함한 소음 저감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11) 울산시, 옥동 군부대 이전 행정절차 착수(울산제일일보, 2023.4.26.)

12) 남원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전라일보, 2023.3.28.)

조세 동향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어 수 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745)

2023년 7월 27일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3년 8월 18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약 977건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계류 중

이하에서는 2023년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1.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및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라고 밝힘

가. 주요 개정내용

(1)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대/중견/중소 3/7/10% → 5/10/15%)하고, 총 제작비 중 국내 제작비가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공제(10/10/15%) 적용

*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표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최대공제율
	현 행	개정안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공제율 3%) 신설(적용기한 '25.12.31.)
- * 「문화산업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의미함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23년 하반기~)
 - 현행 6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에서 7개 분야로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및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기술 등 추가

표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현행)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	당기분	25%	8~15%	최대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20~30% (코스닥상장 25~40%)	20~30%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표 3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현행)

구 분	기본공제(당기분)			증가분(추가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	10 → 12	5 → 7	1 → 3	3 → 10
신성장·원천기술	12 → 18	6 → 10	3 → 6	
국가전략기술	25	15	15	4 → 10

주: □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억원 이하 → 300억원 이하)
 -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60억원 이하 시 10%, 초과 시 20% 증여세율 적용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 → 20년)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중분류 → 대분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 복귀 시 세액감면 폭 및 기간 확대(5년 100% + 2년 50% → 7년 100% + 3년 50%)
 - * 수도권 안 부분복귀 시 현행과 동일하게 3년 100% + 2년 50%
- 현재 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세분류 상의 업종을 유지해야 하나, 세분류 상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더라도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범위 확대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민간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

- * 민간벤처모펀드란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임
- (출자) 법인투자자의 경우 모펀드 출자금액의 5%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운용)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회수) 개인 및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국내 건설사의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24~'33년까지 10년간 10%p씩 단계적 상향)
 - ▶ (적용요건) ①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으로서, ②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하였고, ③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④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손금한도)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 소득산입규칙은 '24년 시행하나,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1년 유예('24년 → '25년)
 - ▶ (소득산입규칙) 모기업이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에 대하여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기업 소재지국에 납부
 - ▶ (소득산입보완규칙) 모기업 소재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모기업이 저율과세되는 경우,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 도입국에 납부

(2) 민생경제 회복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 및 탄력세율 제도 전환

- 맥주·탁주 주세율(종량세)의 물가연동제 폐지
 - (현행) 세율 = 직전연도 세율 × (1 + 직전연도 가격변동지수)
 - * 가격변동지수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
-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본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을 법률에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현행)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표 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단위: 만원)

주택가격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5년 이상	고정 및 비거치	1,800	2,000
			고정 또는 비거치	1,500	1,800
			기타	500	800
		10년 이상	고정 또는 비거치	300	600

주: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240만원 → 300만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하여 '24.12.31.까지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상향(30% → 40%)

표 5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좌 동)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0%	(좌 동)
3천만원 초과	30%	4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23.4.1.~12.31. 동안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10%p 상향(전통시장 40% → 50%, 문화비 30% → 40%)

* 단,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도서 등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높은 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적용

표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신용카드	15%	(좌 동)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좌 동)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23.4.1.~12.31. 사용분)	30%	30%(40%)
전통시장('23.4.1.~12.31. 사용분)	40%	40%(50%)
대중교통('23.1.1.~12.31. 사용분)	40%(80%)	(좌 동)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23.10.1.부터 시행 발표(연구용역을 통해 '23년 하반기 중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질병 고시 예정)
 -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진료용역으로서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에 대해서만 면제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환급 특례로의 전환

-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4.12.31. 종료하고, 환급 특례 신설('25.1.1.~'27.12.31.)

(3)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기본공제 외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 추가 공제

표 7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기본공제(현행)	추가공제 신설(개정안)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단,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의 경우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후 증여)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소득요건 상향(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및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

표 8 자녀장려금 지급액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총급여액 등	지급액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홀벌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4,500분의 5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산·양육수당 지원 강화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만원 → 20만원)
- 기업의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에 대한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저축지원 조세특례 대상 금융상품 가입요건 완화

- 현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자격 완화

사적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기준 상향

-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사적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기준 상향(연 1,2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 (현행)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별/수령방식별로 3~5%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연 1,2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종신수령 시 4% 중 낮은 세율 적용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24.6. → '34.6.)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 기준 상향(3,000만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소액사건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세심판 시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 가능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신설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 신설
- 불이행 시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정비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익금산입하도록 대상 추가
 - ▶ (현행)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 (개정안)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에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추가

표 9 2023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책목표		주요 개정내용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 대/중견/중소 3/7/10%→15/20/30% = (기본공제) 5/10/15% + (추가공제) 10/10/15%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 : 바이오의약품 분야 - 신성장·원천기술 :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및 핵심광물 정·제련 기술 등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 확대 -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 복귀 시: 5년 100%+2년 50%→7년 100%+3년 50%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20년) - 특례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억원 이하 10%, 초과 20%→300억원 이하 10%, 초과 20%)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중분류 → 대분류) - 국내 건설사의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24~'33년까지 10년간 10%p씩 단계적 상향)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소득산입보완규칙 1년 유예)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연 500만원→700만원)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출자 : (법인) 모펀드 출자금액 5% + 증가분 3% 세액공제, (개인) 모펀드 출자금액 10% 소득공제 - 운용 :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회수 : 개인 및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기술혁신형 M&A 요건 완화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맥주·탁주 주세를 물가연동제 폐지 - 물가연동제 폐지 및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정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한도 :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600~2,000만원 - 주택가격 기준 : 5억원 이하→6억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240만원→300만원) - 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p 한시 상향 -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상향(3천만원 이상 30%→40%) -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100여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목표		주요 개정내용
미래 대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10% 추가 손금산입)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25년~)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3년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1억원 추가 공제)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소득요건 : 4,000만원 미만→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100만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월 10만원→20만원)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총급여액 요건(7천만원 이하) 폐지 6세 이하 부양가족 세액공제 한도 폐지
	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요건 완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23.12.31.→'25.12.31.)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만원→1,500만원)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특구 이전·창업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 세제지원 등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24.6.→'34.6.)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만원 미만→5,000만원 미만) -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조세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제출 의무 신설 -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과세형평 제고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정비(감자 및 출자감소 등 법인세 비과세 배당소득 제외)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여행사업 등 13개 업종)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세수효과 전망

2023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순액법 기준 △4,719억원, 누적법 기준 △3조 702억원(정부 추산)

- (주요 변동요인)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정비 등

표 10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의 연도별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순액법)	△4,719	△7,546	1,778	241	△269	1,077
- 소득세	△5,900	△7,415	879	636	-	-
- 법인세	1,690	119	1,572	△1	-	-
- 부가가치세	△437	77	△370	△144	-	-
- 기타	△72	△327	△303	△250	△269	1,077
구 분	합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합계(누적법)	△30,702	△7,546	△5,768	△5,527	△5,796	△6,065
- 소득세	△31,651	△7,415	△6,536	△5,900	△5,900	△5,900
- 법인세	6,880	119	1,691	1,690	1,690	1,690
- 부가가치세	△1,527	77	△293	△437	△437	△437
- 기타	△3,058	△327	△630	△880	△1,149	△1,418

주: 순액법은 각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세수증감만 집계하는 방식이며, 누적법은 기준연도(2023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주요내용

2023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5개의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행정안전부는 개정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이라고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책목표		주요 개정내용
경제활력 제고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기획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감면 신설 (중앙·지방협의회를 통해 추후 구체적 감면안 발표 예정) •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1개월 내, 중소기업은 2개월 내) •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기술 혁신 지원	•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취득세 세율 감감 신설(인증등급별 1~2%p) •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3년 연장 • 국방·해양과학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 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취득세/재산세 50%)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 3년 연장 및 감면을 조정

정책목표		주요 개정내용
민생안정 지원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출산일 전 1년/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시 500만원 한도로 면제)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취약계층 지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3년 연장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3년 연장 -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3년 연장 및 확대(보훈 보상 대상자 등 보철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신설) -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감면 법정화
	서민 경제 지원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3년 연장 -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 3년 연장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면 3년 연장 - 자경농·어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3년 연장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 보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30만원 → 40만원)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압류 후 1년 이내) -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시)
	국민 편의 증진	-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 기준 상향(1천만원 → 2천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약 △820억원(정부 추산)

- (증가 요인) 유사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면을 조정 등
- (감소 요인)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지원 신설,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2.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2023년 8월 18일 현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2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11건 등 기획재정위원회(779건)¹⁾ 및 행정안전위원회(198건)에 계류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977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 내용 포함

-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를 포함(정일영의원안)
 -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김상훈의원안)

1) 2023. 8. 18. 기준 「청년세법안」, 「탄소세법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탄소세 기본법안」 등 8건의 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2건의 일괄개정법률안을 포함할 경우 789건

- ▶ 국가전략기술에 로봇과 원자력 관련 기술 추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구자근의원안)
- ▶ 신성장·원천기술에 석유대체연료 개발 기술 추가(홍정민의원안)
- 출산·양육 지원 강화
 - ▶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율 차등 적용(강대식의원안)
 - ▶ 자녀세액공제 확대: ① 공제금액 상향(강훈식의원안: 기본공제 20/40/80만원, 출산·입양공제 100/150/200만원 / 고용진의원안: 기본공제 30/80/130만원, 출산·입양공제 50/100/150만원 / 박광은의원안: 기본공제 50/100/150만원, 출산·입양공제 50/70/100만원 / 박성준의원안: 기본공제 30/60/150만원, 출산·입양공제 50/80/120만원 / 서영교의원안: 기본공제 25/50/100만원, 출산·입양공제 60/100/140만원), ② 공제대상 확대(박성준의원안: 20~25세 이하 자녀 포함/ 천준호의원안: 8세 이하 자녀 포함)
 - ▶ 상시근로자 결혼·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한병도의원안)
 - ▶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및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수당 비과세(김영주의원안)
 - ▶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상향(신동근의원안: 400만원)
- 지역 균형 발전
 - ▶ 지방기업 법인세율 차등 적용(구자근·김성원·이원욱의원안) 및 지방근로자 소득세율 차등 적용(구자근의원안)
 - ▶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업상속 시 공제금액 800억원으로 상향(구자근의원안)
 -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및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김성원의원안)

투자·고용 활성화, 서민·중산층 지원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의 내용은 정부안과 유사하나, 구체적인 세율, 요건 및 일몰 연장 기간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투자·고용 활성화
 - ▶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기술 추가(정일영의원안)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공제율 상향(이상현의원안: 5/10/15% / 이용의원안: 6/14/20% / 김윤덕의원안: 9/17/20% / 배현진·이병훈의원안: 10/15/20% / 황보승희의원안: 10/17/23% / 한병도의원안: 15/15/20% / 윤두현의원안: 15/15/25% / 이용호의원안: 15/20/25% / 윤영찬의원안: 20/23/25% / 배준영의원안: 20/25/25% / 홍성국의원안: 25/25/25%), ② 대상 확대(이병훈·이상현·이용·황보승희의원안: 문화콘텐츠 전반 / 윤두현의원안: 교양 프로그램 추가), ③ 적용기한 연장 등(배준영의원안: 1년 / 홍성국의원안: 3년 / 김윤덕의원안: 4년 / 윤두현·윤영찬·한병도의원안: 적용기한 삭제)
 -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김병욱의원안: 5년 100%+3년 70%+2년 50%)

-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단계별 세제혜택 신설(홍정민의원안)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공제한도 상향(서영교의원안: 1,200만원), ② 적용기한 연장(김주영·한병도의원안: 2년 / 류성걸의원안: 3년 / 서영교의원안: 4년)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① 감면율 및 한도 상향(서영교의원안: 75%, 250만원), ②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김주영·한병도의원안: 2년 / 김상훈의원안: 3년 / 서영교의원안: 5년)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김용민의원안: 3년)
 -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류성걸의원안: 3년)
 -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류성걸의원안)
 -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공제율 상향(정운천의원안: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 9/109,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0/110), ② 적용기한 연장(고용진의원안: 2년 / 김주영의원안: 4년)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한병도의원안: 2년 / 서정숙의원안: 3년 / 윤창현의원안: 4년)
 - ▶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확대: ① 감면액 상향(구자근의원안: 60원/kg), ②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한병도의원안: 2년 / 구자근·서정숙의원안: 3년)
 - ▶ 중소·중견기업 기술취득 및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서영교의원안: 5년) 및 감면율 상향(서영교의원안: 중소기업 15%)
 -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김주영·여기구의원안: 2년 / 김수홍·서삼석·서영교·송언석·양경숙·윤미향의원안: 3년 / 윤재갑·윤준병·홍문표의원안: 5년) 및 환급 제도로 전환(양기대의원안)
 - ▶ 인지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중소창업기업의 용자관련 서류 한정 1년 / 김수홍의원안: 1년 / 김주영·여기구의원안: 2년 / 류성걸·정희용의원안: 3년 / 배준영·윤재갑·윤준병의원안: 5년) 및 청년농업인 용자 인지세 면제 한도 상향(김수홍·배준영·양경숙의원안: 3억원)
- 서민·중산층 지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기준 상향(박성준의원안: 9억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한도 상향(김영선의원안: 300만원)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전재수의원안: 전통시장 10%p/ 조해진의원안: 전통시장 및 문화비 10%p 한시 상향)
 -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김상훈의원안: 3년 / 윤창현의원안: 4년 / 서영교의원안: 5년)
 - ▶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조세특례 신설: ① 부가가치세 면제(배준영·전재수·한정애·홍익표의원안), ② 소득공제(김윤덕·배준영·서범수의원안)

-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구자근의원안: 2년 / 김성원의원안: 3년 / 김희곤의원안: 5년)
- 출산·양육, 청년 지원 및 노후 대비 강화
 - ▶ 자녀장려금 확대(한병도의원안: 소득기준 8,000만원, 지급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전재수의원안: 15만원 / 김용민·김승원·송언석·이수진의원안: 20만원 / 김희재의원안: 30만원 / 유경준의원안: 100만원 / 정성호의원안: 출산수당 한도 폐지, 보육수당 20만원 / 서영교의원안: 20만원,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40만원)
 -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김영주의원안)
 -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상향 및 공제대상 확대(김희재의원안)
 -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한도액 상향(조정식의원안: 월 50만원) 및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김주영·전혜숙의원안: 2년 / 윤창현의원안: 4년)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대상 확대(김승원의원안: 소득기준 삭제) 및 적용기한 연장(조정식의원안: 1년 / 김주영의원안: 2년)
 -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김태년·양경숙의원안: 1,400만원 / 김희곤·이인선의원안: 2,400만원) 및 누진세율 적용(김태년의원안: 1,400만원 초과분 10%, 2,400만원 초과분 15%)
- 지역 균형 발전
 -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한병도의원안: 10년)
 - ▶ 지방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구자근의원안)
 - ▶ 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김성원·정성호의원안)
 - ▶ 각종 지역특구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김경만·김주영·김희곤·류성걸·서영교·유경준·윤재갑·전혜숙·조명희·한병도의원안)

표 11 2023년 기획재정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2023년 8월 18일 기준)

정책목표	주요 개정내용
투자·고용 활성화	•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를 포함(정일영의원안)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미달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김상훈의원안) -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확대(구자근·정일영·홍정민의원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김윤덕·배준영·배현진·윤두현·윤영찬·이병훈·이상현·이용·이용호·한병도·홍성국·황보승희의원안)

정책목표	주요 개정내용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김병욱의원안)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단계별 세제혜택 신설(홍정민의원안)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김주영·류성걸·서영교·한병도의의원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김상훈·김주영·서영교·조정식·한병도의의원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김용민·조정식의의원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류성걸·조정식의의원안)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고용진·김주영·정운천의원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서정숙·윤창현·조정식·한병도의의원안)
	•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구자근·서정숙·조정식·한병도의의원안)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 등 (김수홍·김주영·서상석·서영교·송연석·양경숙·양기대·어기구·윤미향·윤재갑·윤준병·홍문표의원안)
	• 인지세 감면 특례 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김수홍·김주영·류성걸·배준영·어기구·양경숙·윤재갑·윤준병·정희용·조정식의의원안)
서민·중산층 지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기준 상향(박성준의원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한도 상향(김영선의의원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상향(전재수·조해진의원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김상훈·서영교·윤창현·조정식의의원안)
	•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조세특례 신설(김윤덕·배준영·서범수·전재수·한정애·홍익표의원안)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구자근·김성원·김희곤·조정식의의원안)
출산·양육 지원 강화	•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율 차등 적용(강대식의의원안)
	• 자녀세액공제 확대(강훈식·고용진·박광온·박성준·서영교·천준호의원안) - 공제금액 상향(강훈식·고용진·박광온·박성준·서영교의원안) - 공제대상 확대(박성준·천준호의원안)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김승원·김용민·김희재·서영교·송연석·유경준·이수진·전재수·정성호의원안)
	•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및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수당 비과세(김영주의의원안)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김영주의의원안)
	• 상시근로자 결혼·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한병도의의원안)
	•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상향 및 공제대상 확대(김희재의원안)
	•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상향(신동근의원안)
	• 장병내일준비자금 비과세 특례 한도액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김주영·윤창현·전혜숙·조정식의의원안)
청년 지원 및 노후 대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대상 확대(김승원·김주영·조정식의의원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김태년·김희곤·양경숙·이인선의의원안)
지역균형 발전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한병도의의원안)
	• 각종 지역특구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김경만·김주영·김희곤·류성걸·서영교·유경준·윤재갑·전혜숙·조명희·한병도의의원안)
	• 지방기업 법인세율 차등 적용(구자근·김성원·이원욱의원안) 및 지방근로자 소득세율 차등적용(구자근의원안)
	• 지방기업 및 기획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구자근의원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김성원·정성호의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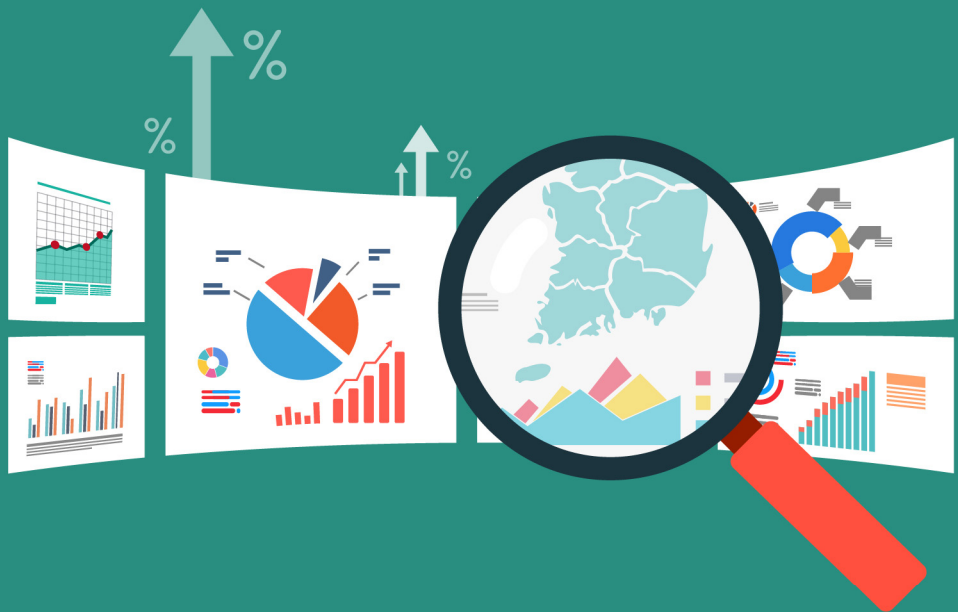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2023.8.18. 기준)

3. 결 어

- 2023년 정기국회에서는 대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
 - * 다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에 대하여 정책적 효과와 세수귀착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
 - ▶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상향,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경우, 확대되는 지급액, 한도, 공제율 등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될 것으로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세법개정안의 경제적·정책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기국회 중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

조세 이슈 및 분석

간이과세 제도 변화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특징 분석
출산·혼인·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영상콘텐츠 조세지원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간이과세 제도 변화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특징 분석

김 효 경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47)

1. 논의 배경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신고·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절감하는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

- 간이과세 세액을 결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 간이과세를 선택할 경우의 세액이 일반 과세 세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¹⁾
 - 일반사업자 세액 = 매출과표 × 세율 10% - 매입세액공제 - 공제·경감세액
 - 간이사업자 세액 = 매출과표(부가가치세 포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 10% - 공제세액
- 세법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간이과세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대상의 범위가 확대
 - 간이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도 확대

소규모 사업자 지원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과세 기반을 축소하고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에는 납세자의 행동 변화 측면에서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축소 신고 행동을 검토한 연구들이 등장

- 대부분의 연구들은 간이과세(납부면제)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가 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매출 활동을 줄이거나 매출액을 과소신고 할 유인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준금액 근처에 사업자들의 분포가 집중되는 “군집(bunching)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내용
- 우리나라의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처 사업자 분포 및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정성을 살펴본 연구도 존재

본 분석은 최근 간이과세 대상에 추가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금액 근처 사업자의 특징 및 사업자의 분포가 집중되는 현상 등을 분석

- 이와 함께 과세유형 간 부가가치율 비교를 통해 제도 개정 후에도 세부담 절감 측면에서 간이과세 선택의 유인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군집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

1)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음

2. 연혁 및 현황

가. 최근 간이과세 제도 변화 및 현황

간이과세는 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²⁾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되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6년 이후 4,800만원으로 유지되다가 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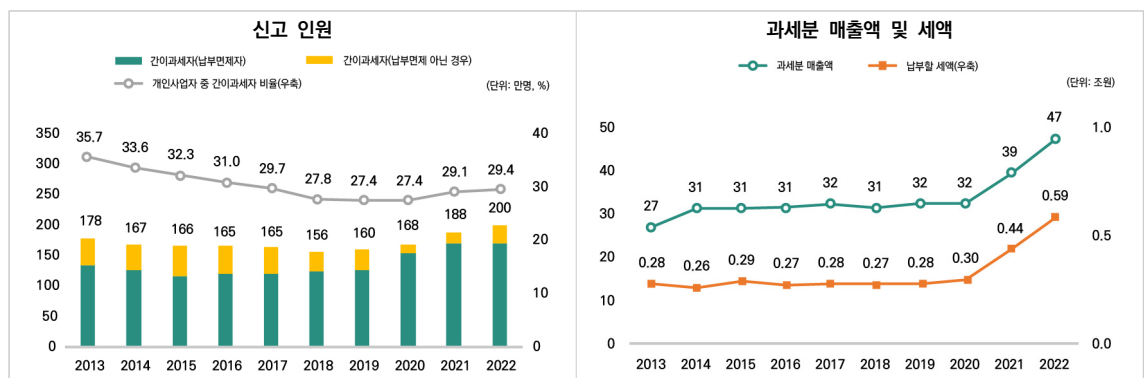
- 간이사업자 중 당해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2,400만원으로 유지되다가 2019년 3,000만원, 2021년 4,800만원으로 인상

표 1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추이: 1996년 이후

구분	1996년 이후	2000년 이후	2019년 이후	2021년 이후
간이과세(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좌동	좌동	8,000만원
납부면제(당해연도 매출액)	24만원(세액기준)	2,400만원	3,000만원	4,800만원

- 간이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간이사업자 수 및 이들의 과세대상 매출액과 세액 증가
 - ▶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 인원의 비중은 감소하다가 2020년 27.4%에서 2022년 29.4%로 증가
 - ▶ 간이사업자가 신고한 과세대상 매출액은 2020년 32조원에서 2022년 4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납부할 세액 규모도 2020년 0.3조원에서 2022년 0.59조원으로 증가

그림 1 연도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기준

2021년도 개정은 간이과세 대상 확대 외에,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5~30%에서 15~40%로 인상하고 업종 구분을 세분화하는 등 일반사업자와의 세액 차이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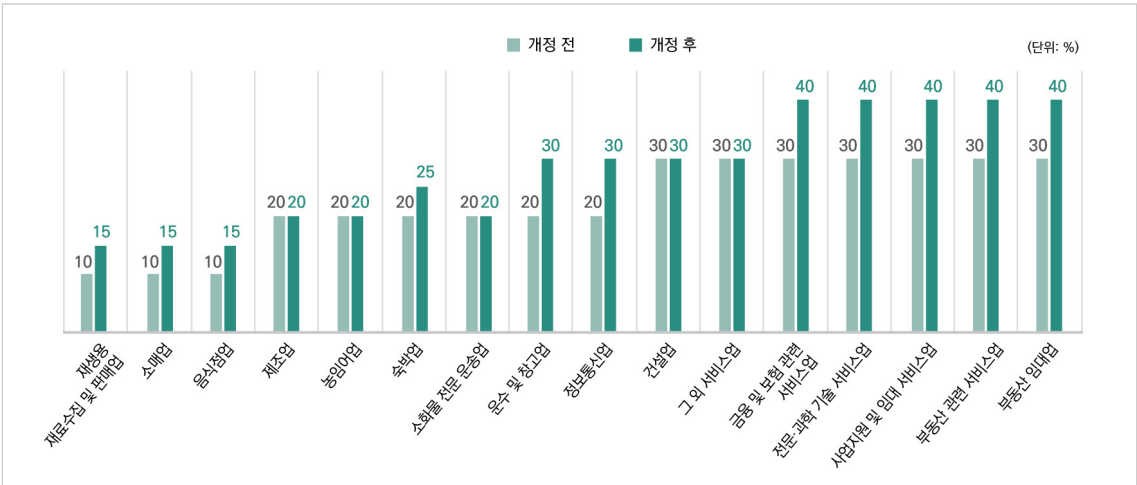
-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매출액 4,800~8,000만원 구간의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유지

표 2 2021년 간이과세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구분	2020년	2021년 이후
대상	- 간이과세 기준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4,800만원 - 납부면제 기준금액 : 3,000만원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제외) -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 4,800만원
세액계산 방식	과세표준×업종별 부가가치율(5~30%)×세율 10%-공제·감면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상향 조정(15~40%) - 공제·감면제도(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특례 등) 축소
신고·납부 방식	- 신고·납부 기간: 연간 1회(※ 일반 2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영수증 발급)	- 신고·납부 기간 : 동일 - 세금계산서 원칙적 발급(단,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소비자 상대업종은 영수증 발급 허용)

주: 1) 과세유흥의 변경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의 변화는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

그림 2 2021년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변화



나. 입법 동향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관련 2건의 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

표 3 간이과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2022년 이후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 내용
2116403	김수흥의원	2022.7.12.	기준금액 인상: 간이과세 8,000만원→1억 2천만원 납부면제 4,800만원→7,200만원
2117463	전재수의원	2022.9.22.	기준금액 인상: 간이과세 8,000만원→1억원 납부면제 4,800만원→6,000만원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3. 분석 및 결과

가. 선행연구

주요 연구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기준금액 근처에 사업자가 밀집되는 군집 현상에 대해, 신고행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과세특례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조세 차익과 납세순응비용 등을 비교하여 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의 선택인 것으로 해석

- 주요국에 대한 연구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로 납부(등록)면제를 주로 활용하는 한편 제도의 대상도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로 다양한 각국의 특징을 반영해 분석
 - ▶ Jarkko Harju et al.(2016)³⁾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지원 및 규제 정책에 대한 반응을 추정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핀란드의 부가가치세 자료로 납부면제 기준금액 이하의 군집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
 - ▶ Kou et al.(2021)⁴⁾은 중국의 2015~2012년 기업 세무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군집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높거나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간이과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 ▶ Kawakubo et al.(2022)⁵⁾은 지난 30년 간 일본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금액 조정 및 세율 조정 시점에 나타난 군집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기업이 납세순응비용 및 과세 상 이익을 비교해 반응하였기 때문으로 설명

3) Harju, J., Matikka, T., Rauhanen, T., "The Effects of Size-Based Regulation on Small Firms: Evidence from VAT Threshold", CESifo Working Paper, No. 6115, 2016.

4) E Kou, Y Sun, L Yue, "The response of small firms to VAT thresholds: evidence from China", Applied Economics Letters., 2021.

5) Takafumi K., Takafumi S., "Tax Avoidance or Compliance Costs Avoidance? Evidence from VAT Reforms in Japan", PRI Discussion Paper Series, No.22A-02, 2022.

-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미시자료를 활용해 사업자의 행태적 반응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처의 사업자 분포를 살펴보거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금액 근처의 사업자 분포를 살펴보는 연구가 등장
 - ▶ 정다운(2021)⁶⁾은 2018~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의 분포가 기준금액(4,800만원) 주변에 몰리는 군집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 분석을 통해 사업자가 기준금액 주변에서 간이과세 적용에 따른 유인기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 권성오(2022)⁷⁾는 종합소득세 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금액 좌측을 중심으로 군집 현상을 관찰하고 행태반응의 크기를 추정하였으며 사업자들의 수입금액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제시

나. 분석 방법

이하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후 기준금액 근처에서의 군집 현상을 살펴보는 한편, 부가가치율 검토를 통해 새로운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검토⁸⁾

-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매출액이 내년도 간이과세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전제⁹⁾

새로운 간이과세 대상자의 분포 및 부가가치율을 산출함에 있어 국세통계연보의 구간별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 본 분석에서는 2019~2021년 부가가치세 귀속 신고에 대한 국세통계 미시 표본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

- 간이과세 대상 확대 이전(2019~2020년) 자료와 확대 이후의 가장 최신(2021년) 자료를 활용
- 업종을 기준으로 추출된 10% 표본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¹⁰⁾ 기준금액 외에도 업종·규모·지역 등의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의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배제대상을 구분하여 제외¹¹⁾
- 이하에서 ‘기준금액(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가리킴

6) 정다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7) 권성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8)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과세 신고된 사업자의 매출액(과세분·영세분 매출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으로 별도 산출하였으며, 과세분 매출액의 경우 최종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

9) 납부면제의 경우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10)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년 1기 및 2기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11)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전문직 사업자 및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를 표본에서 제외하되, 배제대상 중에서도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허용된 업종의 경우는 포함함. 단, 신규 및 폐업사업자, 배제대상 중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된 사업을 보유한 사업자 등은 자료의 한계로 제외하지 못함

표본에서 분석한 간이과세 대상자는 2021년의 경우 4,800만원 미만 16.8만명, 4,800~8,000만원 구간 2.9만명이며 각 구간의 간이사업자 비중은 4,800만원 미만은 73.1%인 반면 4,800~8,000만원 구간은 30.1% 수준

- 2021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4,800~8,000만원 구간의 간이사업자 비중은 전년도 17.4%에서 30.1%로 상승

표 4 분석 대상 간이과세 대상자: 2019~2021년

(단위: 만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4,800만원	4,800~8,000만원	~4,800만원	4,800~8,000만원	~4,800만원 미만	4,800~8,000만원
전체		14.9	3.0	16.3	3.2	16.8	2.9
일반사업자	인원 (비중)	4.5 (30.2)	2.5 (83.3)	5.2 (32.2)	2.6 (82.6)	4.5 (26.9)	2.1 (69.9)
간이사업자	인원 (비중)	10.4 (69.8)	0.5 (16.7)	11.0 (67.8)	0.6 (17.4)	12.2 (73.1)	0.9 (30.1)

주: 1) 간이과세 대상자는 국세통계 표본 자료 중에서 연도별로 간이과세 배제대상 등을 제외
자료: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분석 결과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의 사업자 분포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인상된 2021년의 경우 8,000만원 구간의 좌측에 간이사업자가 몰리는 군집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새로운 기준금액 근처에서도 사업자가 다음 해에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 매출을 조정하려는 과세 상 유인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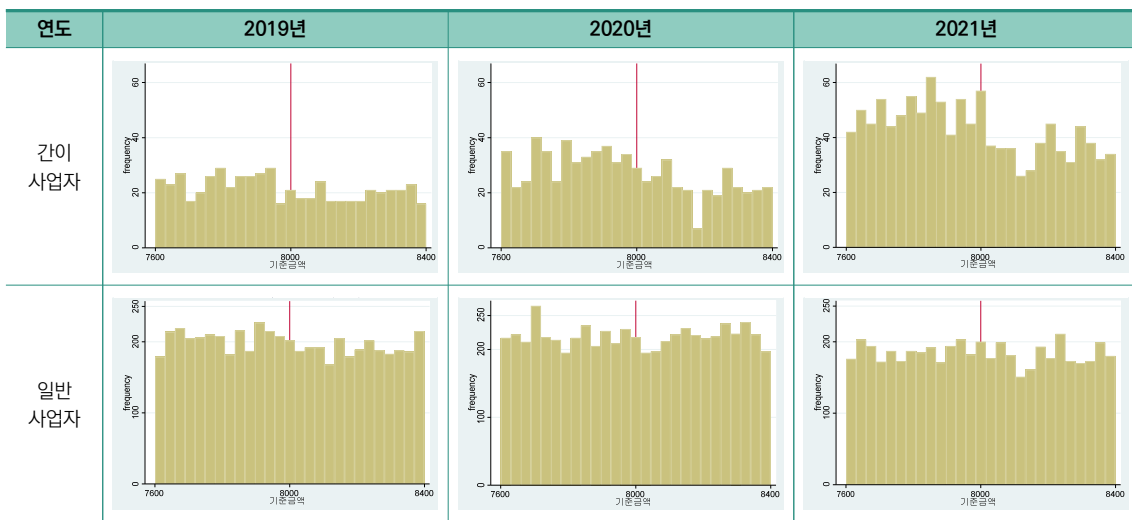
- 이러한 현상은 당해 간이사업자¹²⁾ 그룹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이전 연도(2019~2020년)에 비해 8,000만원 근처에 위치한 간이사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기준금액 우측(상위 구간)보다 좌측(하위 구간)에 상대적으로 사업자가 집중되는 분포 상의 특성이 나타남
 - ▶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었던 이전 연도(2019~2020년)에는 8,000만원 근처에서 사업자의 분포가 몰리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
- 기준금액 근처에 사업자의 분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반사업자 그룹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간이사업자 그룹에서 뚜렷하게 관찰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¹³⁾

12) 귀속연도 기준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 유형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

13) 2021년 4,800~8,000만원 구간의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가지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출 증빙의 감소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간이과세 제도는 매출·매입구조 등의 사유로 간이과세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 그룹에 상대적으로 내년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가진 사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 ▶ 그 외 기존에 간이과세를 활용해 본 세무경험 등도 행동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그림 3 매출액 8,000만원 근처의 사업자 분포: 과세유형별, 2019~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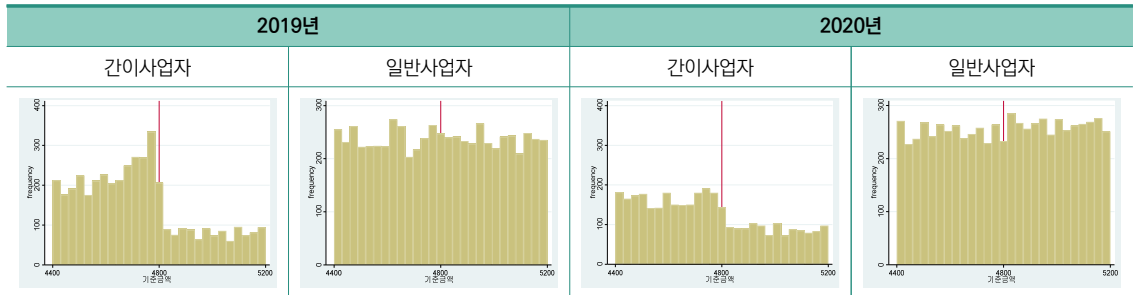
주: 금액 단위는 만원이며, 30만원 구간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찬가지로 과거 기준금액이 인상되기 이전 시점(2019~2020년)의 자료에서도 해당 연도의 간이사업자 그룹에서 기준금액 좌측에 사업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관찰

- 2019년의 경우 기준금액 4,800만원의 좌측에 간이사업자 분포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2020년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으나 전년에 비해 간이사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군집 강도도 약화
 - ▶ 2020년의 경우 하반기에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4,800→8,000만원)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정보가 사업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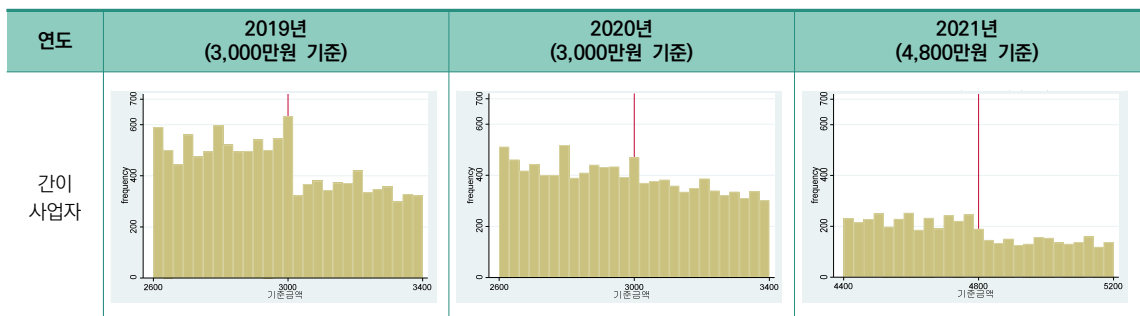
그림 4 매출액 4,800만원 근처의 사업자 분포: 과세유형별, 2019~2020년



주: 금액 단위는 만원이며, 30만원 구간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간이사업자 중에서 당해연도 매출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납부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납부면제의 경우에도 연도별로 공통적으로 기준금액 좌측에 사업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5 연도별 납부면제 기준금액 근처의 사업자 분포: 과세유형별, 2019~2021년



주: 금액 단위는 만원이며, 30만원 구간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분석

간이과세 세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실제 부가가치율과 비교함으로써, 2021년에 추가된 간이과세 대상자가 세 부담 절감 측면에서 간이과세 제도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 검토¹⁴⁾

- 실제 부가가치율은 매출과표¹⁵⁾ 대비 매출과표와 매입과표 간 차이로 산출

14)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과표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본 절에서는 2021년 새로 간이과세 대상에 포함된 4,800~8,000만원 구간에서 잠재적으로 간이과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사업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15) 매출과표는 국세통계연보 기준에 따라 과세분 및 영세분 매출의 합계로 산출

2021년 4,800~8,000만원 구간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반사업자의 실제 부가가치율(중간값)이 간이과세 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 절감 측면에서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

- 2021년 해당 구간 주요 업종의 실제 부가가치율 중간값은 소매업 18.1%, 음식점업 18.9%, 운수 및 창고업 58.8% 등으로, 간이과세 제도 상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높은 수준
 - ▶ 주요 업종의 4,800~8,000만원 구간 내 간이사업자 비중이 전년 대비 확대
- 한편 전년도와 비교 시 2021년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율 중간값 수준이 낮아졌는데, 이는 새로 간이과세 대상에 추가된 4,800~8,000만원 구간의 사업자 중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이동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2021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실제 부가가치율과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의 차이가 축소되었는데, 특히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인상(+5~10%p)된 소매업,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경우 축소 폭이 크게 나타남

- 2021년 일반사업자의 실제 부가가치율 중간값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소매업은 12%, 음식점업은 19%, 운수 및 창고업은 10% 감소
- 전체 사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해당 구간에서 사업자의 실제 부가가치율이 해당 업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을 상회하는 사업자의 비중은 2020년 75.9%에서 2021년 64.8%로 축소
- 간이사업자의 낮은 세부담이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의 인상은 세부담 절감에 대한 유인을 축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림 6

실제 부가가치율vs.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비교
(4,800~8,000만원): 일반사업자, 2020년 및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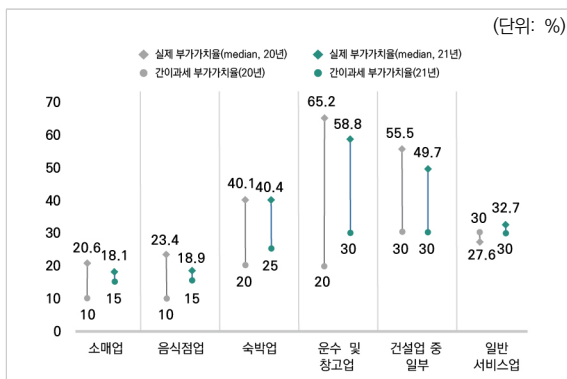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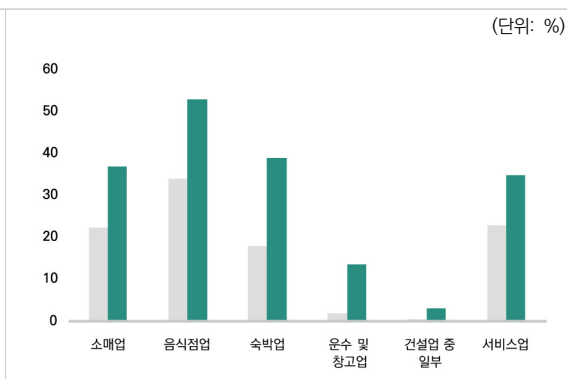


그림 7

업종별 간이사업자 인원 비중(4,800~8,000만원): 2020년 및 2021년



주: 실제 부가가치율은 '100×(매출과표-매입과표)/매출과표'로 산출
자료: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부가가치율 수준 비교: 일반사업자, 2020년 및 2021년

(단위: 만명, %)

부가가치율 비교	2020년(4,800~8,000만원 구간)		2021년(4,800~8,000만원 구간)	
	사업자 수	(비중)	사업자 수	(비중)
실제 > 간이과세 업종별	2.0	(75.9)	1.3	(64.8)
실제 ≤ 간이과세 업종별	0.6	(24.1)	0.7	(35.2)

자료: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결론 및 시사점

국세통계 미시자료 표본을 활용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기준금액 인상 전과 유사하게 인상 후에도 기준금액 좌측에 사업자가 몰리는 군집 현상 발생

-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처의 사업자 신고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간이과세 적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현행 간이사업자 등)를 중심으로 사업자 분포 상 특징이 발견
 - ▶ 이러한 사업자 분포 특징은 연도별 간이과세 기준금액 근처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납부면제 기준금액 근처에서도 확인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제도의 경제점 근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 사업자의 부가가치율 측면에서는 2021년 간이과세 대상에 추가된 4,800~8,000만원 구간에서 실제 부가가치율이 간이과세 선택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상회하는 사업자가 상당 수 존재
 - ▶ 이는 세 부담 절감 측면에서 간이과세에 대한 유인을 가진 사업자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
 - ▶ 다만 2021년 기준금액 상향 시 함께 적용된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실제 값과 간이과세 제도의 부가가치율 간 차이는 축소

본 분석은 국세통계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간이과세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이들의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간이과세 선택의 유인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

- 기준금액 근처 사업자들의 분포를 통해 과세 신고자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
- 세액 결정 구조에 따라 과세 유형 간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간이과세 선택을 위한 행동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간이과세 세액을 결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출산·혼인·양육 관련 조세지원 현황 및 입법 동향

박 성 은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668)

1.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세계유일 1명 이하 국가가 된 후에도¹⁾ 2022년 0.78명까지 하락하여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자연감소세가 진행중²⁾

-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³⁾ 출산을 제고 방안으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조세지출정책을 재정지출정책과 함께 시행중에 있음

금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 혼인 증여공제 신설 등 혼인·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정책이 논의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제도현황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2. 혼인·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현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인적공제, 자녀 교육·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관련 소비세 면제 등의 제도가 혼인·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로 시행중

- 현재 혼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공제 등의 세제지원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혼인 이후 배우자 관련 인적공제 적용 가능
 - ▶ 배우자 공제(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배우자 대상 150만원)⁴⁾, 부녀자 공제(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 대상 50만원)⁵⁾ 등 배우자 관련 소득공제 적용
 - ▶ 부부 모두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개별과세가 적용되어⁶⁾ 부양가족 관련 인적 및 물적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가능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관련 수당 비과세, 자녀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자녀 교육·의

1) World Bank data(Fertility rate, total(births per woman))

2) 각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2006년 이후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제1차 2006~2010년, 제2차 2011~2015년, 제3차 2016~2020년, 제4차 2021~2025년)

4)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5)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

6) 다만, 주택 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세 중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양도소득세 중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중과세(동법 제104조제7항), 종합부동산세 공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 등의 여부 판단시 부부나 세대단위로 합산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관련 소비세 면제 등의 제도가 현재 시행중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출산 및 자녀(6세 이하) 보육수당(한도 월 10만원)⁷⁾, 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단축·출산휴가 관련 고용보험 급여⁸⁾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 (자녀 기본공제)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⁹⁾
-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로서,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및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의 합계액을 세액공제¹⁰⁾.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세액공제¹¹⁾
- ▶ (자녀 교육·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연령·소득 무관)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의 최대 15%~20%, 난임치료비의 최대 30%, 자녀가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 납입금의 12% 등 세액공제
 - 자녀 교육비(고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300만원 및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원 한도), 장애자녀특수교육비(한도 없음) 등의 15% 세액공제¹²⁾
 - 자녀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7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장애자녀 의료비(한도 없음)에 대해 최대 15% 세액공제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한도 없음)에 대해 최대 20% 세액공제¹³⁾
 - 난임 시술·의약품 비용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¹⁴⁾
 - 자녀(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및 20세 이하)가 피보험자인 일반보장성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세액공제(한도 100만원)¹⁵⁾
-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연 4,0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18세 미만) 1인당 50만원 ~ 8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 제외)¹⁶⁾
- ▶ (출산·양육 관련 소비세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분유¹⁷⁾, 산후조리원 이용비(분만 직후의 임신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¹⁸⁾, 다자녀 가정 구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¹⁹⁾

7)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8)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9)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7항

10)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11)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1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1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14)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15)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4(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1호

18)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6호

1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표 1 현행 혼인·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자녀 연령별 제도적용 여부

(단위: %)

구분	결혼	임신	출산·양육					
			~ 6세	7세	8세 ~	~ 17세	~ 20세	~ 대학생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					
자녀 기본공제			○	○	○	○	○	
자녀 세액공제 ¹⁾					○	○	○	
의료비 세액공제		○	○	○	○	○	○	○
교육비 세액공제			○	○	○	○	○	○
보험료 세액공제			○	○	○	○	○	
자녀장려금			○	○	○	○		

주: 1) 7세까지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법」 제4조)

자료: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 경력단절자 및 육아휴직복직자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경력단절자 및 육아휴직복직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도입
- (경력단절자 지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²⁰⁾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경우 관련 인건비 15%(중견) ~ 30%(중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2년간 공제²¹⁾
: 경력단절여성 고용자 증가수 1인당 400만원, 800만원(중견기업), 1,450만원(중소기업) 또는 1,550만원(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²²⁾
- (육아휴직복직자 지원) 육아휴직복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관련 인건비의 5%(중견) ~ 10%(중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년간 공제²³⁾
: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1차례만 적용하며 해당기업 근로자수 감소의 경우 미적용

3. 혼인·출산·양육 세제지원 제도의 입법동향

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혼인·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혼인 관련 세제지원 정책이 2008년 폐지 이후 다시 등장

2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2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

2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4항

- 2023년 세법개정안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확대,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등 예정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행은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시 과세가액 공제한도가 자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10년간 1인당 총 5천만원인 것에서, 개정안에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공제한도를 총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 과거 혼인관련 세제지원으로는 2004년~2008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혼인시 100만원 소득공제 적용
 - ▶ (출산·보육수당) 현재 근로자 및 그 배우자가 출산 또는 자녀(6세 이하) 보육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는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에서, 개정안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
 - ▶ (자녀장려금) 현재 총소득 4천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하는 것에서, 개정안은 총소득 7천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 (출산 의료비 세액공제) 현행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을 세액공제(한도 없음)하는 것에서, 개정안에서는 총급여액 요건 폐지
 - ▶ (보육 의료비 세액공제) 현재 자녀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70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것에서, 개정안은 6세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최대 15% 세액공제

[참고] 혼인·출산·양육 관련 세법개정 연혁

- 자녀 인적공제 금액은 1995년 자녀 1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 및 2009년 현행 150만원으로 상향
-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은 2014년 도입시행 당시 20세 이하였으나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제도의 연령상향에 연동되어 조정
 - * 아동수당제도 대상연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6세 미만 아동에서, 2019년 1월 모든 6세 미만, 2019년 9월 모든 7세 미만, 2022년 4월 모든 8세 미만 아동 등으로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녀가 3명 이상 2명을 초과하는 경우, 2014년 동 제도 시행 당시는 1명당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였다가 2015년 현행수준인 30만원으로 상향. 출생 및 입양 자녀의 경우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제도시행 당시 기본공제 대상자녀와 같은 수준이었다가 2015년 자녀 1명당 30만원으로 상향 및 2017년 현행수준인 둘째 50만원 및 셋째이상 70만원으로 인상
- 출산·양육 관련 소비세 면제는 2009년부터 영유아용 기저귀·분유(부가가치세), 2023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매 승용차(개별소비세) 등 실시

시행시기	내용
2023년	• 아동수당제도 확대(7세미만→ 8세미만) 관련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8세이상)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일몰폐지) • 다자녀 가구 구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22년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20%→ 30%) - 2017년 시행 세법개정에서 15%→ 20% 인상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 20%)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 제외
2019~2020년	• 아동수당제도 확대(6세미만→ 7세미만) 관련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7세 이상 등)
2018년	• 아동수당제도(6세미만 대상) 도입시행 관련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6세 이상)
2017년	• 근로·자녀장려금 적용대상 주택요건을 현행 무주택 또는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이하 보유 가구에서 2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완화하고 동 최저 산정금액을 3만원으로 조정
2016년	•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목적에서 소득세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녀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만 체납액 총당(즉, 근로·자녀장려금의 70% 이상 지급)
2014년	•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자녀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 3% 초과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에서 동일한도 동일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 - 자녀 교육비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 300만원 및 대학생 9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에서 동일한도 동일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

자료: 정부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21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21대 국회에서는 혼인·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혼인비용 공제, 난임치료비 공제, 출산·양육급여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조정, 양육 관련 재화 소비세 면제 등과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이 계류중

- 현재까지(2023년 8월 17일 기준) 21대 국회에서 혼인·출산·양육 세제지원 관련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41건이며, 지원단계별로는 출산·양육 31건, 임신 6건, 결혼 4건이며, 지원유형별(중복포함)로는 소득세 세액공제 17건, 소득세 비과세 14건, 소비세 면제 8건, 소득공제 1건 등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비과세·세액공제·면제 비중이 73%(29건)
 - 임신 관련 1건이 가결되고²⁴⁾ 3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중
-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원발의 법률안 32건은 혼인비용 공제 관련 4건, 난임치료비 공제 관련 3건, 출산·양육급여 비과세 관련 12건(중복포함), 양육 세액공제 관련 8건(중복포함), 자녀인원수 감산 소득세 조정 관련 2건, 양육용도 소비세 면제 관련 4건 등임

24) 기획재정위원장 제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난임 시술비 및 관련 의약품 비용 공제비율(20%→30%)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비율(15%→20%) 상향)(2021.12.2. 원안가결)

- ▶ (혼인비용 공제) 혼인비용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설
 - (소득공제) 본인 또는 자녀 혼인 비용을 종합소득금액에서 500만원 한도 공제(추경호의원안)
 - (세액공제) 혼인비용 등 세액공제(양금희의원안), 근로소득자(8천만원 이하)·종합소득자(6,500만원 이하) 혼인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조수진·윤재욱의원안)
- ▶ (임신 관련 세액공제) 난임치료비용 세액공제 강화·확대, 임신·출산비용 세액공제 강화
 - (난임치료비용 공제) 현행 난임시술·의약품 비용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것에서, 공제비율 50%로 상향(2천만원 한도)(김희재의원안), 공제대상에 난임대비용적 배아·정자·난자 보전비용 추가(박형수의원안)
 - (임신·출산비용 공제) 현행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에서, 임신·출산 의료비의 경우 공제비율 50%로 상향(2천만원 한도)(김희재의원안)
 - (산후조리비용 공제) 현행 근로소득자(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비용 15% 세액공제에서, 근로소득자(1억원 이하) 산후조리비용 50% 세액공제(김희재의원안)
- ▶ (출산·양육급여 비과세) 출산·양육 관련 비과세 확대 및 강화
 -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에 자녀교육급여 추가(김용민의원안), 사립학교교육아휴직수당 추가(한준호의원안), 사립학교교육아휴직수당 및 가족돌봄휴직수당 추가(김영주의원안),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추가(전용기의원안)
 - (비과세 강화) 출산·양육 비과세 한도를 현행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근로자 1명당 15만원(전재수의원안), 20만원(송언석의원안), 30만원(김희재의원안) 등으로 상향하거나, 자녀수에 따라 20~40만원(서영교의원안),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수진·김승원·김용민의원안), 100만원(유경준의원안) 등으로 상향. 출산수당 비과세 한도 폐지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의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정성호의원안)
- ▶ (양육 관련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강화 및 확대 등
 - (자녀세액공제 강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자녀 1·2·3명당 연 15·30·60만원 및 출산·입양자녀 1·2·3명당 연 30·50·70만원 등에서, 자녀 20·40·80만원 및 출산·입양자녀 100·150·200만원(강훈식의원안), 자녀 50만원 및 출산·입양자녀 50·70·100만원(박광온의원안), 자녀 30·80·130만원 및 50·100·150만원(고용진의원안), 자녀 25·50·100만원 및 출산·입양자녀 60·100·140만원(서영교의원안), 자녀 30·60·150만원 및 출산·입양자녀 50·80·120만원(박성준의원안) 등으로 상향
 - (자녀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자녀를 현행 8~20세에서, 8~25세(박성준의원안), 20세 이하(천준호의원안) 등으로 확대
 - (자녀 의료비 공제 확대) 현재 자녀 등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7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에서, 영유아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최대 15% 세액공제(김영주의원안)
 - (보육비 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에 미취학 자녀 돌봄서비스 비용 추가(김영주의원안)
- ▶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조정) 양육자녀가 있는 가구의 합산 종합소득금액을 구성원수에 따라 균분(박성준의원안), 자녀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강대식의원안)

- (양육 관련 소비세 면제) 영유아용 재화·용역 면세 확대 등
- (영유아용 재화·용역 면세 확대) 현행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에서, 면세 예세율로 강화(박광온의원안), 면세 대상을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신발 등(김영주의의원안), 또는 영유아용 위생용품, 육아에 필요한 식품, 수유용품 등(전재수의의원안)으로 확대
 - 다자녀 양육자 구입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신동근의원안)

표 2 21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혼인·출산·양육 세제지원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주요 내용

지원단계	지원유형	내용
혼인	소득세 소득공제	• 혼인비용 소득공제 신설(추경호의원안)
	소득세 세액공제	• 혼인비용 세액공제 신설(양금희·조수진·윤재욱의원안)
임신	소득세 세액공제	• 난임치료 세액공제 강화 및 확대 - 공제율 상향(김희재의원안) - 공제대상 확대(박형수의의원안) • 임신·출산 관련 세액공제 강화 - 의료비·산후조리비 공제율 상향(김희재의원안)
출산·양육	소득세 비과세	• 출산·양육 관련 비과세 확대 - 자녀교육수당 추가(김용민의의원안) - 사립학교교육아휴직수당 추가(한준호의원안) - 사립학교교육아휴직수당·가족돌봄휴직수당 추가(김영주의의원안) - 배우자출산휴가수당 추가(전용기의의원안) •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강화 - 한도상향(이수진·김승원·김희재·송언석·서영교·전재수·김용민·유경준·정성호의원안)
	소득세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강화 및 확대 - 공제금액 상향(강훈식·박광온·고용진·서영교·박성준의원안) - 공제대상 확대(박성준·천준호의원안) • 보육비 세액공제 확대(김영주의의원안)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폐지(김영주의의원안)
	소득세 과표인하	• 양육자녀가 있는 가구의 합산 종합소득금액을 구성원수에 따라 균분(박성준의원안)
	소득세 세율인하	• 자녀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강대식의의원안)
	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용품 면세 - 적용기한 연장(전재수의의원안) - 적용대상 확대(김영주의의원안) - 면세예세 영세율로 강화(박광온의원안)
	개별소비세 면제	• 다자녀 양육자 구입 승용자동차 면세한도 상향(신동근의원안)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혼인·출산·양육 관련 주요국의 조세지원 사례

국외 주요국은 자녀 조세지원 제도로써 우리와 같이 기본적으로 소득세 인적공제를 시행중이며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한 비용공제를 인정하고 일부 육아품목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시행 중인 한편, 프랑스는 가족계수제도, 대만은 기본생활비차액제도 등과 같은 특이제도를 운용중

가. 미국²⁵⁾

- (과세표준 조정) 부부의 경우 합산(Married filing joint return) 또는 개별(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 신고 중 선택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합산신고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음
- (인적공제) 기본공제로서 19세이하(학생의 경우 24세이하) 자녀에 대해 1,150달러(USD) 또는 근로소득과 400달러의 합계액(기본표준공제액 한도) 중 큰 것을 소득공제. 추가공제로서 2,500달러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17세이하 자녀 1인당 최대 2,000달러 소득세 세액공제
 - ▶ 추가공제 금액은 부부개별신고 소득 기준 연 20만달러 초과시 소득 1,000달러당 50달러만큼 감소
- (비용공제) 자녀 교육비, 보육비 등 소득세 공제
 - ▶ (미국기회 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소득 최대 9만달러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첫 4년간 대학 교육비 첫 2,000달러의 100% 및 추가 2,000달러의 25%까지 세액공제
 - ▶ (평생교육 세액공제 Lifetime Learning Credit) 소득 최대 9만달러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비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자녀 교육비 최대 2,000달러까지 세액공제
 - ▶ (자녀보육비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소득이 있거나 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13세 미만 자녀를 위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지출한 경비 중 자녀 1인당 최대 3천달러에 대해 최대 35%(소득 15,000달러 이하, 최대한도 2,100달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²⁶⁾ 적용
 - 소득 43,000달러 이상의 경우 최대 공제율은 20%(최대한도 1,200달러)
- (소비세 면제) 기저귀에 대한 소비세 감면이 51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서 판매세(Sales Tax)에 따라 시행(면제 17개주, 경감 13개주, 5개 주는 비과세)

나. 영국²⁷⁾

- (인적공제) 자녀관련 소득공제 제도는 시행하지 않으나, 16세이하 첫째 자녀 1인당 545파운드(GBP) 및 둘째 자녀 1인당 2,935파운드(2022년 기준) 추가하여 소득세 세액공제

25)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501: Dependent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2022.12 등 참조

26) 26개 주는 세액공제, 4개 주는 소득공제

27) 영국 정부 관련 누리집(<https://www.gov.uk/browse/tax/income-tax>) 등 참조

- ▶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16세미만(학생 등의 경우 20세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2,070파운드(편부모의 경우 2,125파운드)(2022년 기준) 등 세액공제
- (소비세 면제) 일부 유아·아동용품에 대해 소비세 면제·경감. 유아·아동용 의류(기저귀 등), 신발, 그림책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유아·아동용 차량보조좌석 등에 대한 경감세율(5%) 적용(※표준세율 20%)

다. 프랑스²⁸⁾

- (과세표준 조정) 프랑스 소득세 부과원칙은 가계(foyer fiscal) 단위 종합과세이며 부부 및 부양자녀 인원수 등이 반영된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에 따라 과세표준 및 부과액 산정
 - ▶ 혼인·동거 여부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가족계수를 산정한 후, 동 계수로 과세대상소득을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다시 동 계수를 곱하여 가계가 최종 납부할 소득세액 산정
 - 가족계수는 혼인·동거 여부에 따라 1 또는 2 단위가 주어지며, 부양자녀 둘째까지는 1명당 0.5단위, 셋째부터는 1명당 1단위가 추가되고,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0.5단위 추가(세액감면 한도액이 0.5단위 추가시 1,678유로 및 0.25단위 추가시 839유로로 설정)
- (비용공제) 육아비, 교육비 등 소득세 공제
 - ▶ (육아비 Frais de garde d'enfant 공제)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가정 내에서(à domicile) 등록된 보모를 고용할 경우 관련 지출비용(최대 15,000유로)의 50%를 세액공제하고, 가정 밖에서(hors du domicile) 위탁 기관(등록된 보모, 유치원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 지출비용(자녀 1인당 최대 3,500유로)의 50% 세액공제
 - ▶ (교육비 Frais de scolarité 공제) 자녀 1인당 61유로(고등학생) ~ 133유로(대학생) 세액공제
- (소비세 면제) 아동돌봄 영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율(10%) 적용(※표준세율 20%)

라. 독일²⁹⁾

- (과세표준 조정) 부부의 경우 합산분할과세(Ehegattensplitting)가 원칙이며 개인과세(Einzelveranlagung) 또한 선택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부부간 소득격차가 크거나 고소득일수록 합산분할과세에 따른 세제혜택 증가
 - ▶ 부부합산분할과세의 경우 우선적으로 개별분리된 각각의 과세소득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부부를 단일 납세의무자로 하는 과세표준이 산정되며 합산분할세율(Splittingtarif)이 별도 적용

28) 프랑스 정부 관련 누리집(<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modalites-de-declaration>,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quotient-familial>, <https://www.impots.gouv.fr/particulier/deductions-liees-la-famille#:~:text=un%20cr%C3%A9dit%20d%E2%80%99imp%C3%B4t%20%C3%A9gal%20%C3%A0%2050%25%20des%20d%C3%A9penses,des%20revenus%20de%20l%E2%80%99ann%C3%A9e%202022%20d%C3%A9clar%C3%A9s%20en%202023%29.>) 등 참조

29) 서보국(「독일 조세법상 소득공제제도 연구」, 『조세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20.8.) 등 참조

- (인적공제) 평가기준소득(공제 후 소득) 6만유로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8세미만 자녀(교육 및 직업훈련 요소 감안하여 학생의 경우 25세미만) 1인당 최대 8,388유로(2022년 기준) 소득공제
- (비용공제)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 ▶ (양육비 공제) 14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출한 부모 또는 교육자 고용비용, 학교에서의 아동 감독(Beaufsichtigung)비용, 유치원이나 보호센터 등의 기숙사 비용, 내국인 가사도우미 등이며 레저활동이나 식사비(단, 사교육비 등은 미포함) 등의 2/3까지 소득공제(한도 4,000유로)
 - ▶ (교육비 공제) 자녀 1인당 유럽지역 사립학교(공립학교 제외) 등록비 30%(한도 5,000유로) 공제
 - ▶ (의료비 공제) 실제 의료비 지출에서 소득수준, 혼인여부 및 자녀수 감안하여 세액공제
- (소비세 면제) 유아·아동용 그림책에 대해 경감세율(7%) 적용(※표준세율 19%)

마. 대만³⁰⁾

- (소득공제) 기본생활비차액(基本生活費差額) 제도
 - ▶ 기본생활비가 인적공제, 표준공제(또는 항목별 공제), 특별공제(급여 또는 근로소득 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소득공제
 - 1인당 기본생활비 19만 6천달러(TWD) 기준으로 납세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자녀 포함) 수를 곱하여 가계의 최종 기본생활비를 산정(2년마다 평가)
- (인적공제) 소득 670만대만달러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5세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2만대만달러 소득공제(과거 2.5만대만달러에서 2018년 2월 인상)

5. 시사점

혼인 건수감소 및 초혼 연령증가 추세가 지속중인 가운데³¹⁾ 혼인·출산·양육 기반조성 차원에서 실질적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

- 현재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혼인비용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설안이 계류중
- 정부는 혼인지원 정책안 등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3.9.1.)

30) 대만 재정부(財政部) 관련 누리집(<https://www.mof.gov.tw/Eng/singlehtml/312?cntId=5d2738b6b05a41d0913209ff549b50f3>) 등 참조

31) 혼인건수가 2012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19년부터는 해마다 역대 최소치 경신 중이며, 2022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1970년 통계작성 시작 이래 최고 수준 기록(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2023.3.16.; 이보희, “혼인 건수, 4년째 역대 최저”, 「서울신문」, 2023.3.16.)

우리나라 자녀 관련 공제제도는 국외 주요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경향이 있으므로 재정지원정책 등과의 통합적 고려를 통해 조세지원정책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외 주요국의 경우 부양자녀수를 반영한 조세지원 제도로서 소득세 기본공제 이외, 과세표준 완화 등의 세부담 완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부담 완화제도가 제한적으로 적용중
 - ▶ 자녀세액공제 이외 추가로 시행 중인 세제지원 제도는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가 2023년부터 시행중
 - ▶ 최근 가구당 미성년 자녀 인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다양한 방식의 세부담 완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³²⁾

32) 정부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하향조정 검토중(정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안)」, 2023.8.)

영상콘텐츠 조세지원의 입법 동향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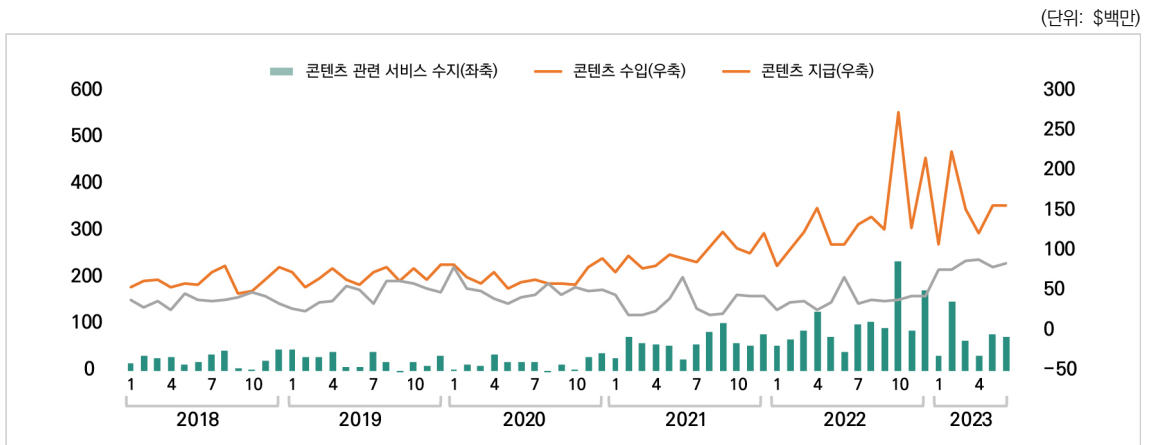
이 정 훈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7)

1. 논의 배경

음악·영화·드라마·게임 등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이하 K-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의 큰 인기에 힘입어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 K-콘텐츠 시장규모는 2018년 601억 달러에서 2021년 702억 달러로 3년간 약 16.8% 증가하며 전세계 7위 수준으로 성장¹⁾
 - ▶ 그 가운데 영상콘텐츠 산업(방송, 영화, 애니메이션)은 2021년 매출액 기준 약 28.0조원으로 전체 콘텐츠산업의 20.3%를 차지함²⁾
- K-콘텐츠 수출액은 2018년 96.1억 달러에서 2022년 133.1억 달러로 4년간 약 38.5% 증가³⁾
 - ▶ 그 결과,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2021년 이후 흑자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며 2022년 누적 12.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그림 1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추이



주: 수출을 통해 거주자가 벌어들인 금액은 수입(收入), 서비스 수입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지급(支給)에 해당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보고서」, 2022.12.

- (1위) 미국 \$9,798억, (2위) 중국 \$4,461억, (3위) 일본 \$2,082억, (4위) 영국 \$1,203억, (5위) 독일 \$1,130억, (6위) 프랑스 \$773억

2)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3.2.

3)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각 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2022.12.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수출전략회의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함

- (2023.2.23.)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영상 등 K-콘텐츠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2023.7.28.)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상향 및 투자 관련 세액공제 신설안 발표

본고는 영상콘텐츠 관련 세액공제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조세지원 검토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내용 및 입법동향

가. 주요 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혜대상)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으로 제작을 담당하는 내국인⁴⁾
- (대상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⁵⁾, 영화⁶⁾, OTT 영상⁷⁾
- (공제대상 제작비) 국·내외에서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⁸⁾
 - 제작준비: 시나리오 제작비, 기획·프로듀서·감독 인건비 등
 - 촬영제작: 배우 출연료⁹⁾, 제작스태프 인건비¹⁰⁾, 장비·소모품비, 차량·숙박료 등
 - 후반제작: 편집비, 음악비, 자막 관련 비용, 특수효과 및 CG비용 등
- (세액공제율) 대기업 3% /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7%
- (공제시기) 영화: 첫 극장 상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방송·OTT: 첫 방송·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¹¹⁾

4) 다음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작가와의 계약 담당, 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담당, ③ 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 담당, ④ 제작비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담당

5)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6) 영화상영관에서 7일(예술평영영화는 1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영화

7)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에 한함. 참고로 2023년 6월 기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 TV, 왓치,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사.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유료로 유통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므로, 유튜브 등에서 무료로 시청가 능한 영상은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영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8)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 제작비용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 참조

9) 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출연료 합계액이 전체 제작비용의 30%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10) 인건비 중 퇴직급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하며,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대상으로 함

11) 여러 기간을 걸쳐 방송·제공되는 경우, 과세연도를 배분하거나 마지막 회차가 속한 과세연도로 선택하여 공제 가능

(개정연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6년 말 세법개정으로 2017년부터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2차례 연장되었으며, 대상 콘텐츠 및 제작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대상 콘텐츠: (2020년~) ‘오락 프로그램’ 추가
(2023년~) ‘OTT¹²⁾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 추가
- 제작비 범위: (2022년~) ‘국외에서 발생한 제작비’도 공제대상에 추가

(공제실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건수와 공제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은 2018년 21억원에서 2022년 309억원으로 4년간 약 15배 (연평균 97.0%) 증가
 - ▶ 공제신고 건수는 2018년 총 43건에서 2022년 113건으로 4년간 약 2.6배 증가
- 세액공제 실적의 대부분은 법인세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세목별 실적은 법인세 309억원(99.8%), 소득세 0.8억원(0.3%) 수준

표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p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인세	22	20	36	69	45	99	48	169	78	309
소득세	21	0.4	34	0.4	39	0.7	63	1.5	35	0.8
계	43	21	70	69	84	99	111	170	113	309

주: p는 잠정치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나. 최근 입법 동향

(의원안) 2023년 8월 15일 기준,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상콘텐츠 관련 의원안은 총 16건

- 의원안의 다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12건)이며, 이 가운데 일몰기한을 연장·삭제하는 안은 5건 계류 중
- 영화·방송·OTT로 한정된 대상 콘텐츠를 뮤직비디오, 웹툰 등으로 확대하는 안(3건) 및 영상콘텐츠 관련 R&D 세액공제 관련 의원안(2건) 계류 중
- 이외에도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2건) 및 콘텐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1건) 계류 중

12) 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표 2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상콘텐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의원안

대표 발의자	제안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이상헌 의원	2020.06.05.	2113007	•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배현진 의원	2020.07.16.	2102025	•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
김승수 의원	2021.03.05.	2108551	• 영상콘텐츠 R&D 세액공제 신설(공제율 = ㉠ + ㉡) ㉠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그 외 기업 20% ㉡ 매출액 대비 R&D 비율(한도: 10~15%)
이상헌 의원	2021.10.27.	2122822	• 문화콘텐츠(방송·영화·웹툰·게임물 등) 제작투자 세액공제 신설(5%)
이상헌 의원	2021.10.28.	2113007	• 공제대상에 '웹툰, 게임, 전자출판물' 추가
김윤덕 의원	2022.11.08.	2118148	• 연구개발(R&D) 범위에 영상콘텐츠를 추가 • 대기업 9%, 중견기업 17%, 중소기업 20% • 적용기한 5년 연장 ('27.12.31.)
황보승희 의원	2023.04.04.	2121115	• 공제대상에 '뮤직비디오, 게임물, 전자출판물, 웹툰' 추가 • 대기업 10%, 중견기업 17%, 중소기업 23%
이용 의원	2023.04.06.	2121166	• 공제대상에 '뮤직비디오, 게임물, 전자출판물, 웹툰' 추가 • 대기업 6%,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20%
이용 의원	2023.04.07.	2121193	• 콘텐츠제작 관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수도권 외 50 → 100% • 수도권 내 0 → 50%
이용호 의원	2023.05.09.	2121890	•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 영상콘텐츠 제작투자 세액공제(10%) 신설
홍성국 의원	2023.06.22.	2122822	• 대기업 25%,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25% • 일몰기한 1년 연장 ('26.12.31.)
윤영찬 의원	2023.06.29.	2122970	• 대기업 20%,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25% • 일몰기한 삭제
한병도 의원	2023.07.05.	2123085	•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 • 일몰기한 삭제
이병훈 의원	2023.07.13.	2123243	• 공제대상에 '뮤직비디오, 게임물, 간행물, 웹툰' 추가 •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
배준영 의원	2023.07.20.	2123368	•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25% • 적용기한 1년 연장 ('26.12.31.)
윤두현 의원	2023.07.20.	2123375	•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 일몰기한 삭제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조회일: 2023.8.15.

(정부안)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관련 세제지원 확대안을 발표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기본공제: 대기업 3 → 5%, 중견기업 7 → 10%, 중소기업 10 → 15%
- 추가공제* :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23.7.27.)에 따르면, 구체적인 추가공제 요건은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발표할 계획

표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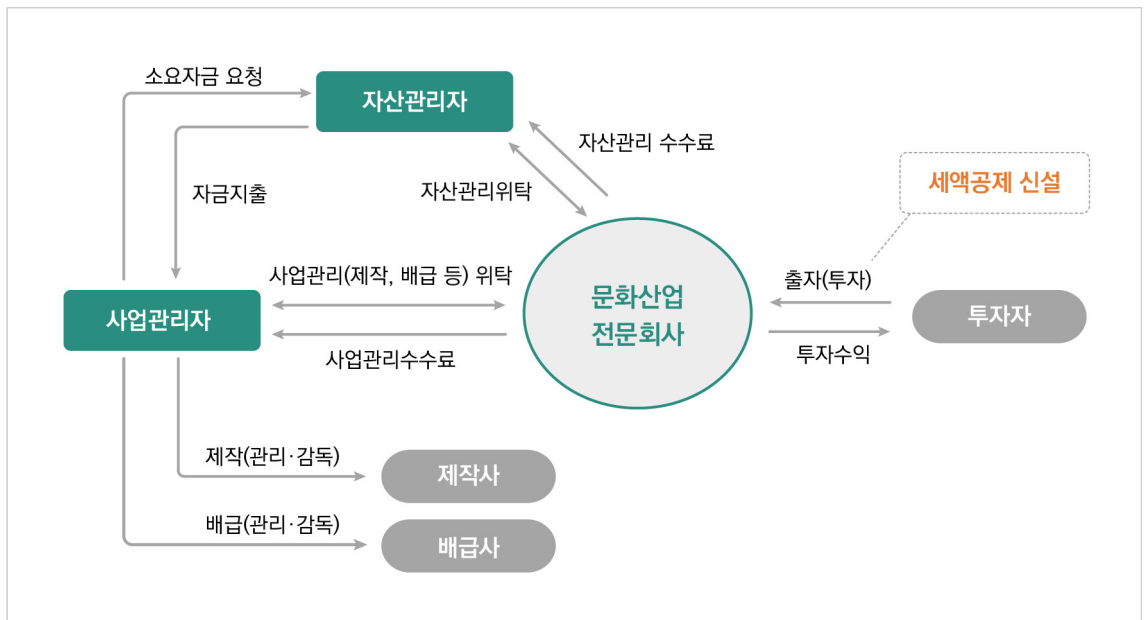
〈현행〉			⇒	〈개정안〉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구분	기본공제 (A)	추가공제 (B)	최대 (A+B)
대기업	3	없음		대기업	5	10	15
중견기업	7			중견기업	10	10	20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15	15	30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수혜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세액공제율) 3%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분

그림 2 문화산업전문회사 투자·제작 사업구조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주요국의 영상콘텐츠 관련 조세지원 현황

가.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제작비용에 대한 일시상각 또는 손금산입 특례 등 조세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별 주정부는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세액공제를 운용 중

- 연방정부는 영화, TV시리즈 등에 대해 일시상각 또는 손금산입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상각 특례) 작품이 완성되어 상영하는 사업연도에 제작비를 일시에 상각
 - (손금산입 특례) 작품 완성 전이라도 제작비를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

표 4 미국의 영상콘텐츠 관련 세제지원

구분	일시상각 특례 IRC §168(k)	손금산입 특례 IRC §181
대상 콘텐츠	영화 및 TV프로그램, 극장용 공연 작품	
요건	전체 제작비의 75% 이상 미국 내에서 지출	
지원방식	80% ¹⁾ 일시상각 (상영시점에 비용처리)	손금산입 (지출시점에 즉시 비용처리)
한도	없음	1,500만 USD ²⁾
비고	2027년 종료 예정	2026년 종료 예정

주: 1) 일시상각률은 '24년 60%, '25년 40%, '26년 20%까지 축소될 예정이며, '27년에는 폐지 예정

2) 특정 저소득 커뮤니티 및 소외지역 등 투자의 경우 최대 \$2,000만 까지 허용

자료: Internal Revenue Code(<http://uscode.house.gov>), 조회일: 2023.8.15.

- 각 주 정부는 지역 내 영상제작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공제를 제공
 - 2023년 기준,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에서 세제지원을 운용 중
 - 주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은 지역 내에서 일정 제작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지역주민의 인건비에 대해 추가공제를 제공 등 지역 내 고용·산업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캘리포니아) 영화·TV시리즈 20~30% / 독립영화·지역이전 TV시리즈 25~30% 세액공제,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다른 납세자에게 세제혜택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Transferable Tax Credit)
 - (뉴욕) 영화·TV시리즈 30% 세액공제, 제작비가 \$50만 이상인 경우 적격 인건비·특정지역 내 촬영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 (텍사스) 영화·TV시리즈 5~20%¹³⁾ 세액공제, 촬영일의 60% 이상이 텍사스 내 촬영 및 유급 스태프의 70% 이상이 텍사스 거주자일 것을 요구, 특정지역 내 촬영 시 2.5% 추가 세액공제

13) 주 내 최소지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25만~100만) 5%, (\$1백만~350만) 10%, (\$350만 이상) 20%

나. 캐나다

캐나다는 영화 및 TV프로그램의 제작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운용 중

- 캐나다인이 권리를 보유한 영상물에 대하여 적격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
 - ▶ 대부분의 제작과 권리가 캐나다인(법인 포함)에 귀속될 것을 요건으로 함
 - ▶ 해당 적격 인건비의 한도는 총 제작비의 60% 이내
- 해외 제작사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자국 내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6%를 세액공제
 - ▶ 영상 유형별로 최소 제작비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인에게 지급한 적격 인건비에 대해 공제
- 두 제도 모두, 납부할 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환급 가능함

표 5 캐나다의 영상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구분	캐나다 영상물 제작 세액공제(CPTC) Canadian Film or Video Production Tax Credit	영상물 제작 서비스 세액공제(PSTC) Film or Video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CAVCO ¹⁾ 인증)	
요건	제작 후 25년간 캐나다인이 저작권 소유 제작비의 75% 이상이 캐나다인·서비스에 지출캐나다인 창작 점수 일정점수 이상 획득 ²⁾	최소 제작비용 요건 · 영화: 24개월간 최소 1백만 CAD · TV프로그램: 30분 미만은 회차당 10만 CAD 30분 이상은 회차당 20만 CAD
수혜 대상	캐나다 법인	캐나다 법인 및 외국기업 · 캐나다 고정사업장에서 50% 이상의 제작 수행 · 캐나다 내 제작기간 동안 권리 소유
대상 제작비	적격 인건비(총 제작비의 60% 이내)	적격 캐나다인 인건비 (Qualified Canadian Labour Expenditure)
지원방식 /공제율	세액공제 25%	세액공제 16%
환급	환급 가능	

주: 1) 캐나다 시청각 인증실(Canadian Audio-Visual Certification Office)

2) 캐나다 창작물 요건(Canadian film or video production certificate)

자료: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CPTC(<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services/funding/cavco-tax-credits/canadian-film-video-production/application-guidelines.html>), PSTC(<https://www.canada.ca/en/canadian-heritage/services/funding/cavco-tax-credits/film-video-production-services/application-guidelines.html>), 조회일: 2023.8.15.

다. 영국

영화, 애니메이션, TV프로그램 등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극장용 공연작품, 오케스트라 등까지 폭넓게 세제감면 혜택을 적용

-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적 검증(cultural test)을 통해 적격 콘텐츠로 인정받아야 함
 - ▶ 영상물의 경우, 영국 내 제작비 비중이 최소 10% 이상일 것을 요구

- 문화적 검증은 영국 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가 담당하며 내용(content), 기여도(contribution), 허브(hubs), 종사자(practitioners)를 부문별로 평가 후 승인

- 영국의 세제지원은 추가 소득공제 방식이며, 결손기업에 대해 세액을 환급
 - 추가 소득공제 금액은 전체 제작비의 80%와 영국 내 지출된 제작비 중 작은 금액
 - 한편 결손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가능손실의 25%를 환급

표 6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구분	창조산업 세제지원 제도 Creative Industry Tax Reliefs
대상 콘텐츠	영화, 애니메이션, 고해상도TV프로그램, 어린이프로그램, 그 외 창작물 ¹⁾ (비디오게임·극장용 공연·오케스트라 등)
대상 제작비	핵심 제작비 지출(core expenditure) ²⁾
요건	문화적 검증(cultural test) 통과, 영국 내 제작비 비중 10% 이상, 영국 법인
지원방식	추가 소득공제(additional deduction) 대상금액 = min(전체 제작비×80%, 영국 내 제작비)
환급	환급가능손실(surrenderable loss) ³⁾ × 25%

주: 1) 대상 콘텐츠에 따라 요건 및 공제율 등이 상이하지만, 이하 표 내용은 영화 등 영상물을 기준으로 작성

2) 핵심 지출은 직접적인 제작비로, 기획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및 홍보비 등은 제외함

3) 결손액과 추가 소득공제액 중 적은 금액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creative-industry-tax-reliefs>), 조회일: 2023. 8. 15.

라. 프랑스

프랑스는 적극 영화 및 방송물 등의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 중

- 주된 촬영 및 제작이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지며, 프랑스어로 촬영할 것을 요구함
 - 방송물의 경우 최소 제작비 및 영상길이 요건이 존재
 - 해외제작영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작비 요건을 충족하며 5일 이상 프랑스에서 촬영해야 함
 - 또한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CNC)의 심사를 받아 적격대상으로 승인받아야 함
- 프랑스의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이며,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 해당 금액은 환급
 - (공제한도) 극장영화: 전체 제작비의 80%(금액 한도 3,000만 유로)
 - 방송물: 유형별로 분당 공제액 한도

표 7 프랑스의 영상콘텐츠 관련 세제지원

구분	영화 세액공제(CIC) Crédit d'impôt cinema	시청각물 세액공제(CIA) Crédit d'impôt audiovisuel	해외제작영화 세액공제(C2I) Le Crédit d'impôt international
대상 콘텐츠	영화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방송물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공연실황)	해외합작 영화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승인	CNC의 심사를 거쳐 세액공제 적격 작품으로 승인		
수혜대상	프랑스 제작사 법인		외국회사와 계약한 프랑스 제작회사
요건	주된 촬영 및 작업이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질 것 프랑스 내 사용언어로 촬영		최소 제작비 € 25만 (또는 제작비 중 50% 이상 프랑스 내 지출) 5일 이상 프랑스 내 촬영
	-	분당 금액·길이 ¹⁾ 요건	
지원방식 /공제율	세액공제 30% ²⁾	세액공제 25% / 10%(공연)	세액공제 30% / 40% ³⁾
한도	전체 제작비의 80% 프로젝트당 € 3,000만	분당 일정금액	전체 제작비의 80% 프로젝트당 € 3,000만
환급	환급 가능		

주: 1) (픽션) € 5,000·45분 이상, (다큐) € 2,333·24분 이상, (애니메이션) € 3,000·24분 이상, (공연) € 2,300·1,100·40분 이상

2) 프랑스어 외의 언어로 제작된 경우는 공제율 20% 적용

3) € 2백만 이상 지출된 경우

자료: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 홈페이지, CIC(https://www.cnc.fr/professionnels/aides-et-financements/cinema/production/credit-dimpot-cinema_132769), CIA(https://www.cnc.fr/professionnels/aides-et-financements/audiovisuel/production/credit-dimpot-audiovisuel_778316), C2I(https://www.cnc.fr/professionnels/aides-et-financements/multi-sectoriel/production/credit-dimpot-international_778354), 조회일: 2023.8.15.

[참고] 프랑스 - 소피카(SOFICA) 출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Souscription au capital de SOFICA)

- (소피카) 영화 및 영상물 제작을 목적으로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투자회사
- CNC는 매년 세액공제 대상 소피카를 지정하여 발표 (2022년에는 12개의 소피카 지정)
- (수혜자) 소피카에 투자(출자)하는 개인
- (감면액) 출자액*의 30% / 36%** / 48%***
 * 출자액 한도 = min(순 소득 × 25%, € 18,000)
 ** 소피카가 다음해 12월 말까지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한 경우
 *** 소피카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프랑스 작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 (요건) 5년간 출자 유지
- (환급불가) 감면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을 제공하지 않음

4. 영상콘텐츠 제작업 현황

가. 일반 현황

(영화)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종업원 수는 2020년까지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로 반등

-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 수는 2018 ~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641개로 전년대비 33.3% 증가
- 종사자 수는 2019년 6,311명에서 2020년 2,934명으로 전년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나, 2021년은 전년대비 45.0% 증가하며 4,253명을 회복
-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19년 1조 1,352억원에서 2020년 7,993억원까지 감소 후, 2021년은 전년대비 10.2% 증가하여 8,811억원까지 증가
 - 다만, 1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20년 44억원에서 2021년 28억원으로 전년대비 26.6% 감소

그림 3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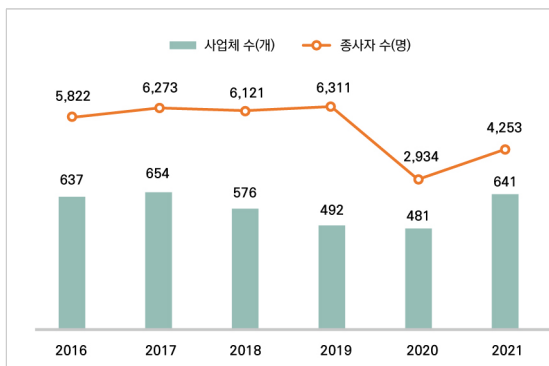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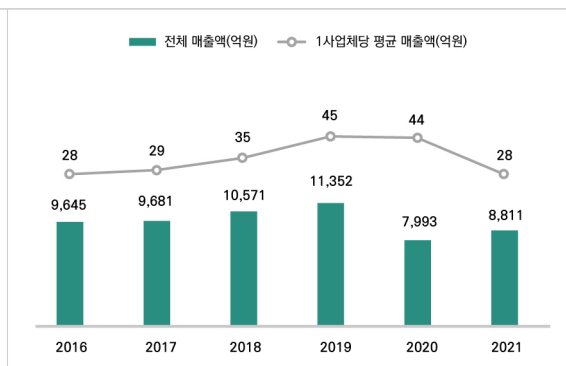


그림 4 영화 제작 관련 사업체의 매출액 추이



주: 통계분류상 '영화기획 및 제작 및 지원업'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드라마·예능) 방송프로그램 제작업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적었으며 꾸준한 증가세

- 방송 제작 관련 사업체는 2019년 658개, 2020년 671개, 2021년 732개로 점차 증가
- 종사자 수는 2019~2021년 동안 1.3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해당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16년 1.4조원에서 2021년 4.5조원으로 5년간 219.8% 증가
 - 1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1년 62억원으로 5년간 142.0% 증가

그림 5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업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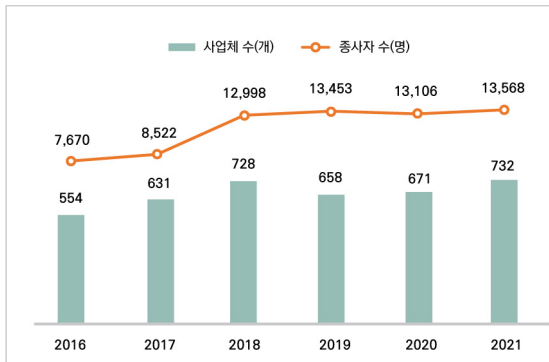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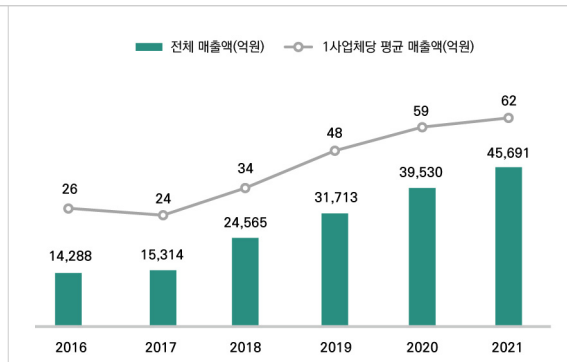


그림 6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업체의 매출액 추이



주: 통계분류상 '방송산업 전체(독립제작자 포함)'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수익성 현황

「콘텐츠산업조사」에서는 기업 단위의 손익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하는 외부감사 법인¹⁴⁾의 재무자료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수익 수준을 검토

- 2022년 기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하는 전체 외감기업은 총 152개이지만, 영화·드라마·애니를 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62개)¹⁵⁾을 기준으로 살펴봄
- (일반 현황) 분석대상 62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36개(58.1%)이며, 나머지 26개(41.9%)는 대기업
 - ▶ 대상기업의 평균업력은 15.3년으로, 5년 이하와 5~10년 기업이 각각 12개로 높은 빈도를 나타냄

그림 7 기업규모별 분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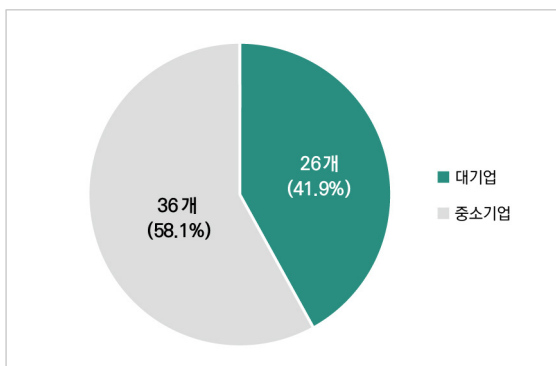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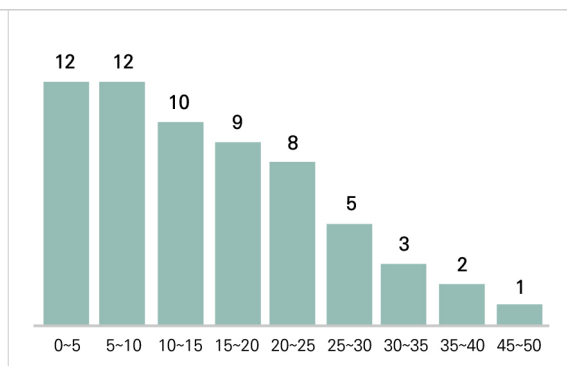


그림 8 업력 구간별 분포(개)



자료: 한국신용평가사의 'kisvalue'를 통하여 조회(2023.8.21.) 한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4) 주권상장법인(코스피·코스닥·코넥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이상 등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15) 사업보고서 및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화상업업, 배급사 및 매니지먼트사, 광고·뮤직비디오 제작업체, 특수효과 업체 등은 제외

- (흑자법인 현황) 흑자법인¹⁶⁾의 전체 세전이익은 2020년까지 1,000억원 대에 머물렀으나,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증가하여 2022년 5,528억원까지 증가
 - ▶ 1법인당 세전이익은 2019~2020년 40억원 내외에서 2년간 연평균 100.8% 증가하며 2022년 167.5억원 수준으로 확대
 - ▶ 흑자법인의 1법인당 평균 세전이익은 2016~2022년 기간 중소기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차이가 확대되어 대기업 317.6억원, 중소기업 26.3억원 수준

그림 9 흑자법인 세전이익 추이(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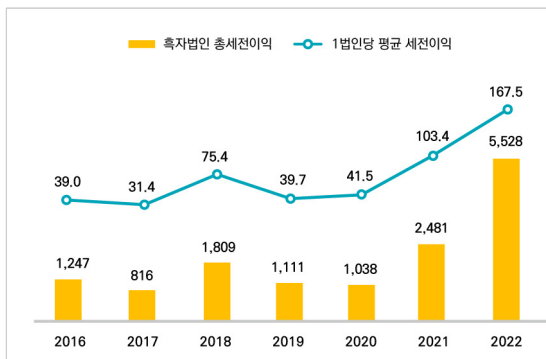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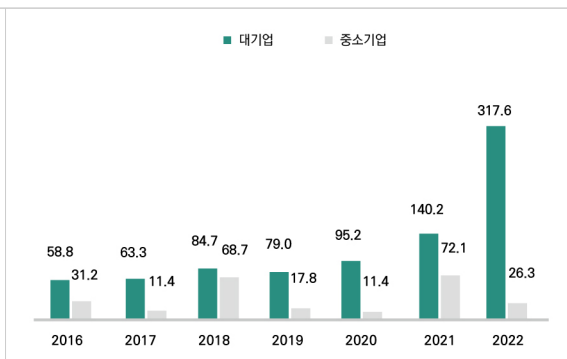


그림 10 기업규모별 평균 세전이익 추이(억원)



자료: 한국신용평가사의 'kisvalue'를 통하여 조회(2023.8.21.) 한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적자법인 현황) 적자법인의 총 세전손실은 2020년 -1,854억원에서 2021년 -3,920억원까지 확대되었으나, 2022년에는 적자폭이 -2,246억원으로 축소
 - ▶ 기업규모별 적자법인의 평균 세전손실을 살펴본 결과, 2017년 이후로 중소기업의 평균 적자액이 대기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적자법인 세전손실 추이(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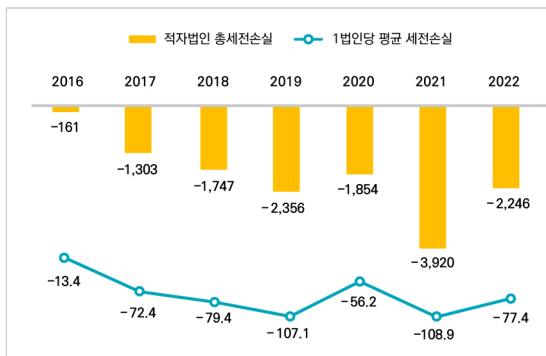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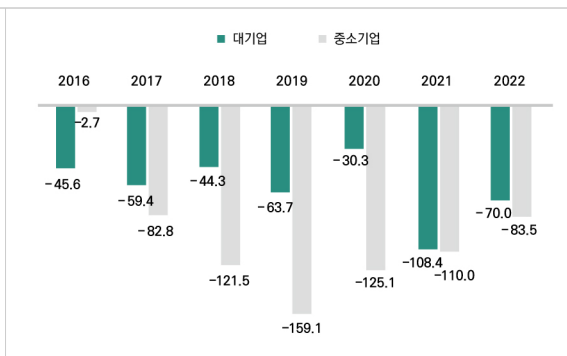


그림 12 기업규모별 평균 세전손실 추이(억원)



자료: 한국신용평가사의 'kisvalue'를 통하여 조회(2023.8.21.) 한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6) 별도(개별)기준으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0'이상인 법인

5. 요약 및 시사점

제21대 국회에서는 영상콘텐츠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는 올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원안이 공제율 상향·공제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있으며, 정부안은 기본공제율 상향과 함께 추가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정부는 추가공제 대상의 기준을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
- 이외에도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와 관련해 2건의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투자에 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
- 정부안과 다수의 의원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

주요국의 조세지원 사례를 참조하여, 세제지원 대상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 및 공제수준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는 납세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므로, 세액이 없거나 영세한 신생 중소기업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
 - ▶ 이에 따라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른 효과는 대부분 대기업에 귀착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술·독립영화 등이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신생 사업체 등에 대하여 캐나다·영국·프랑스처럼 제한적으로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¹⁷⁾
 - ▶ (캐나다·영국·프랑스) 영상콘텐츠 관련 감면될 금액이 당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엔 차액을 환급
 - ▶ (미국 캘리포니아주) 독립영화에 대한 세액공제는 양도가능(transferable)
 - ▶ 다만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은 현행 이월공제¹⁸⁾와의 정합성 및 타 조세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한편, 정부는 아직 추가공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예: 내국인 인건비, 낙후지역 내 촬영)이나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영상 등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 (미국 뉴욕·텍사스 주) 특정 인건비 및 특정 지역 내 촬영에 대해 추가공제 적용
 - ▶ (영국) 세제지원 대상 여부가 영상물의 문화적 기여수준 등에 따라 판단

17) 임병인, 「콘텐츠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용역, 2020. 11.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미공제액에 대한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제지원 요건으로 자국 내에서 총 제작비의 일정비율이 발생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것을 요구

이외에도 낮은 제도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

- 김학수(2022) 등¹⁹⁾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있다고 주장
- 또한 김소연 등(2022)²⁰⁾은 현행 공제요건이 엄격하여 활용이 어렵다는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제요건을 완화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공제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 현실적으로 다수의 영상콘텐츠 투자·제작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며 여러 제작사 등이 협업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현행은 주된 제작사 한 곳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 그 결과,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세법상 4가지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존재

19) 김학수 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22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2022. / 조사대상(257개) 중 제도 인지비율 19.8%

20) 김소연·이윤경·진선영·주익현,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방안 및 효과분석」, 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22.

재정추계&세제 이슈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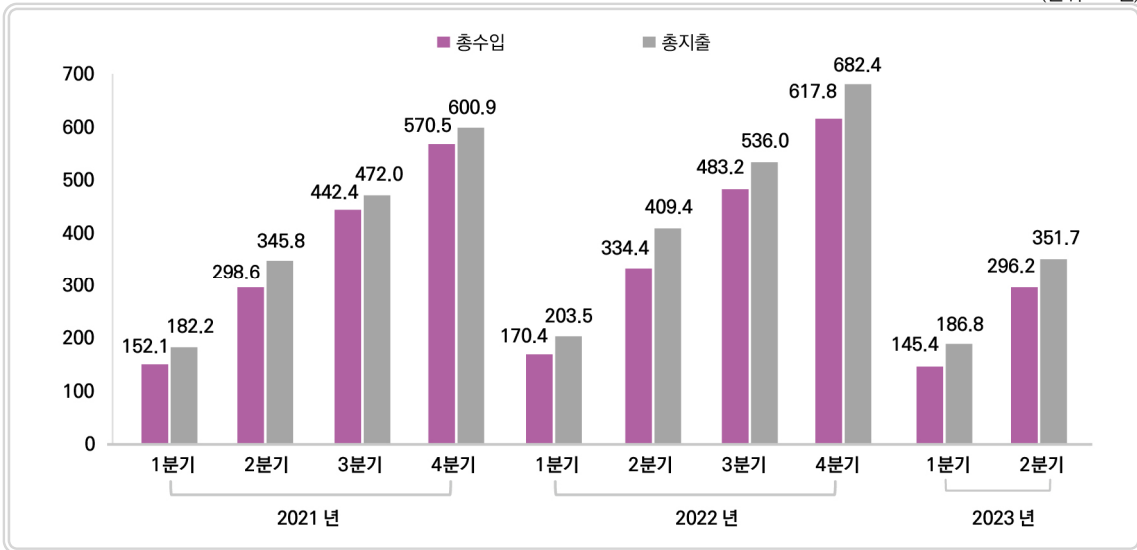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고 은 비 추계세제분석관 (02-6788-4839)

총수입·총지출(분기별·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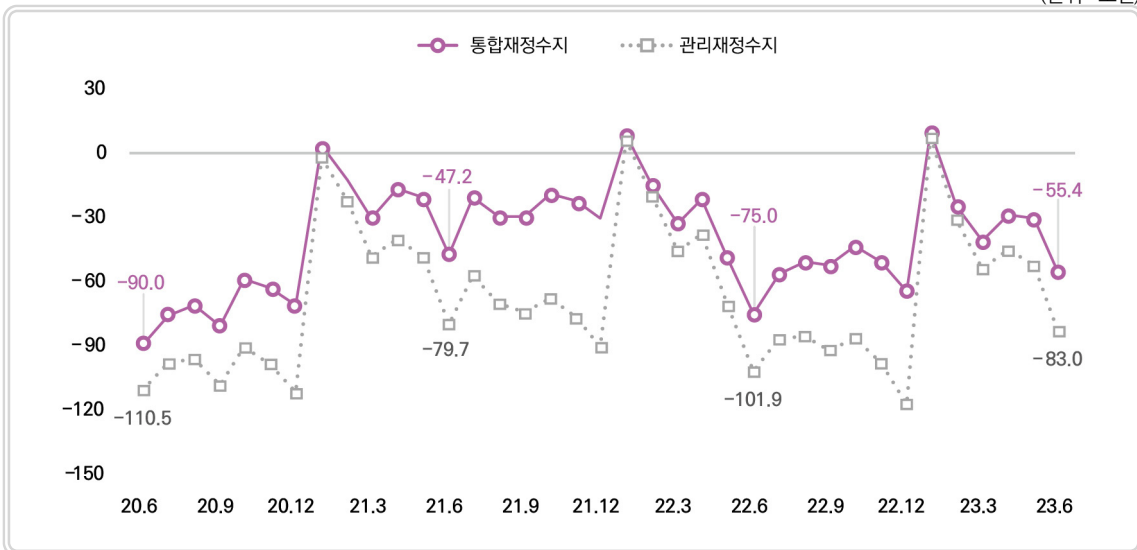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수지(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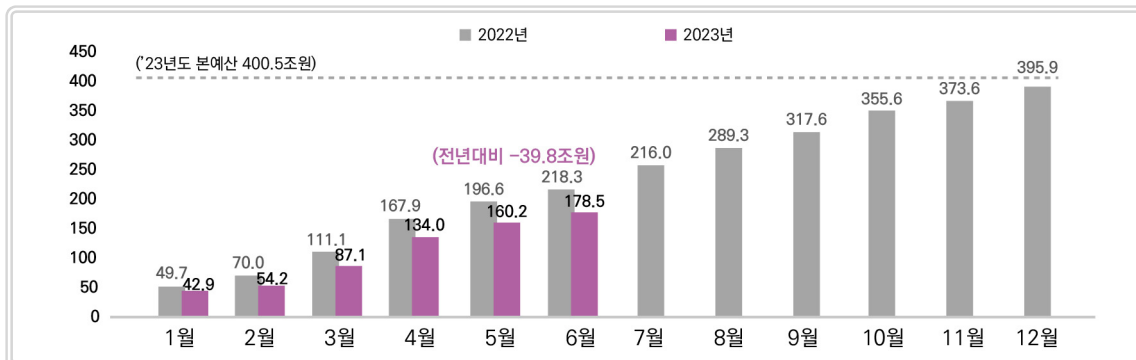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세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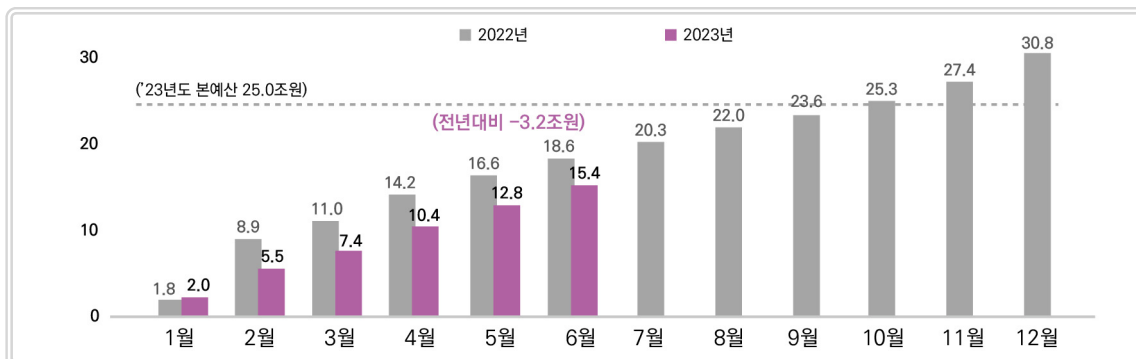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외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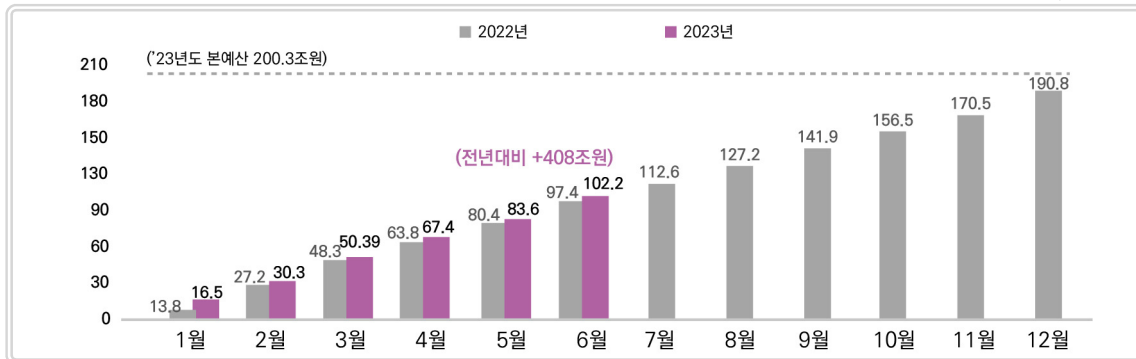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수입 실적(월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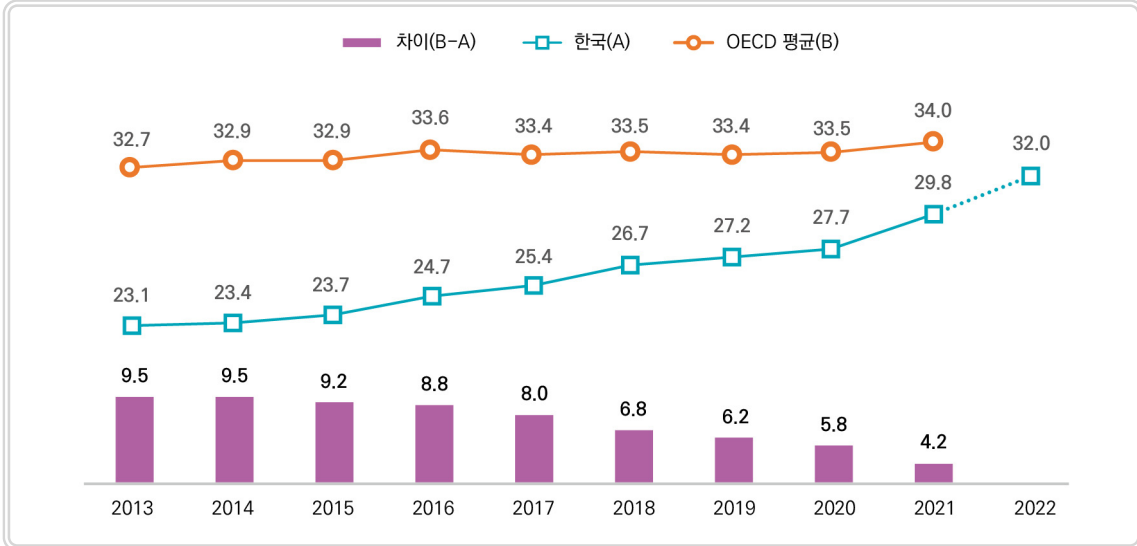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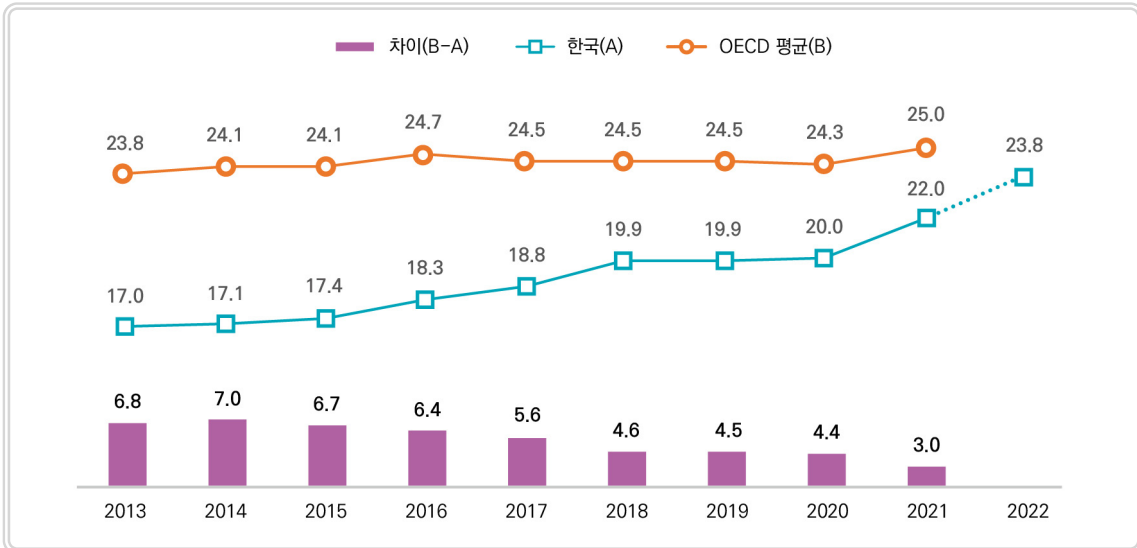
(단위: %)



주: 1) 국민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합액 비율
 2)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한국은행의 확정(2021년)·잠정(2022년) GDP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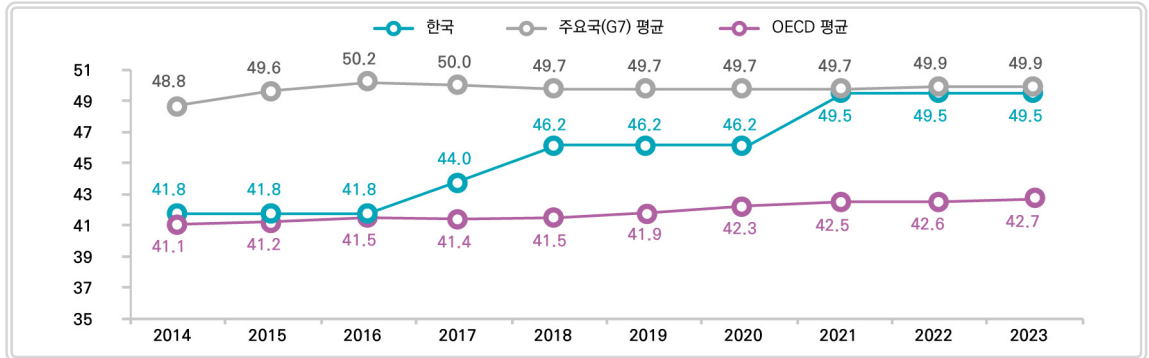
(단위: %)



주: 1) 조세부담률은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
 2)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한국은행의 확정(2021년)·잠정(2022년) GDP를 반영하여 계산
 3)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1년 미발표국가(호주, 일본)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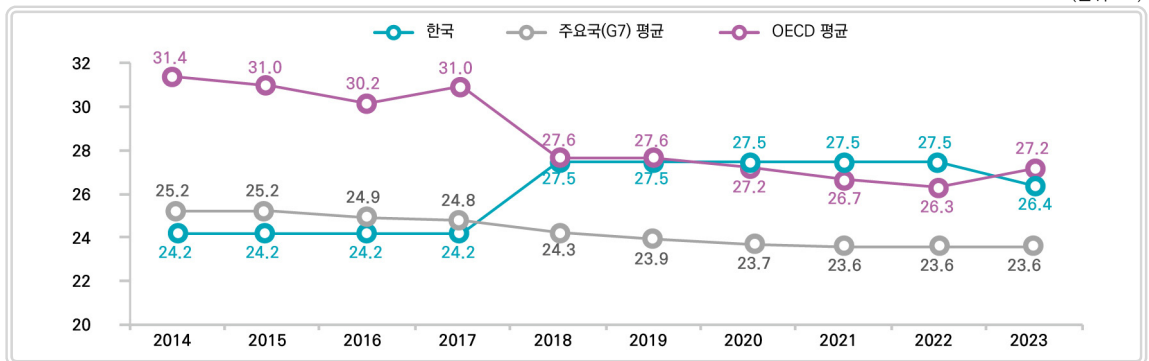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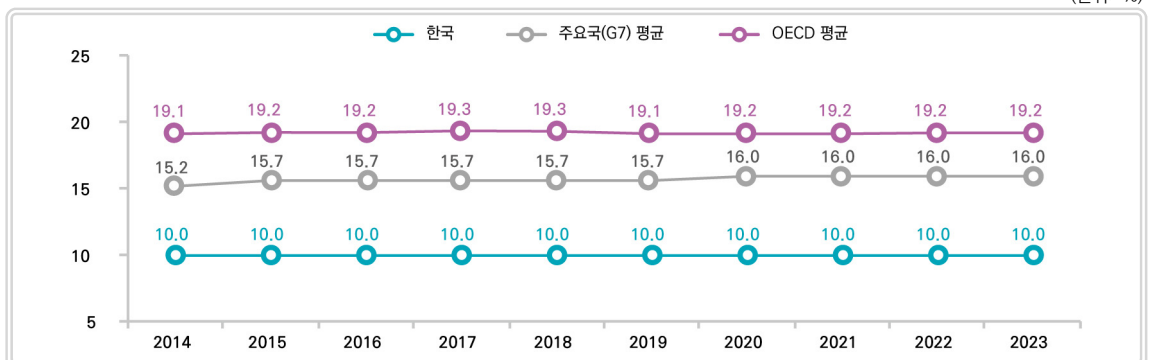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

(단위: %)



부가가치세율(지방세 포함, 표준세율 기준)

(단위: %)



주: 1) 각 세율의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

2)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최고명목세율 기준이며, 지방세(지방소득세) 포함

3)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미국의 판매세는 제외)이며, 지방세(지방소비세) 포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및 IBFD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추계&세제 이슈

발행일	2023년 8월 3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ISSN 2799-9408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 국회예산정책처, 2023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간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941-08

ISSN 2799-9408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